


의정활동보고서



제274회 정례회(2014. 11. 6 ~ 12. 1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5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차 정례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자매
결연 의회인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의회와 동·서유럽의
선진의회를 방문하여 우호 협력증진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300만 도민과 함께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건설현장 점검, 경북농업의 회생을 위한 농민단체 간담회,
위원회별 연찬회 개최, 타시도 우수사례 사업 현장방문 등
도정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 4 지방선거를 통하여 300만 도민의 축복과 염원 속에 출발한 제10대 도의회는 도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진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경북 발전의 한 축인 도의회를 현장 중심의 도민 공감 의정활동과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고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품격 있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정질문 TV 생방송 중계 실시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만들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께서는 민선 6기 출범 인사를 통해 더 큰 “경북의 꿈”을 실현하여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경북을 중심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간 투자유치 30조원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계획 등 경북의 변화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로 보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탈피하여 명품교육과 인재육성을 통해 경북 교육의 근간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3일에는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5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고, 잘 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은 도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도민들의 복리향상과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정례회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4
III. 의안처리	30
IV. 민원처리	32
V. 본회의 보고사항	32
VI. 5분 자유발언	64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울진)	64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구미)	69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성주)	73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울릉)	77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칠곡)	80

부 록

☐ 조례안(20건).....	87
☐ 동의안(5건).....	210
☐ 결의안(1건).....	298
☐ 청원안(1건).....	305
☐ 예산안(4건).....	32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25회의 상임위원회 및 1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의원의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설시공 관련”, “부적절한 공사 물품 계약방식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의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농업보조금 관리실태 관련”, “기숙형 중학교 육성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이수경 의원의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도비보조금 사업

관련”, “경북도 농업기금 및 자금 지원 관련”, “경북농민사관학교 관련”, “축산 및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의 “경북관광공사 경영혁신 및 경북관광 활성화 관련”, “지방공기업 기관장(사장) 임명 관련”, “노후 저수지·안전관리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의원의 “독도정책 관련”, “경상북도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관련”, “폐교자산 관리 관련” 등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의 “예산편성 문제점 개선 촉구”와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식 의원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의 “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가격 인상관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남진복 의원의 “중국어선 조업 관련”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가 있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의 “저출산 홍보정책의 변화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 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0건중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동의안 5건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예산안 4건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이 처리되었으며 이밖에도 결의안 1건, 청원안 1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9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 운용 상황,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14건, 건의·촉구사항 199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320건을 확정하여 도 및 교육청 등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4년 11월 6일(목) 14:00

2. 회 기

가. 회 기 : 2014년 11월 6일 ~ 12월 19일(4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5회(누계 15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37	1	4	6	4	3	3	4	11	1
누 계	97	6	11	14	10	10	10	9	18	9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1. 21(금)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 24(월) 11:00 (제3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수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박현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2. 11(목) 11:00 (제4차)	☐ 5분 자유발언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안전처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1(목) 11:00 (제4차)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동의안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9(금) 11:00 (제5차)	☐ 5분 자유발언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전심사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9(금) 11:00 (제5차)	○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축제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조례안 ○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지원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유치촉구 결의안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2(금) 10:00	☐ 안전심사 ☐ 제275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대변인실 - 미래전략기획단 - 기획조정실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6(수) 11:00 (제2차)	☐ 2015년도 예산안 심사 ☐ 창조경제산업실 ☐ 조례안 등 심사 ☐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6(수) 11:00 (제2차)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2015년도 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실	
11. 27(목) 11:00 (제3차)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5년도 예산안 심사 ○ 일자리민생본부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12. 11(목) 11:00 (제4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1:00 (제1차)	☐ 예산안 심사 ○ 경북도립대학교 ○ 인재개발정책관실 ○ 여성가족정책관실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6(수) 11:00 (제2차)	☐ 예산안 심사 ☐ 공무원교육원 ☐ 감사관실 ☐ 안전행정국 ☐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7(목) 11:00 (제3차)	☐ 예산안 심사 ☐ 복지건강국	
12. 1(월) 09:30 (제4차)	☐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1(목) 10:30 (제5차)	☐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2(금) 11:00 (제6차)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경북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 여성가족정책관실, 인재개발정책관실 ☐ 안전행정국, 복지건강국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 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 경상북도 기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11. 26(수) 11:00 (제2차)	☐ 예산안 심사 ○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보고의 건	
11. 27(목) 10:00 (제3차)	☐ 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12. 12(금) 10:00 (제4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한복착용문화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진흥조례안 ☐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예산안 심사 ○ 농축산유통국	
11. 26(수) 11:00 (제2차)	☐ 예산안 심사 ○ 동해안발전본부 ○ 농업기술원	
12. 12(금) 13:30 (제3차)	☐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 동해안발전본부 ○ 농축산유통국 및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0:00 (제1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 도청신도시본부	
11. 26(수) 11:00 (제2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예산안 심사 ○ 지역균형건설국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2(금) 11:00 (제3차)	☐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 도청신도시본부 ☐ 지역균형건설국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화) 14:00 (제1차)	☐ 조례안 심사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안 ☐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변경동의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6(수) 11:00 (제2차)	☐ 예산안 심사 ☒ 도교육청, 도교육청 직속기관	
11. 27(목) 11:00 (제3차)	☐ 안전심사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2(금) 10:30 (제4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년도 예산안 : 2014. 12. 1 ~ 12. 10(10일간)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제8차 예결특위 12. 1(월)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 질의·답변(교육청 계속)
제9차 예결특위 12. 2(화)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계속)
	• 창조경제산업실
	•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제10차 예결특위 12. 3(수)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
	•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계속)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제10차 예결특위 12. 3(수)	•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 대변인
제11차 예결특위 12. 4(목)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문화관광체육국 • 농축산유통국 • 지역균형건설국
제12차 예결특위 12. 5(금)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 보건환경연구원
	• 복지건강국
제13차 예결특위 12. 8(월)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감사관
	• 의회사무처
	• 환경산림자원국
	• 동해안발전본부
	• 농업기술원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제14차 예결특위 12. 9(화)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도청신도시본부
	• 도청신도시본부(계속)
	• 여성가족정책관
	• 소방본부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제15차 예결특위 12. 10(수)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토론 및 의결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토론 및 의결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토론 및 의결

□ 201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 2014. 12. 16 ~ 12. 18(3일간)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제16차 예결특위 12. 16(화)	1.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 인재개발정책관, 안전행정국, 복지건강국
제17차 예결특위 12. 17(수)	1.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답변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 의회사무처
	•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제18차 예결특위 12. 18(목)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 총괄제안설명(기획조정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 질의·답변(교육청 계속)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제18차 예결특위 12. 18(목)	1.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토론 및 의결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 토론 및 의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9(금) 10:30	☐ 안전심사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39 (109)	37 (107)	30 (90)	7 (17)	1 (1)		1 (1)	
조 례 안	소 계	22 (52)	20 (50)	18 (41)	2 (9)	1 (1)		1 (1)	
	의 회 제 안	11 (25)	10 (24)	9 (22)	1 (2)			1 (1)	
	도지사 제 출	4 (19)	4 (19)	4 (13)	(6)				
	교육감 제 출	7 (8)	6 (7)	5 (6)	1 (1)	1 (1)			
규 칙 안		(1)	(1)	(1)					
예산 · 결산		4 (8)	4 (8)	1 (4)	3 (4)				
동의 · 승인		5 (9)	5 (9)	3 (5)	2 (4)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1 (9)	1 (9)	1 (9)					
기 타 안		7 (29)	7 (29)	7 (29)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6)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진흥조례안

(’14. 11. 28, 장용훈 의원 외 10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4 (25)	10 (15)		(1)		1 (1)	2 (4)	(3)		1 (1)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2)						1 (2)			
행 정 보건복지	2 (3)	1 (2)					1 (1)			
문 화 환 경	4 (5)	4 (4)						(1)		
농수산	1 (3)	1 (2)					(1)			
건 설 소 방	2 (7)	2 (4)		(1)				(2)		
교 육	4 (5)	2 (3)				1 (1)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2 (21)	12 (21)				- (4)
의회운영						
기획경제	1 (2)	1 (2)				
행 정 보건복지	2 (2)	2 (2)				- (1)
문화환경	1 (2)	1 (2)				- (3)
농 수 산	1 (3)	1 (3)				
건설소방	3 (7)	3 (7)				
교 육	4 (5)	4 (5)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7건(조례안 12, 동의안 3, 보고 1, 청원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정숙 의원 외 4명 (2014. 10. 22)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 회 운 영 (2014. 10. 27)
경상북도지사 (2014. 10. 2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경 제 (2014. 10. 27)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
"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행정보건복지 (2014. 10. 27)
오영재 외 3인 (2014. 11. 3)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 · 관공서 · 학교 · 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 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 (2014. 11. 4)
경상북도지사 (2014. 10. 24)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문 화 환 경 (2014. 10. 27)
김명호 의원 외 10명 (2014. 10. 24)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
김희수 의원 외 1명 (2014. 10. 24)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건 설 소 방 (2014. 10. 27)
경상북도교육감 (2014. 10.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4. 10. 27)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14. 10.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4. 10. 27)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

2. 조례공포 사항 : 12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10.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	2014. 10. 27 (제3573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574호)
"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75호)
"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576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10.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2014. 10. 27 (제3577호)
"	"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78호)
"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579호)
"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따른 조례	" (제3580호)
"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81호)
"	"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3582호)
"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 (제3583호)
"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 (제358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자	장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원회	2014. 10. 29 ~ 10. 30	대구	위원장 외 8명	○ 상임위 연찬회 개최 - 위원회 활동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 행정사무감사기법 토론 - 주요 사업(시설) 견학

위원회	일 자	장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문화환경 위원회	2014. 10. 27	경산, 영천, 경주	위원장 외 8명	○상임위 현지확인 -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단체 주요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현장점검
	2014. 10. 29 ~ 10. 31	제주도	"	○상임위 현지확인 - 제95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격려 - 위원회 소관 타 시·도 선진 문화·환경 비교견학
건설소방 위원회	2014. 10. 30 ~ 11. 1	제주도	위원장 외 8명	○상임위 연찬회 개최 - 위원회 활동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관련 토론 - 주요 사업(시설) 견학 및 문화 탐방
교 육 위원회	2014.10.13	포항	위원장의 5명	○상임위 현지확인 - 포항 양덕초등학교 지반조사 및 구조물 상태 등 안정성 실태 파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4. 11. 4 ~ 11. 5	영양, 안동	위원장 외 14명	○예결특위 현지확인 -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및 건의사항 수렴 -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의정 자료수집 및 정책간담회 등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2014. 10. 30	경주	위원장 외 4명	○원자력안전특위 현지확인 - 원자력 주요시설 현장점검 및 현안사항 청취 - 경주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와의 간담회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제17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테니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9(토) 10:00
-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 참 석 : 박성만 의원

○ 2014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참석

- 일 시 : 2014. 10. 9(목) 16:00
- 장 소 :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이진락 의원

○ 2014 경북환타지 아리랑공연 참석

- 일 시 : 2014. 10. 9(목) 19:00
- 장 소 : 경주예술의 전당
- 참 석 : 장두욱 · 배진석 · 이진락 의원

○ 2014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1:00
- 장 소 : 상주북천시민공원
- 참 석 : 이운식 의원

○ 제2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7:00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 황이주·박권현·
정영길·구자근·김명호 위원장, 한혜련·고우현·
장두욱·나기보·이태식·김위한·김인중·김정숙·
남진복·박영서·박정현·안희영·이운식·조현일·
황병직 의원

○ 제42회 신라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7:30
- 장 소 : 봉황대 외 경주일원
- 참 석 : 배진석·이진락 의원

○ 2014 경상북도 민속주&막걸리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9:30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고우현·장두욱 의원

○ 제28회 경북다례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1:00
- 장 소 : 안동댐 민속촌 일원
- 참 석 : 장두욱·김위한 의원

○ 경상북도 다문화음식문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3:30
- 장 소 : 구미동락공원 광장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이태식·장영석 의원

○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4:00
- 장 소 : 구미낙동강체육공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장영석 의원

○ ‘드로잉 경주 2014’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7:00
- 장 소 : 경주예술의전당
- 참 석 : 장두욱·배진석 의원

○ 제7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09:30
- 장 소 : 청도공설운동장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정상구 의원

○ 제6회 경북산악인 한마음 산행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2(일) 14: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7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3(월) 10:30
- 장 소 : 의성문화회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홍진규 · 윤성규 · 한창화 위원장,
나기보 · 김수문 · 김인중 · 김정숙 · 오세혁 · 이홍희 ·
최태림 의원

○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참석

- 일 시 : 2014. 10. 13(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 2014 경북 신장 장애인 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4(화) 11:00
- 장 소 : 용상안동병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북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4(화) 14:30
- 장 소 : 김천혁신도시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배영애 의원

○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5(월) 11:00
- 장 소 : 상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한창화 위원장, 이수경 · 이운식 ·
이홍희 의원

○ 경북 Smart두레공동체 지원사업 「두레장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5(수) 11:00
- 장 소 : 경산 두레장터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배한철 의원

○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5(수) 11:0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 참 석 : 한혜련 의원

○ 예천 세계활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5(수) 17:00
- 장 소 : 예천한천체육공원
- 참 석 : 도기욱 의원

○ 농민사관학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6(목) 11:00
- 장 소 : 예천 경도대학 문화체육관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 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위 실무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6(목) 13:00
- 장 소 : 서울 지방행정공제회
- 참 석 : 장대진 의장

○ 2014 사랑의 열매 유공자 포상 및 나눔봉사단 총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6(목) 14:00
- 장 소 : 구미시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장영석·김인중 의원

○ 경북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4. 10. 16(목) 14:00
- 장 소 : 영천청소년수련관
- 참 석 : 한혜련 의원

○ 경북 품물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7(금) 09:30
- 장 소 : 포항시 해도공원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박문하 의원

○ 제4회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7(금) 10:30
- 장 소 : 경주실내체육관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7(금) 15: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장대진 의장, 홍진규 위원장

○ 2014 경주 국제마라톤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7(금) 18: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배진석 의원

○ 도의회 교류협의단 하바롭스크 방문

- 일 시 : 2014. 10. 18(토) ~ 10. 22(수)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 참 석 : 장대진 의장, 홍진규·이영식 위원장, 강영석·
배진석·오세혁·이수경·이운식 의원

○ 2014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8(토) 11:00
- 장 소 : 동양대학교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남천희 의원

○ 제63차 한국JC 전국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9(일) 10:4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박문하 의원

○ 장계향 영정 봉안고유제 및 「음식디미방」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9(일) 15:00
- 장 소 : 영양 석보 두들마을
- 참 석 : 남천희 의원

○ **이퇴계 태실 고택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9(일) 18:00
- 장 소 : 안동 이퇴계생가 노송정
- 참 석 : 김인중 의원

○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1(화) 11: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이동호 의원

○ **2014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1(화) 17: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이동호 의원

○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참석**

- 일 시 : 2014. 10. 22(수) 17: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이동호 의원

○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0:00
- 장 소 :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2014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3:30
- 장 소 : 엑스코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3: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 2014 경북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5: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홍진규·김희수·
황이주·윤성규·한창화·최병준 위원장, 김응규,
박성만·한혜련·고우현·김봉교·도기욱·나기보·
배한철·이태식·김수문·김인중·김정숙·남천희·
박문하·박현국·배영애·배진석·안희영·윤종도·
이동호·이수경·이운식·이진락·이홍희·조현일·
최태림·황병직 의원

○ 2014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전야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8:00
- 장 소 : 호텔금오산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환영만찬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8:30
- 장 소 : 호텔금오산
- 참 석 : 장영석 의원

○ 2014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0:00
- 장 소 : 구미코 컨벤션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김봉교 의원

○ 제3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 시각장애인복지대회

- 일 시 : 2014. 10. 24(금) 10:0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0:3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경상북도 문화원 한마당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0:30
- 장 소 : 봉화군민회관
- 참 석 : 박현국 의원

○ 2014년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4:00
- 장 소 : 구미코 컨벤션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영석 · 이흥희 의원

○ 경상북도 우수전통시장 상품전시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7:00
- 장 소 : 영천시 영동교 일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희수 위원장, 한혜련 · 김수용 · 장두욱 · 배진석 의원

○ 제11회 안전지킴이 가족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09:30
- 장 소 : 포항 환호공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 의원

○ ‘할매 · 할배의 날’ 제정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0:00
- 장 소 : 예천문화회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두욱 · 도기욱 · 김인중 · 김정숙 · 안희영 의원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축구대회 ‘2014 경북리그’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0:00
- 장 소 : 영덕군민운동장
- 참 석 : 황재철 의원

- 2014 가을체험의 날 & 단풍음악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1:00
 - 장 소 : 경상북도수목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2014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5:30
 - 장 소 : 서울광화문광장
 - 참 석 : 장두욱 의원
- 제13회 경북매일신문사장기 생활체육 전국 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10:00
 - 장 소 : 포항해맞이정구장
 - 참 석 : 장두욱 의원
-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한마음회원 안보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7(월) 14:0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창규 의원
- 2014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7(월) 11:00
 - 장 소 : 경주 더케이호텔
 - 참 석 : 이진락 의원

○ 경상북도 수출기업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7(월) 16:00
- 장 소 : 구미 센츄리호텔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장영석 의원

○ 경상북도 운수업종사자 교육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09:00
- 장 소 : 포항예술회관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14년 경상북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11:00
- 장 소 :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2014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14:00
- 장 소 :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김수문·남천희·박문하·박용선 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14:30
- 장 소 : 롯데호텔제주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95회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18:00
- 장 소 : 제주종합경기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9(수) 10: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제4회 LED산업포럼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9(수) 12:0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9(수) 13:00
- 장 소 :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4. 10. 30(목) 11:00
- 장 소 : 포항 수도산 반공순국 청년동지 위령비
- 참 석 : 장두욱 의원

- 전국시도의회 직원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4. 10. 30(목) 14:00
 - 장 소 : 대구 수성관광호텔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산 대학인 Colorful 마라톤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1. 1(토) 09:30
 - 장 소 : 경산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배한철·오세혁 의원
- 제16회 경북 수화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1. 1(토) 14:00
 - 장 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2014 전물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4. 11. 3(월) 10:3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국가개조와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4. 11. 3(월) 14:3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 참 석 : 장대진 의장

○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11. 4(화) 12:00
- 장 소 : 국회의사당 사랑재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북 착한사과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11. 4(화) 14:30
- 장 소 : 서울광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시·군 단위 행사】

○ 2014년도 재령고령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9(목) 10:00
- 장 소 : 서울무학여고 강당
- 참 석 : 박정현 의원

○ 제8회 임고면민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9(목) 10:00
- 장 소 : 영천 임고초등학교
- 참 석 : 김수용 의원

○ 2014년 영주풍기 인삼축제 주민자치연합회 우수동아리 공연
참석

- 일 시 : 2014. 10. 9(목) 16:00
- 장 소 : 영주 축제장 특설무대
- 참 석 : 황병직 의원

○ 제57회 의성군민 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0:00
- 장 소 : 의성 종합운동장
- 참 석 : 김수문 · 최태림 의원

○ 청도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1:00
- 장 소 : 청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 2014 바르게살기운동 어울림 한마당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3:00
- 장 소 : 예천문화회관
- 참 석 : 안희영 의원

○ 2014 감고을 상주이야기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0(금) 17:00
- 장 소 : 상주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 · 이운식 의원

○ 제55회 안동시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09:00
- 장 소 : 안동시민운동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명호 위원장, 김위한 의원

○ 제9회 삼국유사 마라톤 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09:00
- 장 소 : 군위 고로담 일원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제1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09:00
- 장 소 : 경산육상경기장 일원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오세혁 의원

○ 제13회 청송군자율방범연합대 가족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1:00
- 장 소 : 청송초등학교 운동장
- 참 석 : 윤종도 의원

○ 제11회 칠곡군 근로자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1:30
- 장 소 : 칠곡 왜관산업단지 운동장
- 참 석 : 김창규 의원

○ 2014 경북대표 경주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3: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배진석 의원

○ 무을풍물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3:00
- 장 소 : 구미동락공원
- 참 석 : 이태식 의원

○ 2014 문경사과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1(토) 14:30
- 장 소 : 문경새재도립공원
- 참 석 : 고우현 의원

○ 포항시 동해면민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2(일) 10:00
- 장 소 : 동해면민운동장
- 참 석 : 이정호 위원장

○ 대한민국 평화통일 문화제 참전용사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2(일) 16:00
- 장 소 :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강당
- 참 석 : 나기보 의원

- 2014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 참석
 - 일 시 : 2014. 10. 13(월) 09:30
 - 장 소 : 포항종합경기장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제22회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3(월) 10:00
 - 장 소 : 구미청소년해평수련원
 - 참 석 : 장영석·이홍희 의원
- 제4회 울진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13(월) 11:00
 - 장 소 : 울진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장용훈 의원
- 벽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10. 14(화) 14:00
 - 장 소 : 성주 벽진농협
 - 참 석 : 이수경 의원
- 제56회 예천군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5(수) 10:00
 - 장 소 : 예천공설운동장
 - 참 석 : 도기욱 의원

- 2014 영천시 국가유공자 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17(금) 11:00
 - 장 소 : 영천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의원
- 해병과 함께하는 노사민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18(토) 11:00
 - 장 소 : 해병1사단 일월지동산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 2014 영양군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1(화) 11:00
 - 장 소 : 영양군민회관
 - 참 석 : 남천희 의원
- 안동시새마을부녀회 며느리봉사대 사랑의 어르신 섬기기
결연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0. 21(화) 11:00
 - 장 소 : 안동 두리원 웨딩홀
 - 참 석 : 김인중 의원
- 2014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교육
 - 일 시 : 2014. 10. 22(수) 10:00
 - 장 소 : 울릉군 서면사무서
 - 참 석 : 남진복 의원

○ 2014 칠곡군 맞춤 취업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2(수) 11:00
- 장 소 : 칠곡국민체육센터
- 참 석 : 곽경호 의원

○ 2014 영주선비문화축제 환영리셉션 참석

- 일 시 : 2014. 10. 23(목) 17:30
- 장 소 : 영주시 선비촌 일원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제5회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0:00
- 장 소 : 칠곡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 참 석 : 김응규 의원

○ 2014년 화재피해가정주택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및 칠곡
행복마을(1호) 만들기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1:00
- 장 소 : 칠곡군 죽전2리
- 참 석 : 김정숙 의원

○ 2014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7:00
- 장 소 : 청도 청소년 수련관
- 참 석 : 정상구 의원

○ 제5회 경산대추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4(금) 18:00
- 장 소 : 경산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조현일 의원

○ 2014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09:00
- 장 소 : 김천 직지문화공원 및 사명대사길 일원
- 참 석 : 배영애 의원

○ 2014년 성주군 자원봉사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0:00
- 장 소 : 성주종합사회복지관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 제11회 사랑나눔건강걷기대회 및 건강체험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0: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동호 의원

○ 제31회 재포항 강원도민 한마음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1:00
- 장 소 : 포항 만인당
- 참 석 : 박용선 의원

○ 2014 경주동학문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1:00
- 장 소 : 경주예술의전당
- 참 석 : 최병준 위원장

○ 2014 외국인 한마당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1:0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학교 광장
- 참 석 : 김종영 의원

○ 부계 한밤마을 고택 가을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3:00
- 장 소 : 군위 부계면 한밤마을 일원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포항시 자원봉사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3:40
- 장 소 : 포항 해도공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제4회 놀이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4:00
- 장 소 : 구미 구평동 별빛공원
- 참 석 : 구자근 위원장

- 제3회 경북학생 3담꾼 토론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5(토) 19:30
 - 장 소 : 경북환경연수원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 제12회 전국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08:30
 - 장 소 : 울진 후포요트장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2014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10:30
 - 장 소 : 봉화 춘양면·소천면 일원
 - 참 석 : 박현국 의원
- 박정희대통령 제35주기 추모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10:30
 - 장 소 : 구미 박대통령 생가
 - 참 석 : 김봉교 의원
- 제17회 포고인(포항고) 한마음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11:00
 - 장 소 : 포항 만인당
 - 참 석 : 박문하 의원

○ **박정희대통령 제35주기 추모식 참석**

- 일 시 : 2014. 10. 26(일) 11:00
- 장 소 : 문경 청운각
- 참 석 : 박영서 의원

○ **2014 포항일자리 취업&창업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4. 10. 28(화) 10: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구 의원

○ **제49회 영덕군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4. 10. 31(금) 09:30
- 장 소 : 영덕군민운동장
- 참 석 : 조주홍·황재철 의원

○ **제30회 구미시민 산악축제**

- 일 시 : 2014. 11. 2(일) 08:00
- 장 소 : 금오산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제18회 포항시 배구협회장기 한마음배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1. 2(일) 11: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두욱 의원

V. 5분 자유발언

□ 2014년 12월 11일 제274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예산편성 문제점 촉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관행이 재선이 되면 말수를 줄여야 하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더욱 언행에 신중을 다하는 게 관행과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인 제가,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양해 말씀과 함께 제가 단상에 선 이유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경상북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방청석에는 노인복지시설,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분들은 수개월째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의 부당함을 진정해 주셨고, 추운 겨울날 수차례에 걸쳐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고, 오늘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또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저분들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참으로 아쉬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덧붙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군에 우리 도비를 얼마나 갖고 가십니까? 제가 우리 23개 시·군 중에 형평성을 상실한 2개 시·군의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A시·군은 인근의 B시·군보다 인구가 무려 1만 1,000명이나 더 많고 예산규모도 1,000억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 지원은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도 무려 1,000억원이나 적은 그 시·군보다도 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국비사업과 또 기초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구에 1만 명, 예산규모에 1,000억원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예산이 수년째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도 문화예술관련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입니다. 지역을 언급해서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경주가 무려 30건이나 되고 안동이 24건, 포항과 구미가 각각 12건입니다. 이들 4개 지역을 빼면, 자료를 좀 내려 봐 주시겠습니까? 고령 1건, 울진 1건, 영덕과 봉화와 울릉은 0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 물론 경주와 안동 지역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사님이 늘 중앙정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도 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균형감각을 갖고 저렇게 1건도 없는 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진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중복된 예산이 상당수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사 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회계과가 3억원, 문화예술과가 3억 2,000만원, 도청이전 본부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경북정체성 사업은 수년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예산을 중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차를 무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통상교류관입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소방헬기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 때 건설소방위에 잠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소방헬기의 물탱크가

단종이 되었고, 고장이 났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불가라는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만약 소방본부에서 고철이 되도록 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방본부장은, 그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알고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면 행정직렬의 우월주의 내지는 직권남용이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거기의 종사자들은 매년 월급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로운 기능보강사업을 해줬을 때 얼마만큼 많은 의료사각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 할매·할배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진정한 어르신들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사님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행사, 또 홍보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보탬이 되는, 실익이 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할배·할매의 예산 사업은 무려 2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강음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고작 700원 음료수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은 우리 의원님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다들 하실 텐데 얼마짜리 건강검진을 하시죠?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고작 4만원입니다. 울릉군에 우리 도비를,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울릉군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4만 2,000원을 줍니다, 무려 4만 2,000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진은 그나마 행복합니다, 12만 1,000원을 주더라고요. 도대체 이 금액으로 어떻게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으로 도대체 몇 명이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좀 더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우리 의회와 공유하겠다고 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럽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면 사전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면 시간과 경비는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14년 12월 11일 제274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미래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몇 차례 걸쳐 보도된 바 있습
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우리
경북도의 중추도시인 구미시만이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4년 9월에 아시아포럼21에서 남유진 구미시장도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불안에 대해서는
폐놀사고 등 낙동강 오염이라는 원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지금은 낙동강 오염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취수원 이전
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과 논의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강변
여과수 활용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관련부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고 있습니까? 구미시는 우리 경북도의 시·군이 아닙니까? 인구 250만의 대도시 대구시에서는 정치력을 이용하여 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에서 힘을 합쳐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개 시·군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경남도에서는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 오다가 창녕에 강변 여과수 개발을 시도하고 함양에 지리산댐 건설을 논의하는 등 대체수원 개발에 대하여 경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경북도민의 하나 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폐놀유출사고 이후 대구시 수돗물의 70%를 감당하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원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어 급기야는 아예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하자는 모 국회의원의 선심성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2월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했다가 국토부의 검토과정에서 구미시 일선교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1년 8월 KDI로부터 B/C 0.86, AHP 0.397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9월 또다시 일선교에서 하류 13km 지점인 해평 광역취수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용역비 사업 축소에 따라 사업비도 6,19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축소하고,

2014년 예산에 모 국회의원이 쪽지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20일 만료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와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예비타당성용역 운운하며 사업 미추진 시 불용반납 등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낙동강 물이 부족하여 농·공업용수의 부족이 예상되고 수량부족에 따른 수질악화로 환경변화 등이 예견되므로 취수원 이전 대신에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면 대구나 부산 등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낙동강 하류지역의 도시들은 낙동강 물을 안심하고 수돗물 원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강정고령보와 구미 취수원이 동일 2급수이며, 대구시에서는 1,8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3급수의 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500억원의 예산으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강정고령보 인근에 미국식 터널형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에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문댐 등 댐 용수를 비상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지 않고도 대구시의 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미시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계속하여 구미시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미시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만 목을 매고 있는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낙동강 전 수계를 수질보전대책 수립과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12월 11일 제274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

<< 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가격 인상관련 >>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3일 성주에서부터 시작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아세안 쌀 비축용 매입이 농민들의 구매거부로 인하여 중단된 사태의 발생에 대해 신속한 해결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2014년도 양곡계획 수립 시 '14년 산 공공비축미 37만 톤과는 별도로 APTERR용 3만 톤, 조곡용으로 환산하면 4만 1,667톤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매입과 보관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PTERR 협정은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간의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국제쌀값 수준으로 판매, 장기차관, 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 비축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업농, 농업법인 등 규모화 된 생산자 및 단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매입에

들어갔으며, 전국 신청물량 3만 8,600톤 중 경북도에서 영천, 상주, 성주, 봉화 등 4개 시·군에서 2,600톤을 신청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미곡매입 가격은 전업농 등의 대표가 지역 본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 체결 시에 보증금을 10%로 선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매거부사태가 발생한 성주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전업농 대표자 간의 매입 계약으로 계약물량은 600톤, 전체 금액은 8억 6,007여 만원입니다.

계약금은 8,700만원을 농민이 먼저 선계약금으로 준 그러한 사례입니다. 계약금의 산출근거는 201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쌀 전국 평균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40kg 기준으로 5만 7,82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루 앞둔 12월 2일 매입현장 점검을 위해 찾아온 공사 직원에게 매입가격을 물었으나 매입가격은 당일이어야 알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왔고, 그날 저녁에야 문자로 5만 1,868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매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PTERR 미곡매입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4년 10월 계약 당시는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른 쌀 전국 평균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5만원

적은 2014년 11월 경북의 평균 쌀값으로 환산한 5만 1,868원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가격도 매입하기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했고, 여기에다 사전 예상치 못했던 포대값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가격은 계약 당시 기대했던 가격보다 8,000여 원이 낮고, 작년의 정부비축미 수매가격 평균인 6만원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기업에 업무를 대행시켰다면 계약 당시의 가격을 보전해주려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 전국 평균가격으로 매입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매입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입 당일까지도 어떠한 직접적인 사전협의나 통지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간접적인 연락을 해왔으며 매입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부담까지도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적인 거래에서도 계약조건의 변경 등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경북농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늘 명품 농산물을 외치며 경북농정이 앞서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경북의 산지 쌀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APTERR 매입에도 판로걱정이 없었는지 경기도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전라도를 제외

한 타 시·도의 산지매입 가격은 경북보다도 3,000여 원이나 높습니다.

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적행위를 신뢰하고 거래한 우리 경북도의 농민은 배신감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벼를 수매한다면 공공비축미 수매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현지 쌀값 기준으로 시·도 간에 벼 품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의 농민들은 수매를 거부하자니 국가계약법에 따라 10%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수매에 응하자니 낮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는 정말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최웅 국장과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말 현장에 달려와서 중앙정부의 공무원과는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최웅 국장과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12월 11일 제274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중국어선 조업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동해안을 점령한 중국 어선들의 무시무시한 불법행위 실상을 알리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2004년부터 북한·중국 간 어로협약체결에 따라 북한해역의 입어권을 획득한 후 매년 1,000여 척이, 올해는 1,800여 척의 배가 동해안에 출몰하여 무차별 쌍끌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울릉도 연근해의 오징어가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전체 인구의 20%가 오징어 하나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어선이 출몰하기 전인 2002년도 8,700톤이던 어획량이 작년에는 1,800톤으로 무려 1/5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인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 어선 불법어로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누차 요구해 왔으나 묵살되었고, 급기야 최근 들어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울릉도 턱밑으로 다가와 섬을 포위하듯 점령하는 사태로까지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포항MBC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동해인지 아니면 중국바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주로 기상악화 시에 피항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옵니다만, 오징어 불법 싹쓸이도 모자라 연안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폐어구, 폐기름, 쓰레기 투기배출, 시설물 파괴훼손, 선박소음, 불법상륙, 또 밀입국, 야간 조업 시 불안감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울릉군수와 어민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이 같은 실상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어둡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고사 위기에 처한 어민과 어업을 살리고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양 생태계 오염을 막아내는데 있어 335km 동해안을 관장하는 경상북도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국 어선 불법 행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동해안 어업발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12월 19일 제274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저출산 홍보정책의 변화 촉구>>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청장년층의 고용과 생활기반의 약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압박으로 각종 연금이나 복지의 축소, 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기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12년 후에 마주하게 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편견과 배려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제도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엄마 채용장려금, 계속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지원 등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출산휴가의 사용 실태 만으로도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현실을 가늠하기에 충분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은 35.1%에 그친 반면 임신으로 퇴직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89.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모성보호제도가 현장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우리 경북도내 경력단절여성도 2014년 현재 9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나 증가하였고,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이 50%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도내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회생활 포기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고서도 현장에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은 제도와 각종 보육지원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산 및 보육에 관한 홍보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저출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파하고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TV와 라디오에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들이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를 임신부가 일일리포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모성보호정책의 모범적 활용 사례, 국내외 모성보호 선진기업의 사례 등을 고정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와 워킹맘은 기피대상이 아니라 여성인재로서 보아야 할 인적자산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버팀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북도의 출산장려 홍보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출산장려 홍보로 책정된 경북도의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의 0.09%에 불과하며, 2015년에도 겨우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안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큰 틀에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북도 차원에서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근대적인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모성보호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선정·시상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 록

- ☐ 조례안 : 20건
- ☐ 동의안 : 5건
- ☐ 결의안 : 1건
- ☐ 청원안 : 1건
- ☐ 예산안 : 4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월 2,845,000원으로 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월정수당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지 급 액
2015년도	연 34,720,000원
2016년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7년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8년도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2,966만원)의 20% 상한액인 3,559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월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 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 준은 월 2,845,000원으로 한다. 〈신 설〉	제 7 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 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1.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 도</th><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기 준 (연 간)</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5년도</td><td style="text-align: center;">연 34,720,000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년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년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td></tr> </tbody> </table> 2.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2,966만원)의 20% 상한액인 3,559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월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연 도	지 급 기 준 (연 간)	2015년도	연 34,720,000원	2016년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7년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8년도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연 도	지 급 기 준 (연 간)										
2015년도	연 34,720,000원										
2016년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7년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8년도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①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 7 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은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사무실	
			핸드폰	
		주 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발생시기		년 월 일		
장애특성				
사용중인 보장구		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보조인력 (☑ 표시)		☐ 기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란 용역·일일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위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회장 귀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5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 까지로 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 기한은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 2 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_____ _____ _____ —— <u>2016년 12월 31일</u>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도청신도시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	---	------------	--------------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준속기한	비 고	기관별	정 원		준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계	내 역		
<u>도청</u> <u>신도시</u> <u>본부</u>	1	<u>일반직 :</u> <u>3급 1</u>	<u>2014.</u> <u>12. 31</u>		<u>도청</u> <u>신도시</u> <u>본부</u>	1	<u>일반직 :</u> <u>3급 1</u>	<u>2016.</u> <u>12. 31</u>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규정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로,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규정하여 경상북도”로, “기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
한다.

제2조제2호 중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을 “일반
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 중”으로, “매년도”를 “매년”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를 “특별조정
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종류)”를 “(조정교부금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조정교부금의 재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를 “호
금액의 27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
발전·원자력발전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상북도”를 각각 “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대한”으로,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을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의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나머지 100분의 10”을 “나머지 100분의 20”으로, “금액은”을 “금액을”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1”를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를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매 회계연도 개시월에 각”을 “매 회계연도 개시월에”로,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를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기타”을 “그 밖의”로,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을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시정 등)”을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보전금”을 각각 “조정교부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를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해당”으로,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보전금”을 각각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를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치분합”을 “폐치·분합”으로,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재정보전금”을 각각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참작”을 “고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u>	<u>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 규정하여 경상북도————— 도모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u> <u>써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u> 2. <u>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뜻은 —————. 1. “<u>조정교부금</u>”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u>일반조정교부금</u>”이란 <u>조정교부금 중</u> ————— 매년 ————— 말한다)—————.

현행	개정안
3. <u>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u> <u>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일반재정보전금</u> 2. <u>시책추진보전금</u> <u>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u> 1. <u>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u>	3. <u>“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u>————— ————— —————. <u>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u>—————. 1. <u>일반조정교부금</u> 2. <u>특별조정교부금</u> <u>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조정교부금</u>————— <u>호 금액의 27퍼센트</u>————— ————— —————. <u>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1. ——— <u>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u>————— ————— —————

현행	개정안
2. 경상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경상북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 ①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 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2. 도_____ _____도_____ _____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_____ _____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_____ _____. 제5조(예산편성) ① _____ _____조정교부금_____ _____. _____대한 _____ _____조정교부금_____. ②조정교부금_____ _____.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방법) ①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_____ _____금액을 _____ _____해당 _____.

현행	개정안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 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 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생략)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생략)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100분의 30에 _____ _____ 해당 _____ 배분 하며, 100분의 20 _____ _____ _____ 해당 _____ _____. ②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해당 _____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_____ _____ _____ ③_____ _____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_____ _____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행	개정안
의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월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 정	_____. _____ _____. _____ ④_____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_____ _____. ⑤_____ 제4항에 따른 _____ _____ 특별조정교부금_____ _____.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매 회계연도 개시월에 _____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_____. _____ 조정교부금_____ _____ 그 밖의 _____ _____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_____ 해당 _____ _____. ②제1항에 따라 _____ — 일반조정교부금_____

현행	개정안
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전금의 결정 통	_____ _____ _____ _____ <u>특별조정교부금</u> _____ _____.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_____ _____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_____ <u>해당</u> _____ _____ _____ _____. ②_____ _____ <u>예산</u> _____ _____ <u>미확보 등으로 해당</u> _____ _____ <u>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u> _____ _____ <u>특별조정교부금</u> _____ _____.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_____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현행	개정안
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u>재정보전금</u>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생략) <u>제10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u>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u>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u>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 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	_____ <u>조정교부금</u> <u>부금</u> _____ _____ _____. ②(현행과 같음) <u>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u> _____ 제8조에 따라 _____ _____. <u>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u> _____ _____ <u>폐치·분합</u> _____ <u>해당</u> <u>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u> _____ _____. 1. _____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군에 배분할 <u>재정보전금</u>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u>재정보전금</u>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u>재정보전금</u>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u>시책추진보전금</u>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u>조정</u> <u>교부금</u>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조정교부금</u> _____ _____. 3. _____ _____ _____ <u>특별조정</u> <u>교부금</u>_____ _____ <u>고려</u>_____.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 위 치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 업 량		기 시 행		당해연도 계획		향후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조치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소요			향후계획
			계	확 보	미확보	
국 비 특별조정교부금 시 군 비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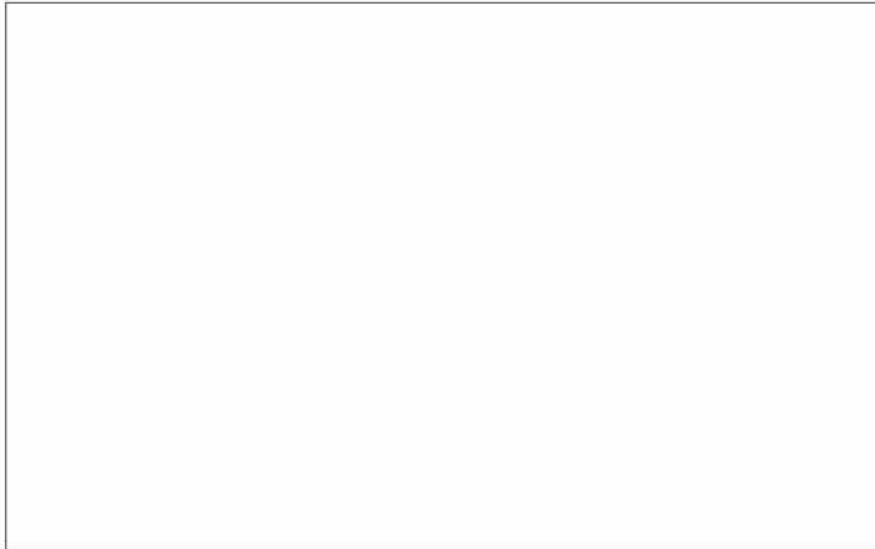
위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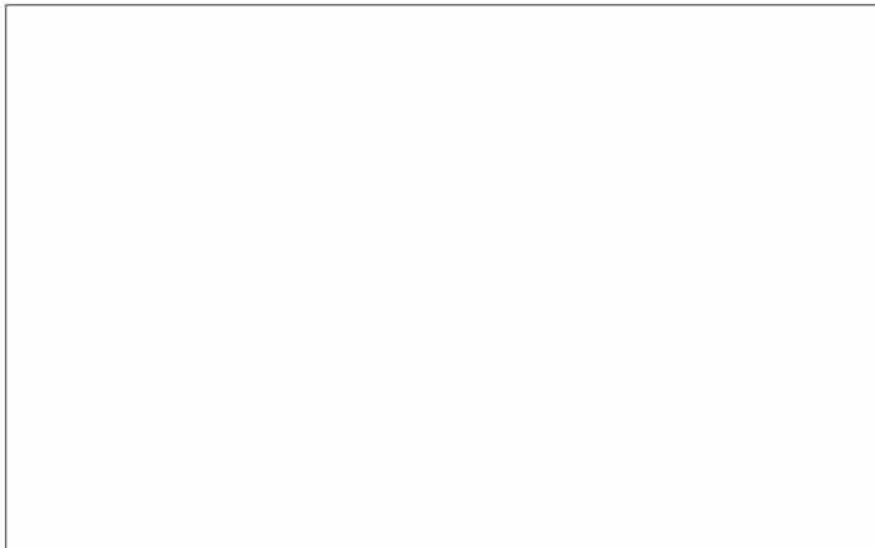
시 장 군 수

☐ 위 치 도

S = 1/50,000



☐ 현황사진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1. 사 업 명

2. 배분시군 및 교부결정액

○ 배 분 시 군 :

○ 교부결정액 :

3. 사업내용 :

4. 예산과목 :

5. 교부조건

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집행후 다음회계연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보조대상 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도지사는 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도지사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제 6 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기능)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8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조금의 교부 등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지사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상북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의 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20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교부 현황
2. 성과 평가결과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4.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②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 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 록 내 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 호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신 청 현 황	신청분야	신청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자부담	도비보조	기부금 등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보조사업 신청계획서 1부. 3. 단체활동계획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천원) - 20○○년도: 20○○년도: 20○○년도: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사업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항 목(내용)	총사업비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도비보조	자 부 담	그 밖 의 기부금 등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보조	자부담	그 밖의 기부금 등			산출기초
				소 계	기(부)금	그 밖의 비 용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클린카드)계좌번호

(○○은행)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 조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관리카드

□ 보조사업명

관리번호	x-x-x-201x-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 (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별표 1】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귀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표 2】

분 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 . . . □□□ 국장(과장)○○○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90점 미만~80점) / 보통(80점 미만~60점) / 미흡(60점 미만~50점) / 매우 미흡(50점 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4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u>	<u>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u>
<u>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u>	<u>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
<u>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u>	<u>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현행 정규학교 교육 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 적성, 현장체험위주,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6.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 6 조(상담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교육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자립지원) ①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 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도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

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도 지정축제) ①도지사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지역 축제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②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최우수축제, 우수 축제, 유망축제”로 한다.

제 5 조(지역축제의 평가) ①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역축제의 지원) ①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 지정축제 이외에, 2개 시·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또는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축제, 도 지정축제로 3회 이상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은 축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7 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 단체 대표, 축제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질병, 장기간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5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에서 지정축제로 선정·
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11월 25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지정축제의 수를 10개 이내로 한정된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 안 제6조제4항의 지원대상 제외규정은 전통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지역 고유 유명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제한함.

2. 주요내용

- 도 지정축제의 수는 10개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
- 도비지원 제외대상을 삭제(안 제6조제4항)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10개 이내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4조(도 지정축제) ①(생략) ②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 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u>10개 이내로 한다.</u> ③(생략)	제4조(도 지정축제) ①(제정안과 같음) ②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 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u>규칙으로 정한다.</u> ③(제정안과 같음)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6조(지역축제의 지원)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또는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축제, 도 지정축제로 3회 이상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은 축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역축제의 지원)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④ <삭제>	전통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지역 고유 유명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도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도 지정축제) ①도지사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②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한다.

제 5 조(지역축제의 평가) ①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역축제의 지원) ①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 지정축제 이외에, 2개 시·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 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 단체 대표, 축제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질병, 장기간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5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에서 지정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조(한복 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각종 기관·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제 5 조(한복 착용자의 우대) ①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①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포상) ①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통령 하사금으로 식재한 이태리 포플라의 매각대금과 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금'이라 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플라 매각대금 및 분수림 입목 매각대금
2. 순환수림장 운영 수익금
3. 도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4 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③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2. 임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 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장학생 선발 대상 및 방법) ①장학생 선발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와 도내 소재 임업 관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학생으로 한다.

②선발방법은 선발대상자의 거주 지역 시장·군수 및 기타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과 금액은 매년 장학기금 수입액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종료 후 계속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수농산물표시제”를 “우수농산물 표시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경상북도내”를 ““우수농산물”
이란 경상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을 “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과”를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를 “요건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로, “관련기관단체”를
“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당상품”을 “해당
상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를 “요건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상표사용자는 우수농산물로서의 품질·
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
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상표법 제66조와 관련하여”를 “도지사는 「상표
법」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u>우수농산물표시제</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우수농산물 표시제</u>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
1. “<u>우수농산물</u>”이라 함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u>농산물</u>”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u>가공식품</u>”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u>도지사</u>”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u>우수농산물</u>”이란 경상북도 ————— ————— ————— ————— ————— ————— —————.
2. “<u>우수농산물표시</u>”(이하 “<u>상표</u>”라 한다)라 함은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2. ————— — <u>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u> — ————— —————.

현행	개정안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u>관련기관 단체</u>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u>해당상품</u>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생략)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 가.·나.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u>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 ———— <u>호와</u> ———. 1. ————— <u>요건을</u> ———. 가.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제6조에 따라 ————— <u>관련 기관 단체</u>————— 나. ————— ———— <u>해당 상품</u> ————— ————— ————— 다. (현행과 같음) 2. ————— <u>요건을</u> ———. 가.·나.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 ———— <u>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u>————— ——.

현행	개정안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략) 6. 기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종사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 ③(생략) 〈신설〉	②—— 1명 —— —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 ③(현행과 같음) 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 풍부한 사람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6조(회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u>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①상표</u>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농산물로서의 품질·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u>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상표사용</u> 자는 우수농산물로서의 품질·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취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19조(무단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도지사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생략)	제15조(지정 취소) ①—— 호의 어느 하나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무단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 도지사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4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5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 6 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적용범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도 및 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도 및 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 등

②도지사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지원)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 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u>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신 설〉	<u>제9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79명”을 “5,289”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 중 “4,886명”을 “4,901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 립 각급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0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제5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 속 기 한
	계	직 급 별 내 역	
본 청 (학교육성단)	4	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	2015. 12. 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27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886명
3. (생략)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 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79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84	-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54	-	-	-	-
전문경력관 소계	4	-	-	-	-
연구직 계	6	-	-	-	-
연구사	6	-	-	-	-
특정직 계	388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 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 연구사	340	-	-	-	-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
----- 5,289명 -----

〈삭 제〉

2. -----

----- 4,901명 -----
3.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 계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89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	-
전문경력관 소계	4	-	-	-
연구직 계	6	-	-	-
연구사	6	-	-	-
특정직 계	388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0	-	-	-

현행				개정안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5조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5조 관련)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계	직급별 내역			계	직급별 내역	
본청 (<u>적정규모</u> <u>학교육성</u> 추진단)	4	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	2015. 12. 31	본청 (<u>학교</u> <u>육성단</u>)	4	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	2015. 12. 31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4년 11월 25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 [별표 4]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학교육성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개정 추진중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임.

2. 주요골자

- 안 “별표 3,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별표 3,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table> <tr> <th>단위 기관별 직급별</th><th>합계</th><th>경상북도 의회 사무처</th><th>본청 (의숙 기관)</th><th>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th><th>공립 각급 학교</th></tr> <tr> <td>총 계</td><td>5,279</td><td></td><td>-</td><td></td><td></td></tr> <tr> <td>정무직 계</td><td>1</td><td></td><td>1</td><td></td><td></td></tr> <tr> <td>교육감</td><td>1</td><td></td><td>1</td><td></td><td></td></tr> <tr> <td>일반직 계</td><td>4,884</td><td></td><td>-</td><td></td><td></td></tr> <tr> <td>3 급</td><td>3</td><td></td><td>3</td><td></td><td></td></tr> <tr> <td>3~4급</td><td>4</td><td></td><td>4</td><td></td><td></td></tr> <tr> <td>4 급</td><td>19</td><td>1</td><td>17</td><td>1</td><td></td></tr> <tr> <td>5급 이하 소계</td><td>4,854</td><td></td><td>-</td><td></td><td></td></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td>4</td><td></td><td>-</td><td></td><td></td></tr> <tr> <td>연구직 계</td><td>6</td><td></td><td>-</td><td></td><td></td></tr> <tr> <td>연구사</td><td>6</td><td></td><td>-</td><td></td><td></td></tr> <tr> <td>특정직 계</td><td>388</td><td></td><td>-</td><td></td><td></td></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48</td><td>-</td><td>24</td><td>24</td><td>-</td></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340</td><td></td><td>-</td><td></td><td></td></tr> </table>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7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8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5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table> <tr> <th>단위기관별 직급별</th><th>합계</th><th>본청 (의숙 기관)</th><th>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th><th>공립 각급 학교</th></tr> <tr> <td>총 계</td><td>5,289</td><td></td><td>-</td><td></td></tr> <tr> <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r> <tr> <td>교육감</td><td>1</td><td>1</td><td></td><td></td></tr> <tr> <td>일반직 계</td><td>4,894</td><td></td><td>-</td><td></td></tr> <tr> <td>3 급</td><td>3</td><td>3</td><td></td><td></td></tr> <tr> <td>3~4급</td><td>4</td><td>4</td><td></td><td></td></tr> <tr> <td>4 급</td><td>19</td><td>18</td><td>1</td><td></td></tr> <tr> <td>5급 이하 소계</td><td>4,864</td><td></td><td>-</td><td></td></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td>4</td><td></td><td>-</td><td></td></tr> <tr> <td>연구직 계</td><td>6</td><td></td><td>-</td><td></td></tr> <tr> <td>연구사</td><td>6</td><td></td><td>-</td><td></td></tr> <tr> <td>특정직 계</td><td>388</td><td></td><td>-</td><td></td></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48</td><td>24</td><td>24</td><td>-</td></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340</td><td></td><td>-</td><td></td></tr> </table>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table> <tr> <th>단위기관별 직급별</th><th>합계</th><th>본청 (의숙 기관)</th><th>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th><th>공립 각급 학교</th></tr> <tr> <td>총 계</td><td>5,289</td><td></td><td>-</td><td></td></tr> <tr> <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r> <tr> <td>교육감</td><td>1</td><td>1</td><td></td><td></td></tr> <tr> <td>일반직 계</td><td>4,894</td><td></td><td>-</td><td></td></tr> <tr> <td>3 급</td><td>3</td><td>3</td><td></td><td></td></tr> <tr> <td>3~4급</td><td>4</td><td>4</td><td></td><td></td></tr> <tr> <td>4 급</td><td>19</td><td>18</td><td>1</td><td></td></tr> <tr> <td>5급 이하 소계</td><td>4,864</td><td></td><td>-</td><td></td></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td>4</td><td></td><td>-</td><td></td></tr> <tr> <td>연구직 계</td><td>6</td><td></td><td>-</td><td></td></tr> <tr> <td>연구사</td><td>6</td><td></td><td>-</td><td></td></tr> <tr> <td>특정직 계</td><td>388</td><td></td><td>-</td><td></td></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48</td><td>24</td><td>24</td><td>-</td></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340</td><td></td><td>-</td><td></td></tr> </table>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7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8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5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숙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table> <tr> <th rowspan="2">기관별</th><th colspan="2">정원</th><th rowspan="2">존속 기한</th></tr> <tr> <th>계</th><th>직급별 내역</th></tr> <tr> <td>본청 (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td><td>4</td><td>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td><td>2015. 12. 31</td></tr> </table>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계	직급별 내역	본청 (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4	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	2015. 12. 31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계	직급별 내역																																																																																																																																																																																																																																																
본청 (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4	일반직 : 4급 1명, 5급 이하 3명	2015. 12. 31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8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901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88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 립 각급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생략) 〈신설〉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현행과 같음) <u>⑥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u> <u>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u> <u>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u> <u>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u> <u>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u> <u>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u> <u>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u> <u>하여야 한다.</u> 1. <u>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u> <u>： 5일</u> 2. <u>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u>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교육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신청사(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 3 조(지원대상) 이주지원비 지원대상은 이전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제 4 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5 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지원기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이주지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 지급대상

-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신청사(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경상북도청·경상북도의회사무처 파견자 포함)

- 경상북도교육청(본청)으로 파견된 공무원

◆ 제외대상자

- 중앙부처, 자치단체 간 상호 인사 교류자
-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 국내·외 직무파견자, 장기교육자

□ 지급액 : 1인당 월 3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전보·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달 급여일 전후

- 청사 이전 완료 후 당월 분은 다음 달에 지급하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 지급기간 : 청사 이전 완료 후 다음 달부터 3년간

【별표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 지급대상

-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신청사(본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 제외대상자

-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 군복무 중인 공익요원

□ 지급액 : 1인당 월 3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달 급여일 전후

- 청사 이전 완료 후 당월 분은 다음 달에 지급하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 지급기간 : 청사 이전 완료 후 다음 달부터 3년간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대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일월초등학교청북분교장병설유치원,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김천유치원”란 다음에 “울곡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울곡유치원	김천시 용전4로 1길 33

“성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남울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남울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4길 39

“창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두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두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두호로52번길 13

“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삼성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삼성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경청로216길 20

서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1-20”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로 하고,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 명칭란 중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을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대신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방지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청북분교장,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 소천초등학교남회룡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평산초등학교”란 다음에 “삼성현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명 칭	위 치
삼성현초등학교	경산시 경청로216길 20

율곡초등학교 위치란 중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를 “김천시
용전1로 51”로, 서후초등학교 위치란 중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371-20”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로 하고,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 명칭란 중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을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율곡중학교 위치란 중 “김천시 율곡동 7-142”를 “김천시
혁신4로 45”로 한다.

별표 4의 “김천여자고등학교”란 다음에 “율곡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율곡고등학교	김천시 용전4로3길 15

“경산고등학교”란 다음에 “사동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명 칭	위 치
사동고등학교	경산시 삼성현로91길 36

경북자동차고등학교 명칭란 중 “경북자동차고등학교”를 “경북기계
금속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 치 원		【별표 1】 유 치 원		
명	칭	명	칭	위
〈신	설〉	명	칭	위
〈신	설〉	울곡유치원	김천시 용전4로	1길 33
〈신	설〉	남율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4길 39
〈신	설〉	두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두호로	52변길 13
〈신	설〉	삼성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경청로	216길 20
대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천시 아포읍	〈삭	제〉	
대신길 103		〈삭	제〉	
동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청도군 금천면	〈삭	제〉	
동곡1길 11-5		〈삭	제〉	
방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청도군 금천면	〈삭	제〉	
청려로 4649		〈삭	제〉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삭	제〉	
유학로 86-9		〈삭	제〉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삭	제〉	
서중리7길 15		〈삭	제〉	
임월초등학교청북분교장병설유치원	영양군 청기면	〈삭	제〉	
재일로 1383-23		〈삭	제〉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병설유치원	영덕군 영덕읍	〈삭	제〉	
창포길 2-11		서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
서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동시 서후면 학가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산온천길 371-20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현행	개정안																																																				
【별표 2】 초등학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신설></td><td></td></tr> <tr> <td>대신초등학교</td><td>김천시 아포읍 대신길 103</td></tr> <tr> <td>동곡초등학교</td><td>청도군 금천면 동곡1길 11-5</td></tr> <tr> <td>방지초등학교</td><td>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649</td></tr> <tr> <td>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td><td>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83-23</td></tr> <tr> <td>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td><td>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td></tr> <tr> <td>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td><td>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로 777</td></tr> <tr> <td>율곡초등학교</td><td>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td></tr> <tr> <td>서후초등학교</td><td>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371-20</td></tr> <tr> <td>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td><td>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td></tr> </table> 【별표 3】 중학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율곡중학교</td><td>김천시 율곡동 7-142</td></tr> </table>	명칭	위치	<신설>		대신초등학교	김천시 아포읍 대신길 103	동곡초등학교	청도군 금천면 동곡1길 11-5	방지초등학교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649	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83-23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로 777	율곡초등학교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	서후초등학교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371-20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명칭	위치	율곡중학교	김천시 율곡동 7-142	【별표 2】 초등학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삼성현초등학교</td><td>경산시 경청로 216길 20</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삭제></td><td></td></tr> <tr> <td>율곡초등학교</td><td>김천시 용전1로 51</td></tr> <tr> <td>서후초등학교</td><td>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td></tr> <tr> <td>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장</td><td>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td></tr> </table> 【별표 3】 중학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율곡중학교</td><td>김천시 혁신4로 45</td></tr> </table>	명칭	위치	삼성현초등학교	경산시 경청로 216길 2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율곡초등학교	김천시 용전1로 51	서후초등학교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명칭	위치	율곡중학교	김천시 혁신4로 45
명칭	위치																																																				
<신설>																																																					
대신초등학교	김천시 아포읍 대신길 103																																																				
동곡초등학교	청도군 금천면 동곡1길 11-5																																																				
방지초등학교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649																																																				
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83-23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로 777																																																				
율곡초등학교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																																																				
서후초등학교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371-20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명칭	위치																																																				
율곡중학교	김천시 율곡동 7-142																																																				
명칭	위치																																																				
삼성현초등학교	경산시 경청로 216길 2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율곡초등학교	김천시 용전1로 51																																																				
서후초등학교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75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명칭	위치																																																				
율곡중학교	김천시 혁신4로 45																																																				

현행	개정안																
【별표 4】 고 등 학 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신_____〉</td><td>_____설〉</td></tr> <tr> <td>〈신_____〉</td><td>_____설〉</td></tr> <tr> <td>경북자동차 고등학교</td><td>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td></tr> </table>	명칭	위치	〈신_____〉	_____설〉	〈신_____〉	_____설〉	경북자동차 고등학교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별표 4】 고 등 학 교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울곡고등학교</td><td>김천시 용전4로 3길 15</td></tr> <tr> <td>사동고등학교</td><td>경산시 삼성현로 91길 36</td></tr> <tr> <td>경북기계금속 고등학교</td><td>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td></tr> </table>	명칭	위치	울곡고등학교	김천시 용전4로 3길 15	사동고등학교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36	경북기계금속 고등학교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명칭	위치																
〈신_____〉	_____설〉																
〈신_____〉	_____설〉																
경북자동차 고등학교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명칭	위치																
울곡고등학교	김천시 용전4로 3길 15																
사동고등학교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36																
경북기계금속 고등학교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부터 같은 조 제32호까지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 31.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 32.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_____ _____.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제1호의 각급학교(거점지원센터는 권역내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 포함)·사용승인	30. _____ _____ _____ _____. 다만, 공립 <u>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u>
31. 제30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31. _____ _____. 다만, 공립 <u>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u>
32. 제30호 각급학교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32. _____ _____. 다만, 공립 <u>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u>

≡ 동 의 안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구경북경2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1일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목적 및 용도 : 투자유치·통상활동 지원 및 지방외교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0.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이전 신도시 내
- 규 모 : 1,000㎡(지상 1층, 지하 1층)
※ 부 지 : 10,000㎡
- 사 업 비 : 9,833백만원(도비)
- 산출내역
 - 토지 : $10,000\text{㎡} \times 333.3\text{천원/㎡} \approx 3,333,000\text{천원}$
 - 건물 : $1,000\text{㎡} \times 6,500\text{천원/㎡} \approx 6,500,000\text{천원}$
- 계약방법 : 부지 - 수의계약, 건물 - 일반경쟁입찰

□ 『청도소방서』 건물 신축

- 목적 및 용도 : 증가하는 재난사고 등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1.

-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원정3길 49
- 규 모 : 3,630㎡(지상 3층, 지하 1층)
- ※ 부 지 : 9,097㎡(청도군 제공)
- 산출내역
 - 건물 : $3,630\text{㎡} \times 2,242\text{천원/㎡} \approx 8,140,000\text{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	10,000 4,630	3,333,000 14,64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0,000	3,333,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4,630	14,640,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연번	계 산 소재지	목 적	용 도	사업기간 (취득시기)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산출내역)	계약 방법	비고
1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부지	2015. 1. ~ 2017. 10. (2015.10)	3,333,000	10,000m ²	10,000m ² × 333.3천원/m ² = 3,333,000	수의 계약	부지 매입
2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건물	2015. 1. ~ 2017. 10.	6,500,000	연면적 1,000m ² (지상 1층/ 지하 1층)	1,000m ² × 6,500천원/m ² = 6,50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3	청도군 청도읍 원정3길 49	지역 소방서 설치로 각종 재난 신속 대응 거점 구축	청도소방서 건물	2015. 3. ~ 2017. 11.	8,140,000	연면적 3,630m ² (지상 3층/ 지하 1층)	3,630m ² × 2,242천원/m ² ≈ 8,14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2015년도 경상북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 12. 11.

제안자 : 행정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부지 10,000㎡, 건물 1,000㎡)의 건에 대해서는 부지(5,000㎡) 및 건축(800㎡) 면적 축소와 건축비 과다에 따른 기준가격을 변경(인하)하고자 수정하고,
 - “청도소방서 건물 신축”(3,630㎡)건은 원안 의결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위 치 : 도청이전 신도시 내
 - 사업규모 : 800㎡(지상 1층 500㎡, 지하 1층 300㎡)
 - ※ 부 지 : 5,000㎡
 - 사 업 비 : 6,167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0.
- 『청도소방서』 건물 신축
 -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원정3길 49
 - 사업규모 : 연면적 3,630㎡(지상 3층, 지하 1층)
 - ※ 부 지 : 9,097㎡(청도군 제공)

- 사 업 비 : 8,14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1.

3.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	5,000 4,430	1,666,500 12,64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5,000	1,666,5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4,430	12,640,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연번	제 산 소재지	목 적	용 도	사 업 기 간 (취득시기)	소 요 예 산	사 업 규 모	기 준 가 격 명 세 (산출내역)	계 약 방법	비 고
1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부지	2015. 1. ~ 2017. 10. (2015.10)	1,666,500	5,000m ²	5,000m ² × 333.3천원/m ² = 1,666,500	수의 계약	부지 매입
2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건물	2015. 1. ~ 2017. 10.	4,500,000	연면적 800m ² (지상 1층/ 지하 1층)	800m ² × 5,620천원/m ² ≒ 4,50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3	청도군 청도읍 원정3길 49	지역 소방서 설치로 각종 재난 신속 대응 거점 구축	청도소방서 건물	2015. 3. ~ 2017. 11.	8,140,000	연면적 3,630m ² (지상 3층/ 지하 1층)	3,630m ² × 2,242천원/m ² ≒ 8,14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 총괄표(신·구 대조)

(단위 : m², 천원)

			당 초				수 정			
구 분			건수	수 량	금 액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1	<u>10.000</u>	<u>3,333,000</u>		1	<u>5,000</u>	<u>1,666,500</u>	
		건물	2	<u>4,630</u>	<u>14,640,000</u>		2	<u>4,430</u>	<u>12,640,000</u>	
		기타								
	1. 매입	토지	1	<u>10.000</u>	<u>3,333,000</u>		1	<u>5,000</u>	<u>1,666,500</u>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처분	계	건물								
		기타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2	<u>4,630</u>	<u>14,640,000</u>		2	<u>4,430</u>	<u>12,640,000</u>	
		건물								
		기타								
		기타								
분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분	6. 기타처분	건물								
		기타								
		기타								
		기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을 “경상
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8인, 경상
북도 8인, 지식경제부”를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7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자격) ①(생략) ② 조합회의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8인, 경상북도 8인, 지식경제부 1인으로 한다. ③(생략) 1. ~ 2. (생략) 3. 지식경제부에서 추천하는 자 4. (생략) ④ ~ ⑥ (생략) 부칙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제6조(구성 및 자격) ①(현행과 같음) ②-----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7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 ----- ③(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통상자원부-----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안전행정부장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11월 26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기구 명칭에 맞추어 동의안 부칙을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부칙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규약은 <u>행정안전부 장관</u>의 승인이 있는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u>안전행정부 장관</u>의 승인이 있는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u>행정자치부 장관</u>의 승인이 있는 날 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을 “경상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8인, 경상북도 8인, 지식경제부”를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7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1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재산 137,436,879천원

- 토지 : 86,213.6㎡ 17,943,704천원
- 건물 : 55,233.66㎡ 119,493,175천원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5건)

- (가칭)양서초등학교 11,495㎡(3,478평) 2,471,150천원
- (가칭)웅부중학교 717㎡(216평) 32,265천원
- (가칭)문성초등학교 12,028.8㎡(3,639평) 1,210,289천원
- (가칭)신대초등학교 15,516.8㎡(4,694평) 8,530,000천원
- (가칭)울릉중학교 46,456㎡(14,056평) 5,700,000천원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교사동 취득(5건)

- (가칭)양서초등학교 11,580.55㎡(3,503평) 20,655,548천원
- (가칭)웅부중학교 10,744.59㎡(3,251평) 24,406,311천원
- (가칭)문성초등학교 8,628.52㎡(2,610평) 15,811,037천원
- (가칭)신대초등학교 9,070㎡(2,744평) 17,437,113천원
- (가칭)울릉중학교 12,327㎡(3,729평) 33,898,361천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권장시설 취득(3건)

- 서라벌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980㎡(296평) 2,219,454천원
- 신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822.5㎡(248평) 2,043,598천원
- 남계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1,080.5㎡(326평) 3,021,753천원

□ 처분재산 436,289천원

- 토 지 : 17,321㎡ 221,708천원
- 건 물 : 887㎡ 212,775천원
- 입목죽 : 27주 1,806천원

○ 폐교재산 매각(1건)

- 상주 함창초 송덕분교장(상주시) 17,321㎡(5,240평) 436,289천원

□ 취득대상 재산 목록(신·구 대조)

(단위: m², 천원)

연번	제 산 소재지	목 적	용 도	사업기간 (취득시기)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산출내역)	계약 방법	비고
1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부지	2015. 1. ~ 2017. 10. (2015.10)	3,333,000	10,000m ²	$\frac{10,000\text{m}^2 \times 333.3\text{천원/m}^2}{= 3,333,000}$	수의 계약	부지 매입
수정	//	//	//	//	1,666,500	5,000m ²	$\frac{5,000\text{m}^2 \times 333.3\text{천원/m}^2}{= 1,666,500}$	//	//
2	도청이전 신도시 (공청3)	국내외 투자자 초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외통상활동 공간 확보	경상북도 대외통상 교류관 건물	2015. 1. ~ 2017. 10.	6,500,000	연면적 $\frac{1,000\text{m}^2}{(\text{지상 1층/지하 1층})}$	$\frac{1,000\text{m}^2 \times 6,500\text{천원/m}^2}{= 6,50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수정	//	//	//	//	4,500,000	연면적 $\frac{800\text{m}^2}{(\text{지상 1층/지하 1층})}$	$\frac{800\text{m}^2 \times 5,620\text{천원/m}^2}{= 4,500,000}$	//	//
3	청도군 청도읍 원정3길 49	지역 소방서 설치로 각종 재난 신속 대응 거점 구축	청도소방서 건물	2015. 3. ~ 2017. 11.	8,140,000	연면적 $\frac{3,630\text{m}^2}{(\text{지상 3층/지하 1층})}$	$\frac{3,630\text{m}^2 \times 2,242\text{천원/m}^2}{= 8,140,000}$	일반 경쟁 입찰	건물 신축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1일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

□ 변경 이유

- 학교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중학군(구) 변경 내용을 반영
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구 분	학 교 명	개교 일시
신 설	울곡초등학교	2014. 3. 1.
	해마루초등학교	2014. 3. 1.

-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구 분	학 교 명	폐지 일시
폐 지	구룡포초등학교구남분교장	2014. 3. 1.
	강동초등학교단구분교장	2014. 3. 1.

구 분	학 교 명	폐지 일시
폐 지	함창초등학교송덕분교장	2014. 3. 1.
	단북초등학교	2014. 3. 1.

○ 학교 교명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일시
교명 변경	이동중학교	포항이동중학교	2013. 9. 1.
	농남중학교	울곡중학교	2014. 9. 1.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중학구(군) 조정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학교인 영덕 영해중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축산중학구와 병곡중학구를 영해 중학구와 자유중학구로 변경

□ 적용시기 : 201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붙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포항)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포항 포항중앙 포항영흥 포항남부 포항동부 포항향도 포항송도 신흥 청림 대해 송림 대도 인덕 효자 두호 두호남부 양학 이동 죽도 대잠 상대 항구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대이		포항중 대도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향도중 상도중 송도중 용흥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포항여중 환호여중 동지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효자초등 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 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전 죽천 유강	- 왕신3리 중 사라는 경주시 중학교군			효자초등 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 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강동				
	(2) 포항시 제2학교군	청림 인덕		상도중 송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졸업생의 희망에 의한 선배정
	(3) 오천	오천 구정 문충 문덕 포항원동 장기	- 죽정리, 정천리 (기타는 장기중)	신흥중 포항포은중 오천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인덕				
	(4) 연일	연일 연일형산 대송 남성		영일중 대송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1) 연일, 연일형산 졸업생중, 영일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2) 대송, 남성 졸업 생 중, 대송 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청림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남녀공학 남녀공학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일형산초등학교		남녀공학	영일중학교	
대송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녀공학	대송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경주)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5) 경주시	계림 월성 황남 경주 동방 서라벌 황성 화랑 흥무 신라 동천 유림 용강 용황 사방 모량 내남 현곡 나원 금장 강동 천북 물천분교 모아 모서분교	- 모량1리, 광명1, 2동 (기타는 무산중) - 왕신3리 중 사라 (기타는 포항시 제1학교군)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계림중 화랑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남 여 남·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나원초등학교 금장초등학교		남·여	화랑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천북초물천분교장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내남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 황남동 12~16통, 18통(2, 3반), 월성동 7통, 내남면 용장4리	남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용강초등학교		여	근화여자중학교	
동방초등학교 서라벌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 보덕동 4통, 월성동 21-23통, 24통(2반)	남 여	경주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주초등학교 모량초등학교	- 모량1리, 광명1, 2동	남 남 여	문화중학교 월성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김천)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김천 김천중앙 김천서부 금릉 김천다수 김천모암 김천동부 양천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농소 개령서부 아천 봉계 태화 직지 대룡 김천 조마	- 신촌리, 월곡 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 4리(기타는 율곡중) - 대신동26통, 27통중 모광, 다남2리 (기타는 개령중) - 남산3리 (기타는 어모중) - 추풍령중 (충북)과 자유학구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지례 중구성 분교와 자유학구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태화초등학교		남 여	김천중앙중 한일여중	희망학교 (택1) 선배정
봉계초등학교		남 여	김천중앙중 한일여중	
조마초등학교		남 남 여 여	석천중학교 문성중학교 김천여중 성의여중	
감천초등학교		남 여 여	성의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동)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7) 안동시	교대부설		안동중	안동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안동		경안중	북주여중	
		안동서부		경덕중	경안여중	
		안동동부		길주중	(남녀공학)	
		안동송현	- 수1, 2리는 풍산 중과 자유학구			
		북주				
		안동용상	- 망천1리 중 안마· 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길주	임동중과 자유 학구			
		안동강남				
		영가				
		안동영호				
		영남				
		송천				
		서선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기타는			
		와룡	안동중외룡분교)			
		북후	- 도진리중 아랫마사 (기타는 북후중)			
		서후	- 광평1리는 북후중			
		대흥분교				
		남후	- 고하리, 고상리는 일직중과 자유학구, 하아리는 풍산중과 자유학구			
		남선				
		임하	- 금소1, 2리, 고곡리, 오대2리중 배일·어덕은 길안 중과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길주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임하초등학교	- 임동면 : 망천1리중 안마·망지네, 망천 2리중 숲당, 마리 - 임하면 : 노산리, 천전1, 2리, 임하1리	남·여	길주중학교	선배정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 송천초등학교·남선 초등학교·임하초등 학교·길주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학구내 거주자	남·여	길주중학교	위 선배정을 제외한 정원 범위내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
남후초등학교	- 고하리, 고상리는 일직중과 자유학구	남	안동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구미)

☐ 중학교군[illegible]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8) 구미시	구평남부 구미사곡 도봉 진평 구미오산 천생 구미왕산 구미봉곡 정수 옥계동부 해마루 구운 원호 문장	- 현일중과 자유 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선주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남·여 남	봉곡중학교 경구중학교	
구운초등학교		남	구미중학교	
원호초등학교	- 고아읍 원호1, 2리 (원호3~7리인 택지 개발지구는 제외)	남	구미중학교	
지산초등학교	- 고아읍 문성리, 괴평리, 송림리	남	구미중학교	
구미초등학교	- 선기동(대성지 아랫 마을, 21통 제외) - 수점동(대성지 안쪽 마을) -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남	구미중학교	
원남초등학교	- 선기동 21통	남	구미중학교	
상모초등학교 오태초등학교 구미오산초등학교 구미왕산초등학교	- 임오동	남	금오중학교	
신기초등학교	- 양호동	남·여	구미신평중학교	
인동초등학교 구평초등학교 황상초등학교 인의초등학교 구평남부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천생초등학교		남·여	인동중학교 진평중학교 천생중학교	추첨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 금전2동은 오상중과 자유학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추첨배정
금오초등학교	- 남통동 남통마을 (금오산 식당 주변)	여	구미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영주)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9) 영주시	영주 영주동부 영주중앙 영주남부 영주서부 영일 남산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옥대 감천 (예천군) 도촌 (봉화군) 물야초수식 분교(봉화군)	- 두월리는 상운중 (봉화군)과 자유학구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안동시)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상운중(봉화군) - 용암리, 단촌2리는 풍기중학교군 - 동원리, 사천1리 (사천2리는 소수중, 기타는 단산중) - 기곡2리 중 한밤실 [기타는 감천중 (예천군)]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기타는 봉화 중학구) - 물야면 수식리는 봉화 중학구와 자유학구 (용암리는 부석중, 기타는 봉화중학구)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영주·영천)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10) 풍기	풍기 풍기북부 안정 봉현	- 웅암리, 단촌2리 (기타는 영주시 중학교군)	풍기중 금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영천시	(11) 영천시	영천 영천중앙 화남분교 영천동부 영화 포은 단포	- 호남리, 대곡리는 금호중학구와 자유 학구 - 송포리는 영안중과 자유학구 - 매산1동(기타는 산동중과 자유학구) - 상리리, 학리는 고정 중과 자유학구	영천중 영동중	영천여중 성남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 학교	비 고
영천중앙초등학교 영천중앙초화남분교장 영화초등학교	- 구 영북초등학교 학구 - 구 호당초등학교 학구	여	영천여자중학교	
영천초등학교	- 구 영도초등학교 학구 - 구 영천남부초등학교 학구	여	성남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상주)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12) 상주시	상주	- 신촌1, 2리, 고곡1, 2리(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내서중과 자유학구	상주중 남산중	상주여중 성신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상산				
		상주중앙				
		상영				
		상주동부				
		상주남부				
		성동				
		중동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예천군), 낙동중학구와 자유학구			
		사별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기타는 낙운중)			
		외남	- 지사리, 소은리 (기타는 청리중)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홀2리는 은척중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			
		백원	- 연봉1, 2리는 공검중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 배 정 학 교	비 고
사별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남 남 여 여	상주중학교 남산중학교 상주여자중학교 성신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문경)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13) 문경시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 (예천군) (기타는 산양중)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상주시) (기타는 가은중과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 (상주시) (기타는 가은중과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 (예천군)	문경중 점촌중		
경산시	(14) 경산시	경산 경산중앙 임당 경산동부 남성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자인 중학구와 자유학구	경산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경산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장산 경산서부 정평 사동 성암 옥곡 평산 압량 현흥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기타는 진량 중학교군)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남산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자인중 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자인중학구)			
		남천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경산)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15) 진량	진량 진성 다문	- 평(坪)사리 및 평(坪)사1, 2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 학구 - 마곡리, 현내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 학구	진량중 신상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부림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하양 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하양중학구)			
		봉황 현흥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는 경산시중학교군			
		하양초 화성분교	- 하양중학구와 자유 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 학교	비 고
남성초등학교 압량초등학교	- 갑제동, 가일리, 내리, 당음리, 신대리(신대부적 택지지구는 제외)	남 여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산중 경산여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현흥초등학교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남산초등학교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성·청도·칠곡·예천)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16) 안계	안계 쌍호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청도군	(17) 청도	청도 유천 청도중앙 화양 남성현	- 상동중(경남)과 자유학구 - 유등2리는 이서중 - 유등1, 3리, 서상2 리는 이서중과 자유 학구	모계중 청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칠곡군	(18) 왜관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석적 관호 약동 도원초선 동부분교 (성주군)	- 금남리 중 바우는 달서중(대구) - 삼청2리(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 - 장곡중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 - 선남면 용신1, 2, 3리는 명인중(성주 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	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순심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9) 북삼	북삼 승산 인평 오태	- 약목중과 자유학구 - 인평리(기타는 구미 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	북삼중 인평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예천군	(20)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과 자유학구	예천중 대창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구룡포	구룡포		구룡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2) 대보	대보	- 발산2리, 대동배 1리는 포항동해 중과 자유학구	대보중	(남녀공학)	
포항시	(3) 신광	신광		신광중	(남녀공학)	
포항시	(4) 송라	송라	- 지경1, 3리는 남정중(영덕군)	송라중	(남녀공학)	
포항시	(5) 기계	기계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분교	기북		기계중기북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7) 기계중 상옥분교	죽장초상옥 분교		기계중상옥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8) 제철	제철동 제철서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효자초등 학교는 포항시 1학군 및 제철 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9) 청하	청하 청하남부분교 월포		청하중	(남녀공학)	
포항시	(10) 동해	동해 대보	- 대동배1리, 발산 2리는 대보중과 자유학구(기타는 대보중)	포항동해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1) 장기	장기 모포분교 양포	- 죽정리, 정천리는 오천중학교군	장기중	(남녀공학)	
포항시	(12) 죽장	죽장	- 상사리, 하사리는 현동중(청송군)과 자유학구	서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13) 홍해	홍해 홍해남산 홍해서부 곡강		홍해중	(남녀공학)	
경주시	(14) 불국	불국사 영지 패릉		불국중	(남녀공학)	
경주시	(15) 안강	안강제일 안강 옥산 산대 양동		안강중	안강여중	
경주시	(16) 외동	입실 연안 모화 석계 양남	- 효동리(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 기타는 양남중)	외동중	(남녀공학)	
경주시	(17) 산내	의곡 일부분교	우라리는 아화중	산내중	(남녀공학)	
경주시	(18) 양남	양남 상계분교 나산 양북	-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 - 효동리는 외동중 - 봉길리 중 하봉 (기타는 양북중)	양남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19) 아화	아화 의곡	- 우라리(기타는 산내중)	아화중	(남녀공학)	
경주시	(20) 감포	감포	- 팔조리는 양북중	감포중	(남녀공학)	
경주시	(21) 양북	양북 감포 양남	- 봉길리 중 하봉은 양남중 - 팔조리(기타는 감포중) - 죽전리 중 남전 (효동리는 외동중, 기타는 양남중)	양북중	(남녀공학)	
경주시	(22) 무산	건천 천포 모량	- 모량1리, 광명1, 2동은 경주시 중학교군	무산중	(남녀공학)	
김천시	(23) 지례	지례 구성 부항	- 임천리, 임평리, 월계리, 마산리는 지례중구성분교와 자유학구(기타는 지례중구성분교) - 신옥리 중 밤소, 유촌1리 중 가톨릭(기타는 지례중부항분교)	지례중	(남녀공학)	
김천시	(24) 지례중 구성분교	구성 직지	- 임천리, 임평리, 월계리, 마산리는 지례중과 자유 학구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김천 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김천시중학교군)	지례중구성 분교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25) 지례중 부향분교	부향	- 신옥리 중 밤소, 유촌1리 중 가물 리는 지례중	지례중부향 분교	(남녀공학)	
김천시	(26) 아포	아포 대신 운곡 고아 (구미시)	- 초곡1리는 율곡 중과 자유학구 - 봉천1리는 율곡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 중과 자유학구 (황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구와 현 일중(구미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아포중	(남녀공학)	
김천시	(27) 개령	개령 개령서부	- 대신동26통, 27 통중 모광, 다남 2리는 김천시 중학교군	개령중	(남녀공학)	
김천시	(28) 감문	위량		감문중	(남녀공학)	
김천시	(29) 율곡	농소 운곡 대신 율곡	- 신촌리, 율곡2리 중 용시, 율곡 3리 중 남곡, 율곡4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봉천1리는 아포 중과 자유학구 - 부상2리는 약목중(칠곡군) - 초곡1리는 아포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	율곡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30) 어모	아천 능치	- 남산3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상주시)	어모중	(남녀공학)	
김천시	(31) 대덕	대덕		대덕중	(남녀공학)	
김천시	(32) 대덕중 증산분교	증산		대덕중증산 분교	(남녀공학)	
안동시	(33) 안동중 와룡분교	와룡 온혜 녹전	- 산야리, 중가 구리, 서지리는 안동시중학교군 - 천전리, 오천리 (의일리 중 안 을리·매쟁이, 구송리, 선양리 는 길주중 녹전 분교, 기타는 도산중) - 서삼리중 보재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 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 안지는 북후중, 기타는 길주중 녹전분교)	안동중와룡 분교	(남녀공학)	
안동시	(34) 안동중 인계분교	월곡 삼계분교	- 구룡리,계곡리는 임동중과 자유 학구 - 의촌리중 섬마· 의인, 원천리중 씩실은 도산중	안동중인계 분교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35) 길주중 녹전분교	녹전 원천분교 온혜	- 서삼리 중 보재는 안동중와룡분교 - 서삼리 중 새마· 상이전·하이전, 사산리중 어석· 태봉·안지는 북후중 - 원천1, 2리, 매정리는 상운중 (봉화군)과 자유학구 - 의일리중 안을리· 매쟁이, 구송리, 선양리(천전리, 오천리는 안동중 와룡 분교, 기타는 도산중)	길주중녹전 분교	(남녀공학)	
안동시	(36) 임동	임동 월곡 길주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는 진보중학구 (청송군) - 구룡리, 계곡리는 안동중인계분교와 자유학구(의촌리 중 섬마·의인, 원천리중 싹실은 도산중, 기타는 안동중인계분교) - 망천1리중 안마· 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임동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37) 북후	북후 서후 녹전 평은 (영주시)	- 도진리 중 아랫 마사는 안동시 중학교군 - 광평1리(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서삼리 중 새마· 상이전·하이전, 사산리 중 어석 ·태봉·안지 (서삼리 중 보재는 안동중 외통분교, 기타는 길주중 녹전분교) - 강동1리 중 왕류(천본1리 중 윗두들은 상운중(봉화군), 기타는 영주시 중학교군)	북후중	(남녀공학)	
안동시	(38) 길안	길안 길송분교 임하	- 황목리, 병부리는 청송중학구 (청송군) - 송사1리(기타는 현서중(청송군)) - 금소1, 2리, 고곡리, 오대 2리중 배일· 어덕은 안동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안동 시중학교군)	길안중	(남녀공학)	
안동시	(39) 풍천	풍천 풍서 신성		풍천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40) 도산	온혜 월곡 상운 (봉화군)	- 천전리, 오천리는 안동중와룡분교 - 의일리중 안을리·매쟁이, 구송리, 선양리는 길주중 녹전분교 - 의촌리중 섬마·의인, 원천리중 싹실(구룡리, 계곡리는 임동중과 안동중인계분교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중인계분교) - 신라1, 2리는 상운중(봉화군)과 자유학구(하늘2리 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기타는 상운중)	도산중	(남녀공학)	
안동시	(41) 풍산	풍산 풍북 안동송현 남후	- 수1, 2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일직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풍산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42) 일직	일직 남후 단촌 (의성군)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풍산중학구 자유학구,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세촌2리중 본동·동내개골(기타는 의성중학구)	일직중	(남녀공학)	
구미시	(43) 선산	선산 옥성 덕촌 고아	- 생곡리, 신기리는 도개중과 자유학구 - 산촌리, 구봉리, 옥판리는 낙동중(상주시)과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현일중과 자유학구[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과 아포중(김천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선산중	(남녀공학)	
구미시	(44) 무을	무을		무을중	(남녀공학)	
구미시	(45) 해평	해평	- 낙산리, 일선리는 도개중과 자유학구	해평중	(남녀공학)	
구미시	(46) 산동	산동		산동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47) 오상	장천 옥계 학림(칠곡군) 가산(칠곡군)	- 금전2동은 구미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금화리는 동명중 (칠곡군)	오상중	(남녀공학)	
구미시	(48) 도개	도개 해평 선산	- 낙산리, 일선리는 해평중과 자유 학구(기타는 해평중학구) - 생곡리, 신기리는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선산중학구)	도개중	(남녀공학)	
구미시	(49) 현일	교아 구운 남계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아포 중과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시중학교 군과 자유학구	현일중	(남녀공학)	
영주시	(50) 부석	부석 물야초수식 분교(봉화군)	- 보계리는 단산중 - 용암리(물야면 수식리는 영주시 중학교군과 봉화 중학구의 자유 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	부석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51) 단산	옥대 부석	- 사천2리는 소수중 - 동원리, 사천 1리는 영주시 중학교군 - 보계리(기타는 부석중)	단산중	(남녀공학)	
영주시	(52) 소수	순흥 옥대	- 사천2리(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 시 중학교군, 기타는 단산중)	소수중	(남녀공학)	
영천시	(53) 청통	청통		청통중	(남녀공학)	
영천시	(54) 신녕	신녕 화덕	- 대안3리(기타는 화산중)	신녕중	(남녀공학)	
영천시	(55) 화산	화산 화덕	- 화산1리(괭산 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산동 중과 자유학구 - 대안3리는 신녕중	화산중	(남녀공학)	
영천시	(56) 자천	자천 보현분교 지곡	- 오산1리는 산동중 - 용계리(달산 제외)(기타는 산동중)	자천중	(남녀공학)	
영천시	(57) 임고	임고 평천		임고중	(남녀공학)	
영천시	(58) 고경	고경 단포	- 상리리, 학리는 영천시중학교 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 중학교군)	고경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59) 영안	북안 영천	- 송포리는 영천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영천 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영안중	(남녀공학)	
영천시	(60) 영창	대창 금호 용성 (경산시)	- 강회리(기타는 금호중) - 매남4리는 용성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용성중 (경산시)]	영창중	(남녀공학)	
영천시	(61) 금호	영천 금호 거여	- 호남리, 대곡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영안중) - 강회리는 영창중	금호중	금호여중	
영천시	(62) 산동	자천 지곡 화산 영천중앙초 화남분교	- 오산1리(기타는 자천중) - 용계리(달산 제외)는 자천중 - 화산1리(곽산 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화산중과 자유 학구(기타는 화산중) - 매산1동은 영천시 중학교군(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63) 낙동	낙동동부 옥성 (구미시) 중동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선산 중학구(구미시)와 자유학구(기타는 선산중학구)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 (예천군), 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상주 시 중 학교군)	낙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64) 낙운	낙동 용포분교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은 상주시 중학교군	낙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65) 청리	청리 외남	- 지사리, 소은리는 상주시중학교군	청리중	(남녀공학)	
상주시	(66) 내서	상주 낙서	- 신촌1, 2리, 고곡1, 2리 (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내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67) 중모	중모 모동		중모중	(남녀공학)	
상주시	(68) 모서	모서 화동	- 화현1리(기타는 화동중)	모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69) 화동	화동 화령	- 화현1리는 모서중 - 소곡2리 중 배실 (기타는 화령중)	화동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70) 화령	화령 외서 농암초청화 분교(문경시) 수정초삼가 분교(충북)	- 소곡2리 중 배실은 화동중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홀2 리는 은척중 (기타는 상주시 중학교군) - 내서3리(기타는 가은중 및 문경 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동관리(기타는 속리중(충북))	화령중	(남녀공학)	
상주시	(71) 은척	외서 은척 무릉분교 이안 농암 (문경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홀 2리(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 중, 기타는 상주 시중학교군)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 양범3리, 대현리 (한티제외), 아천 리는 함창중학 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함창 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 (기타는 가은중 및 문경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은척중	(남녀공학)	
상주시	(72) 공검	공검 백원	- 연봉1, 2리 (기타는 상주시 중학교군)	공검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73) 화북	화북 입석분교 용화분교	- 입석1리는 송면중 (충북)과 자유 학구(기타는 송면중) - 보은중(충북)과 자유학구	화북중	(남녀공학)	
상주시	(74) 용운	옥산 능치 (김천시)	- 영오리(기타는 어모중(김천시))	용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75) 함창	함창 함창중앙 이안 은척초무릉 분교	- 양범3리, 대현리 (한티제외), 아천 리는 은척중학 구와 자유학구 -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함창중	상지여중	
문경시	(76) 문경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중 감실은 용궁중 (예천군)(기타는 산양중)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상주시) (기타는 가은중과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상주시) (기타는 가은 중과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예천군)		문경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77) 산양	산양	- 평지2리는 문경시 중학교군 및 문경 중학구 - 위만1리, 우본리중 감실은 용궁중 (예천군)	산양중	(남녀공학)	
문경시	(78) 산북	산북 창구분교 동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는 용궁중 (예천군) - 마광리[명전리는 동로중과 단성중 (충북)과의 자유 학구, 기타는 동로중]	산북중	(남녀공학)	
문경시	(79) 동로	동로 단천초가산 분교(충북)	- 마광리는 산북중 - 명전리는 단성중 (충북)과 자유 학구 - 단성면 벌천리, 대강면 반곡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기타는 단성중)	동로중	(남녀공학)	
문경시	(80) 문경읍	문경 용흥 당포		문경서중	(남녀공학)	
문경시	(81) 마성	동성		마성중	(남녀공학)	
문경시	(82) 가은	가은 희양분교 농암 청화분교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상주시) (기타는 문경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 (상주시)(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가은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83) 자인	자인 남산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경산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	자인중	자인여중	
		남성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경산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경산 시중학교군)			
		다문	- 마곡리, 현내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하양중학구)			
경산시	(84) 용성	용성	- 매남4리는 영창중 (영천시)과 자유 학구	용성중	(남녀공학)	
		동곡 (청도군)	- 소천3리는 용성중 (기타는 금천중 (청도군))			
경산시	(85) 하양	하양 화성분교	-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무학중	하양여중	
		하주 청천	- 청천리, 남하1, 2리, 은호1, 2 리는 대구광역시 3학교군(동구)과 자유학구			
		금락 다문	- 평(坪)사리, 평(平)1, 2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자인중학구)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부림 와촌 계당 대동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군위군	(86) 군위	군위 효령 송원	- 노행2리 중 심원 (기타는 효령중) - 사리2리는 비안 중(의성군)	군위중	(남녀공학)	
군위군	(87) 효령	효령 고매	- 노행2리 중 심원은 군위 중학구	효령중	(남녀공학)	
군위군	(88) 부계	부계		부계중	(남녀공학)	
군위군	(89) 우보	우보		우보중	(남녀공학)	
군위군	(90) 의흥	의흥 석산분교		의흥중	(남녀공학)	
의성군	(91)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점곡 옥전	- 세촌2리 중 본동· 동내개골은 일직중 (안동시)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제외), 실업 2리 중 윗몸안골 (기타는 옥산중)	의성중	의성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평 금성	- 신안3리(대사 1리는 봉양중, 기타는 안평중) - 만천1, 2리 (기타는 금성중)			
의성군	(92) 금성	금성	- 만천1, 2리는 의성중학구	금성중	탑리여중	
의성군	(93) 다인	다인	- 용곡1, 2, 3리는 지보중(예천군)과 자유학구	다인중	(남녀공학)	
의성군	(94) 안평	안평 신평분교	- 대사1리는 봉양중 - 신안3리는 의성 중학구	안평중	(남녀공학)	
의성군	(95) 안계	구천 안계 쌍호		안계중	(남녀공학)	- 구천 초등 학교 : 남· 여학생
의성군	(96) 비안	이두 송원 (군위군)	- 사리2리(기타는 군위중)	비안중	(남녀공학)	
의성군	(97) 봉양	도리원 안평	- 대사1리(신안 3리는 의성중 학구, 기타는 안평중)	봉양중	(남녀공학)	
의성군	(98) 옥산	옥전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제외), 실업 2리 중 윗몸 안골은 의성중 학구	옥산중	(남녀공학)	
의성군	(99) 단밀	단밀		단밀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100) 가음	가음 춘산		가음중	(남녀공학)	
청송군	(101) 청송	청송 파천 길안 (안동시) 이전	- 지리는 청송중 부동분교와 자유 학구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는 진보중 - 황목리, 병부리 [기타는 길안중 (안동시)] - 상평리중 석고개 (기타는 청송중 부동분교)	청송중	청송여중	
청송군	(102) 청송중 부동분교	청송 이전	- 지리는 청송중 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청송중 학구) - 상평리 중 석고 개는 청송중	청송중부동 분교	(남녀공학)	
청송군	(103) 구천	부남		구천중	(남녀공학)	
청송군	(104) 현서	화목 길안초길송 분교(안동시)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 락은 안덕중 - 송사리는 길안중(안동시)	현서중	(남녀공학)	
청송군	(105) 안덕	안덕 화목	- 인지리 중 추강· 손달은 현동중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락 (기타는 현서중)	안덕중	(남녀공학)	
청송군	(106) 현동	도평 안덕 죽장 (포항시)	- 인지리중 추강· 손달(기타는 안덕중) - 상사리, 하사리는 서포중(포항시)과 자유학구(기타는 서포중)	현동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송군	(107) 진보	진보 파천 임동 (안동시) 입암 (영양군)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기타는 청송중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 [기타는 임동중 (안동시)] - 홍구리, 방전리는 입암중(영양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양중학구와 입암중의 자유 학구)	진성중	진보중	
영양군	(108) 영양	영양 영양중앙 입암 일월 청기분교 청북분교 수비 석보	- 입암중과 자유학구 [홍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청송 군)와 입암중의 자유학구] - 수비중과 자유 학구 - 수비중과 자유 학구 - 석보중과 자유 학구	영양중	영양여중	
영양군	(109) 입암	입암	- 홍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청송 군)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양중 학구와 자유학구)	입암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양군	(110) 석보	석보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석보중	(남녀공학)	
영양군	(111) 수비	일월 수비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수비중	(남녀공학)	
영덕군	(112) 영덕	영덕야성 창포분교 매정분교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골 (기타는 지품중)	영덕중	영덕여중	
영덕군	(113) 강구	강구 남정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 (기타는 남정중)	강구중	(남녀공학)	
영덕군	(114) 남정	남정 송라 (포항시)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는 강구중 - 지경1, 3리(기타는 송라중(포항시))	남정중	(남녀공학)	
영덕군	(115) 지품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 골은 영덕중학구	지품중	(남녀공학)	
영덕군	(116) 축산	축산항 경정분교 영해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사진3 리는 영해중)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 학구)	축산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덕군	(117) 영해	축산향 경정분교 영해 병곡 원향 창수 인천분교	- 사진3리(기타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 학구) - 병곡중학교와 자유학구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및 각리1, 2, 3리(기타는 병곡중학구와 자유학구)	영해중	(남녀공학)	
영덕군	(118) 병곡	병곡 원향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및 각리1, 2, 3리는 영해중학구)	병곡중	(남녀공학)	
청도군	(119) 풍각	풍각 각남	- 녹명2리 - 녹명1리는 이서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	풍각중	(남녀공학)	
청도군	(120) 풍각중 각북분교	덕산		풍각중각북 분교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도군	(121) 금천	금천 동곡 방지 문명분교	- 소천3리는 용성중 (경산시)	금천중	(남녀공학)	
청도군	(122) 매전	동산	- 예전2리, 내1, 2리, 지전1, 2리, 송원리, 구촌리는 상동중 (경남)과 자유학구	매전중	(남녀공학)	
청도군	(123) 이서	이서 각남 화양	- 녹명2리는 풍각중 - 녹명1리는 풍각중과 자유학구 - 유등2리 - 유등1, 3리, 서상 2리는 청도중 학교 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청도중 학교군)	이서중	(남녀공학)	
고령군	(124) 고령	고령 덕곡 운수 우곡초 수륜 (성주군)	- 노2리, 백1, 2리는 수륜중 (성주군)과 자유 학구 - 사촌리 4반 - 예곡리 중 부례는 구지중 (대구), 기타는 우곡중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수륜중 (성주군)과 자유 학구	고령중	(남녀공학)	
고령군	(125) 고령중 개진분교	개진		고령중개진 분교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고령군	(126) 성산	성산 박곡		성산중	(남녀공학)	
고령군	(127) 우곡	우곡	- 사촌리 4반은 고령중학구 - 예곡리 중 부레는 구지중(대구)	우곡중	(남녀공학)	
고령군	(128) 쌍림	쌍림		쌍림중	(남녀공학)	
고령군	(129) 다산	다산 용암 (성주군)	- 동락2리 중 가죽정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 동락2리 중 모방 골은 수륜중 (성주군), 기타는 용암중(성주군)	다산중	(남녀공학)	
성주군	(130) 성주	성주 성주중앙 선남 용암 대가 초전	- 문방1, 2, 3리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명인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 - 중거1, 2리 - 동락2리 중 모방 골은 수륜중, 동락2리 중 가죽 정은 다산중 (고령중), 기타는 용암중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가천중과 자유 학구	성주중	성주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월향	- 용성1리(기타는 초전중)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초전중학구와 자유학구			
성주군	(131) 가천	가천 무학분교 대가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성주중) - 수성1리 중 가람 (기타는 수륜중)	가천중	(남녀공학)	
성주군	(132) 용암	용암 대동	- 동락2리 중 가죽 정은 다산중 (고령군) - 동락2리 중 모방 골은 수륜중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기타는 명인중)	용암중	(남녀공학)	
성주군	(133) 초전	초전 월향 봉소 지방	- 용성1리는 성주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성주중)	초전중	(남녀공학)	
성주군	(134) 벽진	벽진		벽진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성주군	(135) 수륜	수륜 용암 덕곡 (고령군)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고령중학구와 자유학구 - 수성1리 중 가람은 가천중 - 동락2리 중 모방골(동락2리 중 가족청은 다산중, 중거1, 2리는 성주중 학구, 기타는 용암중) - 노2리, 백1, 2리는 고령중 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고령중 학구)	수륜중	(남녀공학)	
성주군	(136) 명인	선남 도원 선남동부분교 대동	- 문방1, 2, 3리는 성주중학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 (칠곡군)과 자유 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는 용암중	명인중	(남녀공학)	
칠곡군	(137) 약목	송산 약목 관호 북삼초오평 분교 운곡 (김천시)	- 북삼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 학교군 - 부상2리(기타는 울곡중)	약목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38) 신동	신동 지천 하빈 (대구)	- 삼청2리는 왜관 중학교군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 금호리, 연호리 중 가정·구슬개, 낙산리는 칠곡 중(대구) - 대평리, 무등1리 [기타는 달서중 (대구)]	신동중	(남녀공학)	
칠곡군	(139) 동명	동명 동명동부 다부 가산	- 금화리(기타는 오상중(구미시))	동명중	(남녀공학)	
칠곡군	(140) 장곡	장곡 석적 대교	- 왜관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예천군	(141) 용궁	예천 용궁 영순 (문경시) 산양 (문경시) 산북 (문경시)	- 황산리, 입암리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여중과 자유 학구(기타는 예천 중학교군 및 예천 여중) - 왕태1리(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평지 2리는 문경시중학 교군 및 문경중 학구, 기타는 산양중(문경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기타는 산북중(문경시)]	용궁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42) 풍양	풍양 중동 (상주시)	- 회상2리 중 갈밭은 상주시 중학교군, 낙동 중학구와 자유 학구(기타는 상주 시중학교군)	풍양중	(남녀공학)	
예천군	(143) 지보	지보 다인 (의성군)	- 용곡1, 2, 3리는 다인중과 자유 학구(기타는 다인중(의성군))	지보중	(남녀공학)	
예천군	(144) 감천	감천	- 기곡2리중 한밤실은 영주시 중학교군	감천중	(남녀공학)	
예천군	(145) 용문	용문 유천	- 노사2리(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용문중	(남녀공학)	
예천군	(146)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과 자유 학구 - 노사2리는 용문중		예천여중	
예천군	(147) 은풍	상리 은풍		은풍중	(남녀공학)	
봉화군	(148) 봉화	봉화 도촌 내성 물야초수식 분교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군 - 용암리는 부석중 (영주시) - 수석리는 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	봉화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48) 봉화	물야초북지 분교 동양 상운 봉성	- 하늘2리 중 배골 [신라1, 2리는 상운중과 도산중 (안동시)의 자유 학구, 기타는 상운중]			
봉화군	(149) 물야	물야		물야중	(남녀공학)	
봉화군	(150) 법전	법전중앙	- 도천2리(구문리 2통3반·보라리 2통6반 제외)는 명호중	법전중	(남녀공학)	
봉화군	(151) 춘양	춘양 소천초임기 분교 소천초두음 분교	- 삼동1리는 명호 중과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재산중과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 서벽분교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재산중	춘양중	(남녀공학)	
봉화군	(152) 춘양중 서벽분교	서벽 춘양	- 애당1, 2리, 도심1, 2리(삼동 1리는 명호중과 춘양중의 자유 학구, 갈산2리중 합강은 재산중과 춘양중의 자유 학구, 기타는 춘양중)	춘양중서벽 분교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52) 춘양중 서벽분교		- 김삿갓면 내리 4반 중 조제와 춘양면 우구치리 중 하금정은 녹전 중(강원)과 자유 학구			
봉화군	(153) 소천	소천 분천분교 남회룡분교 삼근초광회 분교(울진군) 삼근초옥방 분교(울진군)	- 소천면 분천2리 (원곡), 서면 전곡리(원곡)은 석포중	소천중	(남녀공학)	
봉화군	(154) 석포	석포 삼근초광회 분교(울진군)	- 소천면 분천2리 (원곡), 서면 전곡리(원곡) (기타는 소천중)	석포중	(남녀공학)	
봉화군	(155) 재산	재산 명호 춘양 소천초임기 분교	- 고계2리중 옷재 (기타는 명호중) - 갈산2리 중 합강은 춘양 중과 자유학구 (삼동1리는 명호 중과 춘양중의 자유학구,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 서벽분교, 기타는 춘양중) - 갈산1리중 공이, 갈산2리(기타는 춘양중)	재산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56) 명호	명호 법전중앙 춘양	- 고계2리 중 옷재는 재산중 - 도천2리(구문리 2통3반·보라리 2통6반 제외) (기타는 법전중) - 삼동1리는 춘양 중과 자유학구 (갈산2리중 합강은 재산중과 춘양중의 자유 학구,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 기타는 춘양중)	명호중	(남녀공학)	
봉화군	(157) 상운	상운 녹전초원천 분교(안동시) 이산 (영주시) 평은 (영주시)	-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 신라1, 2리는 도산중(안동시)과 자유학구 - 원천1, 2리, 매정 리는 길주중 녹전 분교(안동시)와 자유학구(기타는 길주중녹전분교) - 두월리는 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영주 시중학교군) - 천본1리 중 윗 두들(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상운중	(남녀공학)	
울진군	(158)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삼당 분교 삼근		울진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왕피분교 죽변 노음	- 명도2리, 정림 2리(소곡1리는 부구 중, 기타는 죽변중) - 구산3리는 매화중			
울진군	(159) 평해	평해 월송 기성초구산분 교	- 학곡2리 남자는 후포중	평해중	평해여중	
울진군	(160) 부구	부구 죽변	- 고목1, 2리, 덕천리는 죽변중 - 소곡1리(명도 2리, 정림2리는 울진중, 기타는 죽변중)	부구중	(남녀공학)	
울진군	(161) 매화	매화 노음	- 구산3리(기타는 울진중)	매화중	(남녀공학)	
울진군	(162) 기성	기성 사동		기성중	(남녀공학)	
울진군	(163) 온정	온정	- 덕인2, 3리는 후포중	온정중	(남녀공학)	
울진군	(164) 죽변	죽변 부구	- 명도2리, 정림 2리는 울진중 - 소곡1리는 부구중 - 고목1, 2리, 덕천리(기타는 부구중)	죽변중	(남녀공학)	
울진군	(165) 후포	후포 후포동부 평해 온정	- 학곡2리 남자 (기타는 평해 중학구) - 덕인2, 3리 (기타는 온정중)	후포중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릉군	(166) 울릉	울릉 남양	- 남양3리는 울릉 서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울릉 서중)	울릉중	(남녀공학)	
울릉군	(167) 서면	남양	- 남양3리는 울릉 중과 자유학구	울릉서중	(남녀공학)	
울릉군	(168) 울릉북	천부 현포분교		울릉북중	(남녀공학)	
울릉군	(169) 우산	저동		우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신·구 대비표

□ 중학교군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교 명	초 등 학 교 마 을 명	중 학 교 남	중 학 교 여	비 고	비 고	비 고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포항 <중략>		포항중 <중략> 창포중 이동중 유강중	포항여중 <중략>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2013. 9. 1. 이동 중을 포항 이동중 으로 교명 변경		
김천시	(6) 김천시	김천 <중략> 농소 <중략>	- 신촌리, 월곡 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 4리<기타는 농남중>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석천중 문성중	2014. 9. 1. 농남 중을 월곡 중으로 신설대체 이전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구미시	(8) 구미시	구미 <중략> 오테	- 북삼중학교 군(칠곡군)과 자유학구(북 삼읍 인평 리는 북삼중 <중략> 육계동부 구운 <중략>		구미시	(8) 구미시	구미 <중략> 오테	- 북삼중학교 군(칠곡군) 과 자유학구(북 삼읍 인평 리는 북삼중 학교)	2014. 3. 1. 해마루초 신설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현			개 정 안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고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옥계초등학교	- 금전2동은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초등학교	- 금전2동은	남·여	옥계중학교	2014. 3. 1.
양포초등학교	오상중과		옥계동부중학교		양포초등학교	오상중과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초
옥계동부초등학교	자유학구				옥계동부초등학교	자유학구			신설
					해마루초등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교 명	마 을 명		
의성군	(16) 안계	단북 안계 쌍호		안계중 삼성중		의성군	(16) 안계	〈삭제〉 안계 쌍호	안계중 삼성중	2014.3. 1. 단북초 폐교

□ 중학교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비고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포항시	(1) 구룡포	구룡포	구남분교		(1) 구룡포	구룡포	구룡포중 〈삭제〉	구룡포중 (남녀공학)	2014.3. 1. 구룡포초 구남분교 폐교
경주시	(15) 안강	강동초 단구분교			(15) 안강	〈삭제〉	안강중	안강여중	2014.3. 1. 강동초 단구분교 폐교
김천시	(26) 아포	아포 대신 운곡	아포 대신 운곡		(26) 아포	아포 대신 운곡 고아 (구미시)	아포중	아포중 (남녀공학)	2014.9.1. 농남중을 운곡중 으로 신설대체 이전
		- 초곡1리는 농남중과 자유학구 - 봉천1리는 농남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농남중)	- 초곡1리는 운곡중과 자유학구 - 봉천1리는 운곡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운곡중)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교 명	마 을 명	
김천시	(26) 아포	고아 (구미시)	- 황산리, 외에리, 내에리는 현일중과 자유학구 (황산리중 물목은 신 산중학구와 현일중(구 미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 황산리, 외에리, 내에리는 현일중과 자유학구 (황산리중 물목은 신 산중학구와 현일중(구 미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김천시	(29) 농남	농소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중 남곡, 월곡 4리는 김천 시중학교군 - 봉천1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29) 윤곡	농소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중 남곡, 월곡 4리는 김천 시중학교군 - 봉천1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2014. 9. 1. 농남중을 윤곡중 으로 신설 대체이전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대신	- 부상2리는 약목중 (칠곡군) - 초곡1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					대신	- 부상2리는 약목중 (칠곡군) - 초곡1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			2014. 3. 1 울곡초개교
상주시	(72) 공검	공검 백원	- 연봉 1. 2 리(기타는 상주시 중 학교군) - 역곡리 (기타는 합창중학교)	공검중	(남녀공학)		(72) 공검	공검 백원	- 연봉 1. 2 리(기타는 상주시중 학교군) 〈삭제〉	공검중	(남녀공학)	2014. 3. 1. 합창초 송덕분교 폐교
상주시	(75) 합창	합창 송덕분교	- 역곡리는 공검중	합창중	상지여중		(75) 합창	합창 〈삭제〉 합창중앙 〈중략〉	〈삭제〉 합창중앙 〈중략〉	합창중	상지여중	2014. 3. 1. 합창초 송덕분교 폐교
의성군	(91) 의성	의성 〈중략〉		의성중	의성여중		(91) 의성	의성 〈중략〉 교설	- 만천1. 2 리(기타는 교설중)	의성중	의성여중	의성중학 구에 누락된 오류수정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비 고	중 학 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교 명	마 을 명		
의성군	(95) 안계	구천 단복 안계 생호			남	구천 <삭제> 안계 생호		남	2014.3.1. 단복초 폐교
의성군	(96) 비안	이두 도리원 송원 (군위군)	- 현산리 (기타는 봉양중) -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		남	이두 <삭제> 송원 (군위군)	- <삭제>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	남	오류수정 (현산리는 이두초 통학구역)
의성군	(97) 봉양	도리원 안평	- 현산리는 비안중 - 대사1리 (신안3리는 의성 중학구, 기타는 안평중)		남	도리원 안평	- <삭제> 대사1리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기타는 안평중)	남	
영덕군	(116) 축산	축산항	- 사진3리는 영해중학구		남	축산항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군(사진3리는 영해중학구) 중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남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영해중) 학교 선택권 확대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교 (구)명	초등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교 (구)명	초등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남	여
		경정분교 영해	- 축산면 고 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1, 2리, 칠성리1, 2리, 조항 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중학 구와 자유 학구				경정분교 영해	- 축산면 고 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1, 2리, 칠성리 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중학 구와 자유 학구(기타 는 영해중 학구)			
영덕군	(117) 영해	축산향	- 사진3리 (기타는 축산중)	영해중	영덕군	(117) 영해	축산향	- 사진3리 (기타는 축산중학 구와 자유 학구) - 축산중 학구와 자유학구	영해중	(남녀공학)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영해중) 학교 선택권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교 명	마 을 명	
		영해	- 축산면 교곡1, 2리, 상원 리, 부곡리, 도곡 1, 2 리, 칠성리 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학 구와 자유 학구		영해	- 축산면 고 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 리 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학 구와 자유 학구	
		원향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2 송천1, 2 리 및 각리 1, 2, 3 리(기타는 병곡중)	병곡	- 병곡중학 구와 자유 학구	- 병곡중학 구와 자유 학구	
		창수 인천분교		창수 인천분교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교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중학교	남	여	비고
		교명	마을명						
영덕군	(118) 병곡	병곡 원향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2 송천1, 2 리 및 각리 1, 2, 3 리는 영해 중학교	(118) 병곡	영덕군	병곡 원향	- 영해중학 교와 자유 학구 - 영해중학 교와 자유 학구(덕천 리, 신평리, 사천리, 송 천1, 2리 및 각리1, 2, 3리는 영해 중학교)	축산중 (남녀공학)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영해중)학 교 선택권 확대
칠곡군	(136) 약목	송산 약목 관호 복삼초오행 분교 운곡 (김천시)	- 복삼중학 교교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학 교교과 - 부상2리 (기타는 농남중)	(136) 약목	칠곡군	송산 약목 관호 복삼초오행 분교 운곡 (김천시)	- 복삼중학 교교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학 교교과 - 부상2리 (기타는 윤곡중)	약목중 (남녀공학)	2014. 9. 1. 농남중을 윤곡중으로 신설대체 이전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1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회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합 계	99,036,826	37,000,000			3,000,000		57,213,848		1,820,978	2,000
공무원 복지기금	7,500,449				3,000,000		4,388,449		110,000	2,000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91,536,377	37,000,000			0		52,825,399		1,710,978	0

(단위 :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회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전출
합 계	99,036,826	7,112,237	4,000,000		10,000		87,914,589			
공무원 복지기금	7,500,449		4,000,000				3,500,449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91,536,377	7,112,237			10,000		84,414,140			

□ 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 ㉑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 입㉓	지 출㉔			
합 계	57,213,848	41,822,978	11,122,237		87,914,589	30,700,741
공무원 복지기금	4,388,449	3,112,000	4,000,000		3,500,449	-888,000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52,825,399	38,710,978	7,122,237		84,414,140	31,588,74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총 조성규모 ㉓=㉑+㉒
합 계	87,914,589	8,586,600	96,501,189
공무원 복지기금	3,500,449	8,586,600	12,087,049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84,414,140	0	84,414,140

■ 결 의 안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9
----------	-----

제안연월일 : 2014. 12. 19.

제 안 자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 붙 임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2. 제안 이유

- 경상북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 6기, 경주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9기(울진 4기, 영덕 4기, 경주 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고, 원전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김천)과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처분을 담당하는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경주)이 소재한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임.
-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임에도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나, 원전 관련 연구·산업시설¹⁾은 전무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1) 서 울(3) :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 전(8)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 산(5)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연구용원자로, 국제원자력대학원, 한수원원자력교육원
 전 북(1)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국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도민의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전건설, 운영,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일관된 원자력 발전 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 '70·'80년대부터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수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 할 것임.
-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열망을 모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정부는 유치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함.
-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신뢰성 있는 원전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촉구함.
-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1기와 방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지지한 도민의 성원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자력해체
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건립할 것을 촉구함.

4. 결의안 제출처 :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연구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 의 안

경상북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 6기, 경주 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9기(울진 4기, 영덕 4기, 경주 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고,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김천)과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처분을 담당하는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경주)이 소재한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이다.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임에도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나, 원전 관련 연구·산업시설은 전무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민의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전건설, 운영,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일관된 원자력 발전 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1970·80년대부터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수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열망을 모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치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신뢰성 있는 원전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1기와 방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한 도민의 성원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자력해체 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동의)의원 서명부

(제명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二 청 원 안

- 생활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 · 관공서 · 학교 · 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
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2월 19일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
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 청원요지서

접수일자	2014. 11. 3.	청원번호	1
청원건명	생활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 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오 영 재 구미경실련 외 3인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9-4, 원평1동 964-186)		
소개의원	구자근(대표 소개의원/ 구미), 최병준(경주)		
청 원 요 지			
☐ 주요내용			
○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침략도구로 우리 나라의 관공서와 학교에 집중적으로 심었던 나무로 지금도 관공서 등의 조경수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 일제잔재'임.			
○ 지난 5월 2일 국회는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 채택 및 일본 수종 제거 예산확보하여 경북도의회도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1. 도내 현충시설의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 등 일본나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나무'로 전면 교체
2. 도내 초·중·고교 중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곳은 지역특성에 맞는 '국내외 나무'로 전면 변경·교체
3. 도내 관공서, 학교, 공공장소의 조경수 중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 일본 나무가 '대표 나무'로서 비중이 많을 경우 일본 나무를 제외한 '국내외 나무'로 대표 나무 교체
4. 도내 23개 시·군의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 나무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지원 조례 개정 및 제정
5. 현충시설의 일본 나무 교체 흐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에 건의

□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 · 관공서 · 학교 · 공공장소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오영재 구미시 금오산로 49-4, 원평1동 964-186 구미경실련 오영석 경주시 양정로 254-2(동천동 송유빌딩 2층) 경주경실련 정 휘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3(상도동) 3층 포항경실련 김정숙 울릉군 울릉순환로 778 경실련울릉지회
소개의원	구자근(대표 소개의원), 최병준
소개연월	2014년 11월 3일
	소개의견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침략도구로 우리나라의 관공서와 학교에 집중적으로 심었던 나무로서, 지금도 관공서 · 학교 · 공원 · 아파트단지 등의 조경수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 일제잔재’입니다. 특히 현충시설에까지 버젓이 심겨진 모습은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난 5월 2일 열린 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214인 중 찬성 186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을 채택, 내년부터 1만여 그루의 일본 원산지 수종을 제거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경북도내 현충시설의 가이즈카 향나무 · 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나무’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2) 경북도내 초·중·고교 중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곳에 대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국내외 나무'로 전면 변경·교체를 권고해야 합니다. (3) 경북도내 관공서, 학교(초·중·고교, 국공립대학교), 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의 조경수 중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가 '대표 나무'로 비쳐질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연차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일본 나무를 제외한 '국내외 나무'로 대표 나무를 교체해야 합니다. (4) 대구시처럼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의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합니다. (5) 현충시설의 일본 나무 교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은 청원을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이유로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오니, 동료 도의원 여러분들의 '독립운동 성지, 경북'에 걸맞은 전폭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	--

청 원 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북협의회(경실련 경북협의회)를 대표한 오영재, 오영석, 정휘, 김정숙은 다음과 같은 취지와 이유로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서>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청원의 취지 및 이유>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강점기에 황국신민화 침략도로 우리나라의 관공서와 학교에 집중적으로 심었던 나무로서, 지금도 관공서·학교·공원·아파트단지 등의 조경수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 일제잔재’입니다. 특히 현충시설에 까지 버젓이 심겨진 모습은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의 대표 관공서인 시청의 전면과 측면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마치 안동을 상징하는 시목(市木)처럼 정성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룡 선생을 비롯한 안동출신 애국 독립운동가들은 욕되게 하는 행정입니다. 구미세무서는 전면 마당을 가이즈카 향나무 정원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곳이 경북은 23%, 대구는 22%로써 전체 수종 중 가장 높습니다. 향나무 교목 대부분이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TBC, 2014. 6. 17)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지(경주 양동마을)에도 심겨져 있습니

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고택에서도 가이즈카 향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조경을 훼손하는 사례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광복 60주년기념 문화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일제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 행정 속의 일제단재, 태극기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거는 학교현장 속의 일제자내, 가압류 등 법률용어 일제잔재, 곤색 등 생활용어 일제잔재, 임감증명제도 등 생활 속의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도 지난 5월 2일 열린 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214인 중 찬성 186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을 채택, 내년부터 1만여 구루의 일본 원사지 수종을 제거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엔 국회 본청 출입문 양옆으로 심겨진 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은 외래 수종이 국립현충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2012년 30~40년 수령의 독일가문비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의 소나무로 교체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현충원의 외래 수종을 전통 소나무로 바뀌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아산 현충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0년간 20억여 원을 들여서 일본 양식 조경을 고쳤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며, 1997년부터 가이즈카 향나무·낙우송·편백나무·독일가문비나무 등 외래 불량목을 제거하고 전통 수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시사인, 2010.11)

안동시는 2013년 8월 논란이 된 도산서원 내 일본산 소나무인 금송(金松)을 서원 밖으로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4월 전주 한옥마을 교통아트센터에 식재된 가이즈카 향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그 자리에 전통 수종인 소나무를 심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미시도 지난 4월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의 청원을 받아 들여 도립공원 금오산의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가이즈카 향나무를 느티나무로 교체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TBC의 집중보도와 대구경실련의 청원에 따라 현충시설과 공공시설에 심겨진 일본 나무를 전수 조사 중이며, 시의회는 청원 심사를 진행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나무심기의 실무 주역인 이정웅 전 대구시 녹지과장(대구생명의 숲 운영위원)은 “일본 고유수종이 우리 전통 나무 문화를 훼손한 사례는 금송 한 종류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이즈카 향나무가 더 심각하다. 미래세대의 주역이 공부하는 학교에 일제강점기에 심은 가이즈카 향나무가 해방된 지 68년이 지난 지금도 버티고 있고, 심지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지(경주 양동마을)에도 있다.”면서 안이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교육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매일신문<주간매일>, 2013. 8. 29)

잘 자란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체하는 게 아깝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조경수 선호도 변화를 모르는 오해입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2000년 전후부터 조경수로 우리 소나무가 인기 1위를 차지하면서 가이즈카 향나무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냥 꺾도 이식 비용 때문에 안 받겠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의 아파트단지나 일반 건축물 조경수로 가이즈카 향나무를 심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벚나무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즐기는 대부분의 벚나무인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인 우리나라로 밝혀졌습니다.(KBS 다큐 공감-‘꽃의 전쟁’, 2014. 4. 8)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156호로,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보수·진보를 막론한 대부분의 언론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크게 보도하면서, 민족 정체성을 망각한 국립 서울현충원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 묘역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 846그루, 노무라 단풍(홍단풍) 243그루, 화백나무 431그루, 일본 목련 7그루 등 총 1,527그루의 일본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는 “애국지사들에게 누를 끼치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적 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보수·진보 언론이 이례적으로 같은 논조의 보도를 했다는 점은, 적어도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거나 관련되는 곳에 일본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은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경상북도가 선도함으로써, 독립운동 성지와 독도 관한 지자체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주요 우선순위 행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공장소의 조경 수목을 우리 나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충시설은 반드시 일본 나무를 우리 나무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관공서·학교·공원·광장·도서관 등 다른 공공장소는 국내외 나무로 선택의 폭을 넓히더라도 일본 나무를 '대표 나무'로 조경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를 청원합니다.

<청 원 사 항>

- (1) 경북도내 현충시설의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나무'로 전면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 (2) 경북도내 초·중·고교 중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곳에 대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국내외 나무'로 전면 변경·교체를 권고할 것을 청원합니다.

- (3) 경북도내 관공서, 학교(초·중·고교, 국공립대학교), 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의 조경수 중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가 '대표 나무'로 비치질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연차적인 지원 기준을 정해서 일본 나무를 제외한 '국내외 나무'로 대표 나무를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 (4) 대구시처럼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의 가이즈카 향나무·노무라 단풍(홍단풍) 등 일본 나무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 (5) 현충시설의 일본나무 교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은 청원을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지침'보완 건의를 청원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경실련 경북협의회

(구미경실련·경주경실련·포항경실련·경실련울릉지회)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
공공장소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 건 서**

□ 본 청원은

- 오영재 외 3인이 구자근, 최병준 의원의 소개로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현충시설, 관공서, 학교, 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에 식재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고자 청원하는 것입니다.

□ 청원취지는

- 경상북도 내의 현충시설, 관공서, 학교, 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에 식재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 ① 현충시설(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일본이 원산지인 나무를 '우리 나무'로 전면 교체할 것,
 - ②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교목과 조경수 중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의 나무를 '국내외 나무'로 교체할 것,
 - ③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및 23개 시·군의 관공서·공공장소(공원·광장·도서관 등) 등의 일본 수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 ④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지침' 보완을 건의 할 것 등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 본 청원에 대한 심의결과

-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등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은 전통수종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 관공서와 공공시설(공원, 광장, 도서관 등)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식재된 일본산 수종은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지역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도청과 산하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조경수가 새로이 식재될 예정인 청사의 조경수 식재계획을 엄격하게 하며,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에도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 경북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가 전반적인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붙임자료 1〉

현충시설 일본 산 수종(가이즈카 향나무 등) 현황 자료

(단위: 그루, 백만원)

시 군	현 충 시설수	일본 산 수종 식재 시설수	식재 현황				대체 비용 (추계 비용)	비고
			계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홍단풍)	기타		
계	108	19	1,099	208	138	753	527	
포항시	13	2	43	41	-	2	6	
경주시	5	-	-	-	-	-	-	
김천시	1	-	-	-	-	-	-	
안동시	3	3	36	10	26	-	35	
구미시	5	-	-	-	-	-	-	
영주시	2	2	91	12	-	79	11	
영천시	7	-	-	-	-	-	-	
상주시	1	1	70	-	6	64	10	
문경시	15	-	-	-	-	-	-	
경산시	1	1	3	-	3	-	6	
군위군	2	-	-	-	-	-	-	
의성군	1	1	75	60	15	-	75	
청송군	2	2	656	25	23	608	57	
영양군	2	2	35	7	28	-	19	
영덕군	7	-	-	-	-	-	-	
청도군	2	1	6	4	2	-	3	
고령군	7	-	-	-	-	-	-	
성주군	11	-	-	-	-	-	-	
칠곡군	1	1	43	31	12	-	100	
예천군	1	-	-	-	-	-	-	
봉화군	7	-	-	-	-	-	-	
울진군	11	3	41	18	23	-	205	
울릉군	1	-	-	-	-	-	-	

〈붙임자료 2〉

경상북도 본청 및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일본산 수종(가이즈카 향나무 등) 현황 자료

(단위 : 그루, 천원)

도 분청 등 현황 구 분	소계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홍단풍)	일본 목련	칠엽수	화백	편백	삼나무	계수	옥향 백	실화 백	조팝 매자	섬 갓나무	금송 비고
도 본청	111	103			8									
직속기관	599	285	21		114	23				155	1			
사업소	746	120	150	7	236	103	11	40	10			10	50	3
합 계	1,456	508	171	7	358	126	11	40	10	155	1	10	50	3
교체 시 소요예산 (예산추계)	663,921	262,670	132,930	7,786	167,369	42,656	4,273	15,971	2,821	14,160	85	100	500	9,000

* 교체 시 소요예산은 수종과 수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일반적임(평균적임) 수종을 기준으로 추계

〈붙임자료 3〉

시·군 일본 산 수중(가이즈카 향나무 등) 현황 자료

(단위 : 그루, 천원)

시·군 현황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단풍 (홍단풍)	일본 목련	철엽수	옥향	화백	금송	영상홍	일본 전나무	기 타
구 분	소 계										
시·군청	169	142	24	3							
읍·면동사무소	454	276	167	3	2					6	
산하직속행정기관	561	129	148	20		260	2	2			
공원, 광장, 도서관 등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장소)	3,378	2,611	351		230				186		
합 계	4,562	3,158	690	26	232	260	2	2	186	6	
교체 시 소요예산 (예산 추계)	2,552,530	2,261,480	670,700	27,500	230,000	27,000	1,000	11,000	130,200	1,050	

* 교체 시 소요예산은 수종과 수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일반적인(평균적인) 수종을 기준으로 추계

〈붙임자료 4〉

초·중·고등학교 일본 산 수종(가이즈카 향나무 등) 현황 자료

(단위 : 그루, 천원)

초·중·고등학교 현황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홍단풍)	일 본 목 련	칠 엽 수
급 별	소 계				
합 계	15,245	14,221	818	184	22
초	5,373	4,912	339	109	13
중	3,543	3,385	149	8	1
고	5,861	5,530	264	67	-
사업소 외	468	394	66		8
교체 시 소요예산 (예산 추계)	8,673,217	8,002,177	488,050	134,700	48,290

* 교체 시 소요예산은 수종과 수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종을 기준으로 추계

二 예 산 안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I.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I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4. 11.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2 : 상정·질의)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3 : 상정·질의)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4 : 상정·질의)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5 : 상정·질의)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8 : 상정·질의)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09 : 상정·질의)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11 : 토론·의결)

III.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IV. 재정운용 여건

□ 세입전망

- 자체수입 :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과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 전망
 - 취득·등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증가
- 의존재원 : 내국세 감액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감소 전망이나,
국비는 복지수요 등으로 증가 예상

□ 세출전망

-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 등
경직성 지출의 증가,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원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예산규모 : 7조 3,412억원 ('14년 대비 3,472억, 5.0%↑)
 - 복지예산 : 2조 3,012억원 ('14년 대비 2,401억, 11.7%↑)
-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문화융성을 선
도하는 문화경북, 지역균형 발전과 신도청 시대 준비에 중
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복지수요 증대, 기관전출금 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망

V. 재정 총규모

□ 재정운용 총규모

-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경상북도의 재정 총규모는 7조 9,791억원으로 '14년도 7조 6,432억원보다 3,359억원 증가(4.4%)하였음.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조 3,412억원으로 '14년 본예산 대비 3,472억원(5.0%)이 증가하였음.
- 201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6,379억원으로 '14년도 6,492억원보다 113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재정(예산+기금) 총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A)	'14년(B)	증 감 (C=A-B)	증가율 (C/B)
계	79,791	76,432	3,359	4.4
예 산	73,412	69,940	3,472	5.0
일 반 회 계	62,810	58,954	3,856	6.5
특 별 회 계	10,602	10,986	△384	△3.5
기 금	6,379	6,492	△113	△1.7

VI. 세입 · 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3,412억원으로 '14년 대비 3,472억원(5.0%)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6조 2,810억원으로 '14년 대비 3,856억원(6.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602억원으로 '14년 대비 384억원(△3.5%)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186억원으로 '14년도 5,218억원 보다 32억원(△0.6%)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5,417억원으로 '14년도 5,768억원보다 351억원(△6.1%) 감소하였음.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감 (C=A-B)	증가율 (C/B)	비고
총 계	7,341,210	6,993,982	347,228	5.0%	
일 반 회 계	6,281,000	5,895,400	385,600	6.5%	
특 별 회 계	1,060,210	1,098,582	△38,372	△3.5%	
공기업특별회계(1)	518,556	521,793	△3,237	△0.6%	
기타특별회계(6)	541,654	576,789	△35,135	△6.1%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감 (C=A-B)	증가율 (C/B)	비 고
총 계	7,341,210	6,993,982	347,228	5.0%	
일 반 회 계	6,281,000	5,895,400	385,600	6.5%	
지 방 세 수 입	1,380,000	1,248,000	132,000	10.6%	
세 외 수 입	85,839	103,856	△18,017	△17.4%	
지 방 교 부 세	972,900	1,026,732	△53,832	△5.2%	
보 조 금	3,530,958	3,235,598	295,360	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1,303	281,214	30,089	10.7%	
특 별 회 계	1,060,210	1,098,582	△38,372	△3.5%	
공기업특별회계(1)	518,556	521,793	△3,237	△0.6%	
지 역 개 발 기 금	518,556	521,793	△3,237	△0.6%	
기 타 특 별 회 계 (6)	541,654	576,789	△35,135	△6.1%	
의료급여기금운영	456,797	456,796	1	0.0%	
치 수 사 업	20,341	42,398	△22,057	△52.0%	
경북도립대학교운영	9,938	9,329	609	6.5%	
광 역 교 통 시 설	2,898	9,254	△6,356	△68.7%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42,480	52,300	△9,820	△18.8%	
학 교 용 지 부 담 금	9,200	6,712	2,488	37.1%	

2. 세입예산안

가. 일반회계

-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2,810억원으로 '14년도 5조 8,954억원보다 3,856억원(6.5%)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 1,320억원(10.6%), 보조금 2,954억원(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1억원(10.7%)이 증액되었으며,
- 세외수입 180억원(△17.4%), 지방교부세 538억원(△5.2%) 이 감액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감 (C=A-B)	증가율 (C/B)	비고
일 반 회 계	6,281,000	5,895,400	385,600	6.5	
지 방 세 수 입	1,380,000	1,248,000	132,000	10.6	
세 외 수 입	85,839	103,856	△18,017	△17.4	
지 방 교 부 세	972,900	1,026,732	△53,832	△5.2	
보 조 금	3,530,958	3,235,598	295,360	9.1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311,303	281,214	30,089	10.7	

1) 지방세

- 지방세는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 2015년도 지방세 세입은 1조 3,800억원으로 '14년도보다 1,320억원(10.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의 22.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 목별로는,
 -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에서만 800억원(13.8%)이 증가하였고,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음.

[지방세 세입 목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 감 (C=A-B)	비 율	비 고
지 방 세 수 입	1,380,000	1,248,000	132,000	10.6	
취 득 세	660,000	580,000	80,000	13.8	
등 록 면 허 세	61,000	50,000	11,000	22.0	
레 저 세	1,000	1,000	0	0.0	
지 방 소 비 세	350,000	333,000	17,000	5.1	
지역자원시설세	82,000	67,000	15,000	22.4	
지 방 교 육 세	220,000	210,000	10,000	4.8	
지 난 연 도 수 입	6,000	7,000	△1,000	△14.3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858억원으로 '14년도보다 180억원($\Delta 17.4\%$) 감소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225억원으로 '14년도보다 5억원(2.5%) 증가하였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633억원으로 '14년도보다 186억원($\Delta 22.7\%$)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목별로는,
 -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3억원(15.7%) 증가하였고
 -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201억원($\Delta 39.7$)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감 (C=A-B)	비 율	비 고
세 외 수 입	85,839	103,856	$\Delta 18,017$	$\Delta 17.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2,550	22,000	550	2.5	
재 산 임 대 수 입	268	178	90	50.3	
사 용 료 수 입	1,748	1,549	199	12.8	
수 수 료 수 입	4,174	4,210	$\Delta 36$	$\Delta 0.9$	
사 업 수 입	2,440	2,109	332	15.7	
징수교부금수입	8,740	8,740	0	0.0	
이 자 수 입	5,180	5,214	$\Delta 34$	$\Delta 0.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3,289	81,856	$\Delta 18,567$	$\Delta 22.7$	
부 담 금	32,748	31,251	1,497	4.8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7	52	15	28.9	
기 타 수 입	30,474	50,554	$\Delta 20,079$	$\Delta 39.7$	

3)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4조 5,039억원으로 '14년도보다 2,415억원(5.7%) 증가하였음.
- 주요 재원별로는,
 - 지방교부세가 9,729억원으로 '14년도 대비 538억원(Δ 5.2%) 감소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2조 4,848억원으로 1,580억원(6.8%) 증가하였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8,856억원으로 1,239억원(16.3%) 증가하였으며,
 - 국고기금은 1,606억원으로 135억원(9.2%)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의존재원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 감 (C=A-B)	비 율	비 고
의 존 재 원	4,503,859	4,262,330	241,529	5.7	
지 방 교 부 세	972,900	1,026,732	Δ 53,832	Δ 5.2	
국 고 보 조 금	2,484,750	2,326,752	157,998	6.8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885,588	761,730	123,859	16.3	
국 고 기 금	160,621	147,116	13,504	9.2	

나. 특별회계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2억원으로 '14년 대비 384억원(△3.5%)
감소하였음.

(단위 : 억원)

회 계 별	세 입
합 계	1조 602억원
지역개발기금 (5,186)	○ 융자금회수수입 900 ○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2,050 ○ 이자수입 및 잉여금 등 2,236
의료급여기금운영 (4,568)	○ 국고보조금 3,653 ○ 일반회계 전입금 572 ○ 시군 부담금 등 343
치수사업 (203)	○ 국고보조금 79 ○ 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 90 ○ 하천사용료 등 34
경북도립대학교운영 (99)	○ 일반회계 전입금 80 ○ 부담금(예천군) 등 19
광역교통시설 (29)	○ 국고보조금 21 ○ 교통시설부담금 2 ○ 잉여금 등 6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425)	○ 일반회계전입금 330 ○ 잉여금 92 ○ 이자수입 3
학교용지부담금 (92)	○ 학교용지·개발부담금 89 ○ 잉여금 2 ○ 이자수입 1

3.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내역별·분야별)

-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조 2,810억원으로 '14년도 5조 8,954억원보다 3,856억원 증가(6.5%)하였음.
- 내역별로는,
 - 행정운영경비가 4,109억원으로 '14년도보다 229억원 (5.9%) 증가하였고
 - 재무활동은 1,950억원으로 '14년도보다 111억원(6.0%) 증가하였고
 - 정책사업은 5조 6,751억원으로 '14년도보다 3,516억원 (6.6%)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예산안 (A)	'14예산액 (B)	증 감 (C=A-B)	비 율	비 고
총 계	6,281,000	5,895,400	385,600	6.5	
행정운영경비 ¹⁾	410,944	388,038	22,906	5.9	
재 무 활 동 ²⁾	195,002	183,888	11,114	6.0	
정 책 사 업 ³⁾	5,675,054	5,323,474	351,580	6.6	

- 1)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2) 공기업·기타회계·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 3)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조 8,444억원(29.4%), 농림해양수산 9,764억원(15.6%), 일반공공행정 7,939억원(12.6%)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분야는 '14년 예산에 비해 2,401억원(15.0%),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66억원(15.5%)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 예산(안)	비율	'14년 예산액	비율	증 감	비율
합 계	6,281,000	100.0	5,895,400	100.0	385,600	6.5
일반공공행정	793,938	12.6	687,356	11.7	106,582	15.5
공공질서 및 안전	189,650	3.0	161,358	2.7	28,292	17.5
교 육	49,169	0.8	44,462	0.8	4,707	10.6
문화 및 관광	472,120	7.5	396,817	6.7	75,304	19.0
환 경 보 호	490,582	7.8	494,655	8.4	△4,074	△0.8
사 회 복 지	1,844,380	29.4	1,604,277	27.2	240,103	15.0
보 건	104,331	1.7	82,729	1.4	21,601	26.1
농림해양수산	976,448	15.6	935,325	15.9	41,123	4.4
산업·중소기업	110,351	1.8	126,743	2.2	△16,392	△12.9
수송 및 교통	319,576	5.1	300,095	5.1	19,481	6.5
국토 및 지역개발	427,786	6.8	583,481	9.9	△155,695	△26.7
과 학 기 술	28,915	0.5	24,149	0.4	4,766	19.7
예 비 비	62,810	1.0	65,915	1.1	△3,105	△4.7
기 타	410,944	6.5	388,038	6.6	22,906	5.9

나. 특별회계

- '15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2억원으로 '14년 대비 △384억원 (△3.5%) 감소하였음.

(단위 : 억원)

회 계 별	세 출
합 계	1조 602억원
지역개발기금 (5,186)	○ 지역개발공채 상환 2,022 ○ 자치단체 융자금 2,008 ○ 예비비 등 1,156
의료급여기금운영 (4,568)	○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4,567 ○ 과오납금 등 반환 1
치수사업 (203)	○ 하천관리 및 댐주변지역 정비 203
경북도립대학교운영 (99)	○ 도립대학 육성 50 ○ 행정운영경비 등 49
광역교통시설 (29)	○ 광역도로사업 추진 29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425)	○ 시·군조정교부금 211 ○ 예비비 115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99
학교용지부담금 (92)	○ 교육비(특)전출금 86 ○ 정수교부금 등 6

4. 계속비 사업

- 2015년도 계속비 사업 : 없음.

5. 지방세지출보고서

- 「지방세지출보고서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계금액에 대한 보고서임.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의미함.
- 2014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총액에서 지출(감면)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2013년(결산) 4,042억원, 2014년(추계) 2,905억원으로 2014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1,1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 징수 및 지출(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결산)	2014년(추계)	증감
비과세·감면액(A)		404,208	290,524	△113,684
	비 과 세	60,845	89,688	28,843
	감 면	343,362	200,836	△142,527
지방세 징수액(B)		1,217,101	1,388,100	170,999
비과세·감면율 (A/A+B)		24.9	17.3	

※ 세부내용은 「2014년 지방세지출 보고서」 참조

-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도입목적에 맞게 지방세 감면항목에 대한 지속적 정비 활동과 함께 일몰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이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비과세·감면 항목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6.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재정운용방향

- 국가 재정운용정책과 연계 강화
-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 일자리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

나. 예산규모 전망

- 계획기간('15 ~ '19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 규모는 43조 8,998억원으로 평균 4.4% 증가
예상
 - 일반회계 규모는 35조 2,283억원으로 평균 4.8% 증가 예상
 - 특별회계 규모는 5조 8,949억원으로 평균 3.0% 증가 전망

[계획기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획 기 간							평 균 신장률
	합 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38,998	100	80,023	85,364	88,048	90,490	95,072	4.4
일반회계	352,283	80.2	63,365	68,756	70,919	72,738	76,505	4.8
기 타 특별회계	29,379	6.7	5,554	5,600	5,940	6,025	6,259	3.0
공 기 업 특별회계	29,570	6.7	5,559	5,728	5,905	6,092	6,286	3.1
기 금	27,766	6.3	5,545	5,280	5,284	5,634	6,022	2.1

7. 성인지예산서

가. 개 요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11. 3.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
- 201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 일반회계에서만 총 96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4,824억원으로 2014년도 6,025억원 보다 1,202억원(△20.0%) 감소하였음.
 - 또한,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6조 2,810억원의 7.7%를 차지하여 2014년도 10.2% 대비 2.5% 감소하였음.

[2015년도 성인지예산 총괄]

(단위 : 천, 백만원, %)

회 계 별	건	2015년도 (A)	2014년도 (B)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96	482,367	602,549	△120,182	△20.0
일반회계	96	482,367	602,549	△120,182	△20.0
특별회계	-	-	-	-	-

나. 대상사업별(선정기준) 현황

-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대상사업별(선정기준)로 살펴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23개 사업) 123억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64개 사업) 4,509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9개 사업) 192억원임.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별(선정기준) 현황]

(단위 : 천, 백만원)

사 업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대상 사업	예 산 액	대상 사업	예 산 액	대상 사업	예 산 액
총 계	96	482,367	98	602,549	△2	△120,182
여성정책추진사업	23	12,284	22	12,008	1	276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64	450,898	68	581,468	△4	△130,571
자체특화사업	9	19,186	8	9,073	1	10,112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 사업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 16. 시행)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다. 기능별 현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29건 3,557억원(73.7%)으로 가장 많고, 농림
해양수산 22건 584억원(12.1%), 일반공공행정 9건
181억원(3.8%) 순으로 나타남.

[2015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분 야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건 (A)	예산액 (B)	구성비	건 (C)	예산액 (D)	구성비	건 (A-C)	예산액 (E=B-D)	증감률 (E/D)
합 계	96	482,367	100.0	98	602,549	100.0	△2	△120,182	△20.0
일반 공공행정	9	18,114	3.8	9	13,367	2.2	0	4,746	35.5
공공질서 및 안전	2	333	0.1	2	338	0.1	0	△4	△1.3
문화 및 관광	6	3,736	0.8	6	3,859	0.6	0	△123	△3.2
환경보호	3	1,169	0.2	3	973	0.2	0	196	20.1
사회복지	29	355,705	73.7	28	363,044	60.3	1	△7,338	△2.0
보건	8	22,038	4.6	8	11,982	2.0	0	10,056	83.9
농림 해양수산	22	58,422	12.1	23	52,970	8.8	△1	5,452	10.3
산업 중소기업	5	10,275	2.1	6	9,865	1.6	△1	410	4.2
수송 및 교통	2	1,040	0.2	3	9,673	1.6	△1	△8,633	△89.3
국토 및 지역개발	8	11,404	2.4	8	136,288	22.6	0	△124,883	△91.6
과학기술	2	130	0.0	2	130	0.0	0	0	0.0

라. 조직별 현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복지건강국 22건 3,631억원(75.3%), 농축산유통국 11건 560억원(11.6%), 안전행정국 7건 123억원(2.5%) 순임.

[2015년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건	예산액 (A)	구성비	예산액 (B)	구성비	예산액 (C=A-B)	증감률 (C/B)
합 계	96	482,367	100.0	602,549	100.0	△120,182	△20.0
여성가족정책관	11	7,998	1.7	1,369	0.2	6,630	484.4
인재개발정책관	1	4,073	0.8	3,754	0.6	319	8.5
투 자 유 치 실	1	9,705	2.0	9,245	1.5	460	5.0
창조경제산업실	3	430	0.1	430	0.1	0	0.0
일자리민생본부	7	7,010	1.5	8,062	1.3	△1,052	△13.1
안 전 행 정 국	7	12,253	2.5	7,837	1.3	4,417	56.4
문화관광체육국	6	3,736	0.8	3,859	0.6	△123	△3.2
농 축 산 유통 국	11	56,004	11.6	49,875	8.3	6,130	12.3
환경산림자원국	6	1,833	0.4	1,767	0.3	66	3.7
복 지 건 강 국	22	363,066	75.3	358,973	59.6	4,094	1.1
지역균형건설국	6	1,962	0.4	1,597	0.3	365	22.9
동해안발전본부	4	748	0.2	593	0.1	154	26.0
도청신도시본부	3	10,072	2.1	135,001	22.4	△124,929	△92.5
농 업 기 술 원	5	1,416	0.3	1,998	0.3	△582	△29.1
공 무 원 교 육 원	2	2,018	0.4	2,006	0.3	13	0.6
보건환경연구원	1	41	0.0	23	0.0	17	73.1

VII.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와 경상북도의 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 '15년도말 재원조성 규모는 총 18개 기금 8,222억원임.

[기금별 누적재원(연도말현재액 + 융자금) 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합 계(18개)	822,174 (651,132)	371,873 (295,831)	266,039 (171,039)	184,264 (184,264)	
통 합 관 리 기 금	171,042	76,042	95,000	0	
다 문화가족지원기금	6,533	0	6,533	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532	0	532	0	
국 제 협 력 기 금	1,061	0	1,061	0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673	0	3,673	0	
중소기업육성기금	326,679	262,994	50,000	13,686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9,933	448	9,485	0	
체 육 진 흥 기 금	15,958	1	15,957	0	
농 어 촌 진 흥 기 금	188,259	23,989	5,000	159,271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0	0	1,510	0	
포 플 라 장 학 기 금	1,065	3	1,062	0	
사 회 복 지 기 금	11,607	100	11,377	130	
재 해 구 호 기 금	23,782	740	23,042	0	
식 품 진 흥 기 금	21,340	6,044	10,000	5,296	
여 성 발 전 기 금	3,555	1	3,554	0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348	11	3,337	0	
재 난 관 리 기 금	24,940	25	24,916	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356	1,475	0	5,881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 '14년도말 현재액 6,492억원에서 '15년도 수입 1,185억원과 지출 1,298억원을 차감한 2015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8개 기금 6,379억원임.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현재액(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d) (a+b-c)	증감(e) (d-a)
		수입(b)	지출(c)		
합 계(18개)	649,247 (490,694)	118,451 (101,734)	129,788 (125,560)	637,910 (466,868)	△11,337 (△23,826)
통 합 관 리 기 금	158,553	16,717	4,227	171,042	12,489
다문화가족지원기금	6,479	155	101	6,533	54
남북교류협력기금	519	13	0	532	13
국 제 협 력 기 금	1,035	26	0	1,061	26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3,663	90	80	3,673	10
중소기업육성기금	304,090	37,333	28,430	312,994	8,903
문화예술진흥기금	9,663	1,336	1,067	9,933	270
체 육 진 흥 기 금	15,957	398	397	15,958	1
농어촌진흥기금	48,335	35,654	55,000	28,989	△19,346
농업인학습단 체육성기금	1,511	38	39	1,510	△1
포플라장학기금	663	417	15	1,065	402
사 회 복 지 기 금	11,735	292	550	11,477	△258
재 해 구 호 기 금	23,954	577	749	23,782	△172
식 품 진 흥 기 금	17,597	2,419	3,972	16,044	△1,553
여 성 발 전 기 금	3,557	89	91	3,555	△2
청소년육성기금	3,386	83	121	3,348	△38
재 난 관 리 기 금	23,879	9,697	8,636	24,940	1,06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4,671	13,116	26,313	1,475	△13,197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VI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2,810억원으로 '14년도 5조 8,954억원보다 3,856억원 증가(6.5%)하였음.
-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1,320억원, 국고 보조금 2,954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538억원과 세외수입 18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지방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이월체납액 징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재원은 크지 않지만 체납세징수 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원확충은 물론,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세수누락 방지를 위하여 도세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고,
-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 원전세 표준세율 인상(kwh당 0.5원→2원), 최저생활보장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한 전액 국가지원 등 세원발굴과 재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함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세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액수를 나타낸 「2014년 지방세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 24.9%에 달하던 지방세 감면율이 2014년도말 17.3%(△7.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동안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의5 제1항은, 지방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5% 이하, 2018년까지 감면비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규모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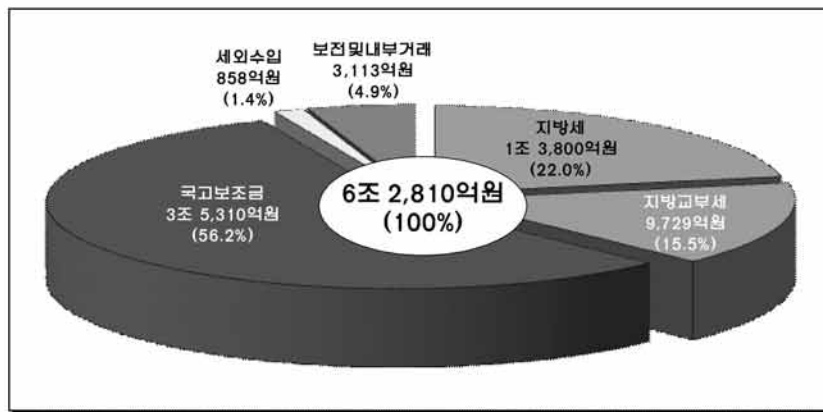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의5 제1항(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 2015년까지 :	100분의 15
◇ 2016년 :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2017년 :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2018년 이후 :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충당하는 부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13년도 정부추경 감

액분과 '12년도 내국세 결손액 등을 감안하여 '14년 대비 538억원(△5.2%) 감소한 9,729억원을 계상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 전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예상하여 반영하는데, 2015년에는 1,100억원으로 2014년 1,000억원보다 100억원(10%) 많게 반영함.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과 지방세 초과 세입으로 발생되므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예산액	1,100	1,000	1,165	1,000	800
결산액	-	-	1,622	1,148	1,268

- 내부거래의 예탁금 및 예수금 순증액 800억원은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통해 충당하여 지방도 사업에 편성한 것임.

[일반회계 차입계획 및 현황]

■ 일반회계 차입계획(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자 금 선	차 입 액	차 입 조 건			비고
			이율	상 환 기 간	상환 재원	
지방도사업	지역개발기금	80,000	3.0	3년거치 10년 상환	도비	

■ 일반회계 차입금 현황(지방채 및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차 입 선	2014. 12월말 잔액			2015년 상환액			비 고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676,316	550,300	126,016	58,751	40,130	18,621	
청사정비 기 금	55,650	48,000	7,650	6,440	5,000	1,440	지방채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 금	493,466	392,300	101,166	33,861	20,130	13,731	내부거래
통합관리 기 금	127,200	110,000	17,200	18,450	15,000	3,450	내부거래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현황]

■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자 금 선	발 행 액	발 행 조 건			비고
			이율	상 환 기 간	상환 재원	
지역개발 기금조성	지역개발 채권발행	205,000	2.0	5년 거치 일시 상환	도비	

■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12월말 잔액			2015년 상환액			비고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1,098,065	1,027,606	70,459	208,555	183,640	24,915	
청사정비 기 금	55,650	48,000	7,650	6,440	5,000	1,440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 금	1,042,415	979,606	62,809	202,115	178,640	23,475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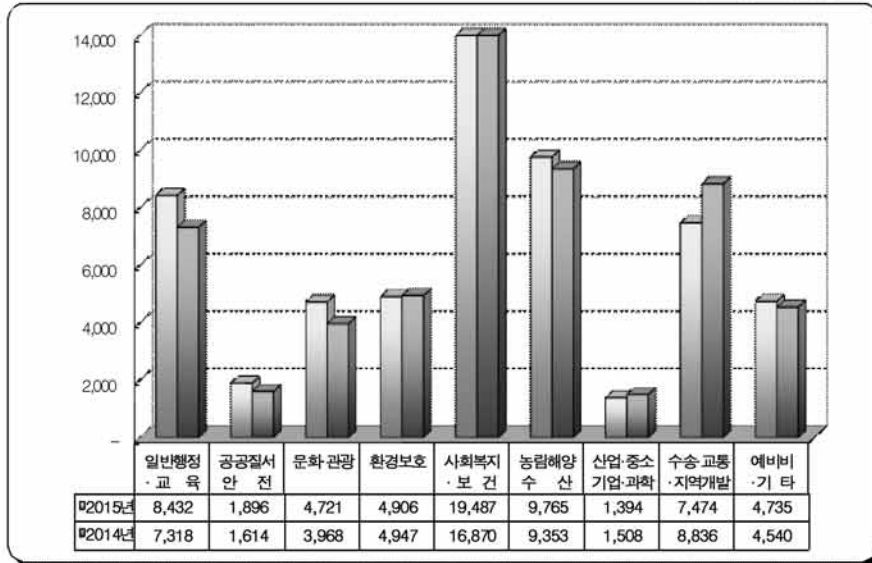
- 누리과정 운영 등의 보육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 법정·의무적경비, 국비매칭 등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원부족 심화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 행사성 경비 축소, 민간지원 자부담률 상향, 보조사업의 보조율 하향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재정의 기초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기초연금 등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보건부문이 1조 9,487억원(31.0%, 2,617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765억원(15.5%, 412억원 증가)
- 시군과 교육청 지원예산 증가에 따라 일반행정·교육부문이 8,432억원(13.4%, 1,114억원 증가),
-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문화융성사업비 반영에 따라 문화관광부문이 4,721억원(7.5%, 753억원 증가),
-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마무리 등에 따라 7,474억원(11.9%, 1,362억원 감소)을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규모]

(단위 : 억원, %)



□ 2015년도 중점투자사업 예산반영 현황으로는

-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394억원
 - R&D 등 경북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70억원
(국가직접지원 1,000억원)
 - 차세대 건설기계 특화단지 조성 56억원
 -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27억원
(국가직접지원 126억원)
 - 차세대 차량융합부품기술개발지원 22억원
(국가직접지원 42억원, 신규)

- 3D 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터 구축 17억원
(총 사업비 190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구축 32억원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97억원
- 외국인투자지역조성 토지매입 54억원
- 투자기업 입지시설 지원 41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 160억원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78억원
-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경북 - 1,896억원
-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721억원('14년 대비 증 66억원)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9억원
-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274억원('14년 대비 증 212억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82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42억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억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 159억원
- 노후수리시설 보수보강 67억원
-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 9,765억원
- FTA 대응 농어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80억원('14년 대비 증 40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27억원
- 지방어항건설 121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72억원
- 밭기반 정비 84억원
-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60억원
- 가가호호 찾아가는 복지경북 - 1조 9,487억원
 -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 기초연금 7,226억원('14년 대비 증 2,168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482억원
 - 장애인연금지원 475억원('14년 대비 증 45억원)
 -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125억원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 영유아보육료 1,879억원
 - 누리과정 1,053억원('14년 대비 증 309억원)
-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 4,721억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해
 - 신화랑 풍류벨트조성 235억원
 - 녹색문화 상생벨트 167억원
 - 경주 역사문화 도시조성 89억원
 - 세계 선비문화공원조성 93억원
 -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45억원
 - 2015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56억원(신규)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02억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	81억원
- 만리장성 프로젝트(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22억원
○ 경제 대동맥 사통팔달 SOC 구축 -	7,474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	833억원
-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144억원
- 유비쿼터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50억원
-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133억원
-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74억원
- 대외통상교류관	33억원
-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50억원 등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 기본인프라 구축 -	6,641억원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77억원('14년 대비 증 180억원)	
- 지방도사업	910억원('14년 대비 증 15억원)
-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474억원
- 소하천 정비 사업	382억원
-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40억원 등
○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물 공급 -	4,906억원
- 농어촌생활용수 및 상수도시설 개선	931억원
('14년 대비 증 107억원)	
-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1,079억원
- 생태하천 복원	228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44억원

□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⁵⁾

-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57개 사업 1,592억원임.
- 주요사업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50억원), 신청사시설 및 청소용역(60억원), 경북도립공공도서관 부지매입(114억원), 2015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57억원) 등이 있음.
- 신규사업은 초기의 시설사업비 외에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향후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상황을 우선 고려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플라자건립	5,000	
회 계 과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신청사)	6,000	
문화융성사업단	경북도립공공도서관부지매입	11,420	
문화융성사업단	2015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	5,675	
신 도시 조 성 과	도청이전신도시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지원	5,000	
신 도시 조 성 과	대외통상교통관부지매입비	3,333	
경 주 소 방 서	감포119안전센터이전신축	1,880	

5)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1>에 게재

□ 증액사업 현황⁶⁾

- 5억원 이상 예산편성 사업 중 2014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4개 사업으로 1,589억원(187.9%)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17억원,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21억원, 유림문학유토피아 45억원임.
- 증액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예산증액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 최근 재정여건 악화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5억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비율	
미래전략 기획단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 용역	500	180	320	177.8	
투자 유치실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구축	2,200	500	1,700	340.0	
신성장 산업과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172	500	1,672	334.4	
문화융성 사업단	경북도립공공도서관 건립	3,000	1,100	1,900	172.7	
관광 진흥과	청도읍성관광자원화 사업	1,300	585	715	122.2	
친환경 농업과	FTA대응대체과수 명품화	600	300	300	100.0	

6) 5억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2>에 게재

□ 도 전출금과 도교육청 전입금 편성현황

-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지방교육세 2,442억원, 교육재정부담금 38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8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교육청 세입예산 편성과 일치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출금과 도교육청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시정된 것으로 보임.

[2015년도 도 전출금과 도교육청 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도 예산편성	교육청 예산편성	비 고
	세 출	세 입	
합 계	2,915	2,915	
지 방 교 육 세	2,442	2,442	
교육재정부담금 (도세의 3.6%)	387	387	
학교용지부담금	86	86	

□ 학교급식 예산편성 관련

-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및 도내 읍·면 지역 학생의 급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이에 따라 2015년도의 경우 2014년도 11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80억원('14년대비 10억원 증가) 편성되어 도내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학교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학교급식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사 업 내 용
총 계		13,011	11,825	1,186	
FTA농식품 유통대책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8,000	7,000	1,000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	초·중학생 급식비지원	4,862	4,676	186	도내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농업정책과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109	109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80% 지원
수산진흥과	자영수산물 급식비지원	40	40	-	해양수산물계고교 자영수산물과 학생 급식비 일부 지원

□ 행사성 경비 관련⁷⁾

- 행사성 경비중 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운영비는 자치행정과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8억원 등 191개 사업, 33억원으로 2014년도 26억원에 비해 7억원(26.9%)이 증가하였고,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은 식품의약과 경상북도식품박람회 개최 2억 2천만원 등 71개사업, 26억원으로 2014년도 24억원에 비해 2억원 (8.3%) 증가하였음.
- 특히 2015년도에 새로이 편성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규모는 적정한지를 따져 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 행사성 경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정 책 기 획 관	도정연구포럼 지원	60,000	
글로벌통상협력과	NEAR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	100,000	
자 치 행 정 과	신청사 개청식 행사	800,000	
자 치 행 정 과	현청사 환송식 행사	70,000	
농 업 정 책 과	귀농귀촌페스티벌 참가	40,000	
여성가족정책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150,000	
농 업 정 책 과	새농민회전국대회 지원	100,000	

7) 행사성 경비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3>에 게재

□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⁸⁾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대비 45억원(6.7%)이 증가한 715억원으로 본예산의 증가율(6.5%)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출연금은 기관설립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본예산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으며,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예산액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하공공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기능분석을 통해 운영비 등을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정여건 및 효과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을 반영해야 함.

[최근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출연금 예산액	71,525	67,039	56,480	45,405	27,493
전년대비 증감액	4,486	10,559	11,075	17,912	-
전년대비 증감률	6.7	18.7	24.4	65.2	-

8)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4>에 게재

[주요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여성가족정책관	도청소년수련원운영지원	1,066	
정책기획관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300	
문화예술과	(재)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	2,637	
독도정책관	독도재단법인운영지원	504	

□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⁹⁾

- '15년도 학술용역사업비는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등 38건, 44억원임.
- 학술용역사업의 예산편성시에는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해 학술용역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은 제외
- 따라서 학술용역사업 편성 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심의 절차를 철저히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은 물론, 용역결과를 도정 주요시책에 반영하는

9)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5>에 게재

등의 학술용역사업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주요 연구 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미래전략기획단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500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400	
건축디자인과	한옥전수조사용역비	160	
동해안발전정책과	신동해안바이오중주뱅크설립연구	100	
해양항만과	연안침식모니터링(지특도비)	571	

□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 관련¹⁰⁾

○ '15년도 세출예산 중 고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1억원 이상 예산편성 내역은 21건 566억원임.

-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시적 고용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바,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10)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6>에 게재

[주요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일자리 창출단	공공근로사업	2,106	
일자리 창출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57	
일자리 창출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5,121	
일자리 창출단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327	
일자리 창출단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6,162	
산 립 자 원 과	산불감시원	2,056	
노인 효 복지 과	노인일자리사업지원	30,415	

- '14년 11월 현재 일자리창출 추진상황¹¹⁾은 108개 사업을 추진하여 60,642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목표 64,966개의 93.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분야 예산 관련

- '15년도 복지분야 예산편성 내역은 1조 8,444억원으로 전년도 1조 6,043억원 대비 2,401억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복지예산 비중은 29.4%로 전년도 27.2% 대비 2.2% 증가하였음.

11) 2014년 일자리창출 추진상황은 참고자료 <자료 7>에 게재

[복지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산규모(A) (일반회계)	62,810	58,954	55,280	51,500
복지예산(B)	18,444	16,043	13,764	12,245
복지예산 비율(B/A)	29.4	27.2	24.9	23.8

- 연도별 복지예산 비중은 '12년 23.8%, '13년 24.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매년 지방비 부담액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등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 할매·할배의 날 지원 예산 관련

-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제정(2014. 10. 27)하고 '15년도에 관련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중에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억 5천만원, 홈페이지 구축 1천 5백만원, 홍보활동 지원(시군보조 포함) 4

억원 등 홍보부문에 5억 6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시행초기에 도민들의 관심도 향상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조기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홍보 및 분위기 확산에 중점투자하기 보다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 사업, 문화체험활동 등 실제적으로 효를 장려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할매·할배의 날 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편 성 목	비 고
노인효복지과	할매할배의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50	사무관리비	
	할매할배의날 홈페이지구축	15	전산개발비	
	밥상머리교육	480	민간경상보조	
	할매할배의날 위탁교육	32	사회복지사업보조	
	격대교육시범마을지정운영	40	"	
	인성(격대)교육특별강좌운영	54	"	
	할매할배의날 기념식	130	"	
	할매할배의날 관계자워크숍	10	"	
	할매할배의날 홍보활동지원	200	"	
	할매할배의날 UCC공모전	20	"	
	할매할배의날 시책홍보(시군)	200	자치단체경상보조	
	할매할배의날 기념식지원	23	"	

□ 2015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관련

- 실�크로드 거점으로서의 경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화권내 한반도의 역할 재조명 및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과 한류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57억원(지특 33, 도비 24)을 편성하였음.
- 주요 내용을 보면 '살아 숨쉬는 실�크로드, 숨겨진 보물신라'를 주제로 공연, 전시, 영상, 체험, 이벤트, 특별행사 등이 있음.
- 실�크로드 관련 사업의 시행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공연 콘텐츠 도입과 우수 공연단체 선정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올해 치루어진 이스탄불in경주 행사와의 차이점,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정홍보비 예산편성 관련¹²⁾

- 공익광고,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 도정현안 전략 홍보 등 도정 홍보를 위해 반영된 홍보예산은 전년도 85억원에 비해 9억원 증가한 94억원임.
- 관광객 유치, 투자 유치, 세계물포럼 개최, 도청이전 등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비가 증가하였음.

12) 홍보비 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8>에 게재

-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정 홍보가 필요할 것이나,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사례 등을 개선하도록 홍보매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보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 홍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증 감
		'15년	'14년	
대 변 인	도정주요홍보 등	1,270	1,020	250
투 자 유 치 실	기업유치캠페인제작	500	335	165
환경산림자원국	세계물포럼 및 산림시책 홍보 등	800	540	260
도청신도시본부	도청이전 및 신도청시대 홍보 등	1,000	960	40

3. 종합 의견

- 2015년도 예산안은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 동력 창출, FTA 대응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 기반 조성,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로 문화융성 선도, 찾아

가는 복지경북 실현, 신도청 시대 개막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혜택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 지출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도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투자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2015년을 건전재정 운용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 5억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 ☐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 ☐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 ☐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편성 현황
- ☐ 2014년 일자리창출 추진 상황
- ☐ 홍보비 편성 현황

〈자료 1〉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플라자건립	5,000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센터건립	2,000	국 고 보조금
투 자 유 치 실	경산지식산업지구간선도로건설	1,434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선도사업육성	1,500	
창조경제과학과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터지원	1,200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1,000	
신 성 장 산 업 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200	
신 성 장 산 업 과	차세대차량융합부품기술개발지원사업	2,250	
신 성 장 산 업 과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	1,300	
청정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공급소외지역지원	2,128	
민생경제교통과	지자체첨단도로교통체계(ITS) 사업	1,564	
글로벌통상협력과	무역사절단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2,200	
안 전 총 괄 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1,495	
새 마 을 봉 사 과	도행복마을만들기소득증대사업	2,400	
회 계 과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신청사)	6,000	
회 계 과	사무공간환경개선공사(신청사)	2,000	
문 화 예 술 과	포은선비문화연수관건립	1,160	
문 화 예 술 과	경산시민회관시설개선	1,38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문 화 예 술 과	문경문화예술회관시설개선	1,500	
문화융성사업단	영주통합도서관건립	2,400	
문화융성사업단	경북도립공공도서관부지매입	11,420	
문화융성사업단	영주아트센터조성	3,341	
문화융성사업단	문화엑스포운영지원	3,000	
문화융성사업단	실크로드소리길지원	1,700	
문화융성사업단	2015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	5,675	
문 화 유 산 과	채미정주변정비	1,820	
문 화 유 산 과	고도이미지찾기사업	2,171	
관 광 진 흥 과	장사관광지주변정비(영덕)	1,040	
관 광 진 흥 과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김천)	1,040	
관 광 진 흥 과	최무선영상체험관건립(영천)	1,300	
관 광 진 흥 과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상주)	1,300	
관 광 진 흥 과	봉화전통마을관광자원화(봉화)	2,431	
관 광 진 흥 과	소백산명상센터조성사업	1,200	
관 광 진 흥 과	국토끝섬관광자원화사업	1,300	
관 광 진 흥 과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10,721	
관 광 진 흥 과	초전지역사로드(구미)	5,078	
체 육 진 흥 과	구미시니어스포츠파크조성	1,200	
농 업 정 책 과	농업6차산업화지원	1,389	
F T A 농 식 품 유 통 대 책 단	농산물공동출하확대사업	2,013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친 환 경 농 업 과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조성	1,625	
친 환 경 농 업 과	고품질쌀브랜드육성 (가공시설현대화)	1,755	
농 촌 개 발 과	시군수리시설개보수	5,360	국 고 보조금
축 산 경 영 과	피해보전직불금(14년)	3,100	기 금
축 산 경 영 과	폐업지원금(14년)	2,900	기 금
물 산 업 과	도시침수대응사업	16,410	국 고 보조금
물 산 업 과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	1,112	
장 애 인 복 지 과	칠곡군장애인복지관건립	2,000	기 금
보 건 정 책 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3,298	
도 시 계 획 과	도시재생사업	3,200	
하 천 과	소규모댐건설	2,249	국 고 보조금
동해안발전정책과	연안유휴지개발	1,749	
수 산 진 흥 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1,470	
독 도 정 책 관	독도박물관리모델링사업지원	1,500	
독 도 정 책 관	독도3D애니메이션제작지원	1,000	국 고 보조금
신 도 시 조 성 과	도청이전신도시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지원	5,000	
신 도 시 지 원 과	대외통상교류관부지매입비	3,333	
경 주 소 방 서	감포119안전센터이전신축	1,880	

〈자료 2〉

5억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총 계		243,433	84,546	158,887	187.9	
미 래 전 략 기 획 단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500	180	320	177.8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운영지원	672	198	474	239.4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시군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656	182	474	260.4	
투자유치실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구축	2,200	500	1,700	340.0	
신 성 장 산 업 과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172	500	1,672	334.4	
민 생 경 제 교 통 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지원	2,405	975	1,430	146.7	
민 생 경 제 교 통 과	특별교통수단구입 지원	2,080	650	1,430	220.0	
기 업 노 사 지 원 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2,000	1,000	1,000	100.0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	8,239	3,211	5,028	156.6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10,392	760	9,632	1,267.4	
새 마 을 봉 사 과	살기좋은경북만들기 사업	13,050	5,000	8,050	161.0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문화예술과	김천문화원건립	2,345	1,015	1,330	131.0	
문 화 용 성 사 업 단	포항중앙도서관건립	4,749	2,680	2,069	77.2	
문 화 용 성 사 업 단	경북도립공공도서관 건립	3,000	1,100	1,900	172.7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전수교육 관건립지원(영덕)	1,170	260	910	350.0	
문화유산과	구왜관터널주변정비	910	260	650	250.0	
문화유산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6,885	3,944	2,941	74.6	
관광진흥과	에밀레종테마파크 조성(경주)	975	650	325	50.0	
관광진흥과	도산서부리예술마을 조성(안동)	650	260	390	150.0	
관광진흥과	보현산천문과학관 전시체험장조성(영천)	650	260	390	150.0	
관광진흥과	낙동강강바람길탐방 로조성(상주)	910	260	650	250.0	
관광진흥과	의성성문건립 및 공원화사업(의성)	520	260	260	100.0	
관광진흥과	청도읍성관광자원화 사업(청도)	1,300	585	715	122.2	
관광진흥과	낙동강수변레저공원 조성(칠곡)	1,430	744	686	92.2	
관광진흥과	비룡산주변관광자원 화사업(예천)	975	195	780	400.0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관광진흥과	삼국시대우산국관광 자원개발(울릉)	910	421	489	116.1	
관광진흥과	음식디미방(영양)	3,385	1,002	2,383	237.8	
관광진흥과	유림문학유토피아 (안동)	5,643	1,185	4,458	376.2	
관광진흥과	태평성대경상감영 (상주)	2,708	593	2,115	356.7	
관광진흥과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안동)	1,806	316	1,490	471.5	
체육진흥과	구미구포동생활체육 공원조성	1,000	530	470	88.7	
체육진흥과	구미낙동강수변 레포츠체험센터조성	1,200	400	800	200.0	
체육진흥과	성주공공체육시설 조성	700	200	500	250.0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신규 조성 및 사후지원	1,038	612	426	69.6	
친 환 경 농 업 과	FTA대응대체과수 명품화	600	300	300	100.0	
친 환 경 농 업 과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2,082	780	1,302	166.9	
농촌개발과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마을)	5,344	2,866	2,478	86.4	
농촌개발과	지역역량강화사업	768	490	278	56.7	
농촌개발과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용수개발)	6,793	2,680	4,113	153.5	
농촌개발과	배수개선(지원)	5,000	200	4,800	2,400.0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잠 사 곤 충 사 업 장	곤충테마생태원조성	3,046	400	2,646	661.5	
환경정책과	경북신도청소각시설 설치사업	20,279	2,554	17,725	694.0	
환경정책과	경북신도청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4,335	500	3,835	767.0	
환경정책과	환경연수원본관리 모델링 및 경관조경사업	520	280	240	85.7	
물 산 업 과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	4,514	1,693	2,821	166.6	
산림자원과	임도보수	1,334	769	565	73.5	
산림산업과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조성	1,300	650	650	100.0	
산림산업과	치유의 숲 조성	780	130	650	500.0	
산 립 자 원 개 발 원	산림문화휴양촌조성 사업	5,235	1,338	3,897	291.2	
사회복지과	개별급여체계전환지원 (사회복지직인건비)	2,251	1,102	1,149	104.2	
사회복지과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2,375	480	1,895	394.8	
노 인 효 복 지 과	효문화진흥원건립 지원	1,475	261	1,214	465.1	
노 인 효 복 지 과	양로시설운영비지원	4,903	2,177	2,726	120.7	
장 애 인 복 지 과	도장애인복지관분관 운영	525	315	210	66.7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20	248	272	109.7	
보건정책과	김천의료원기능강화	4,280	1,790	2,490	139.1	
식품의약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운영지원	2,281	1,365	916	67.1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 사업	3,852	1,665	2,187	131.4	
균 형 발 전 사 업 단	가야문화권특정지역 지원사업	4,030	1,740	2,290	131.6	
균 형 발 전 사 업 단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	6,582	4,354	2,228	51.2	
도 로 철 도 공 항 과	청도경산간국지도 건설	7,436	1,800	5,636	313.1	
도 로 철 도 공 항 과	조교임고간국지도 건설	15,547	7,565	7,982	105.5	
도 로 철 도 공 항 과	강동안강간국지도 건설	4,550	1,880	2,670	142.0	
도 로 철 도 공 항 과	단산부석간국지도 개량	4,785	598	4,187	700.1	
도 로 철 도 공 항 과	위험도로구조개선	3,151	1,326	1,825	137.6	
동 해 안 발전정책과	상주낙단보수상레저 센터건립	1,690	650	1,040	160.0	
수산진흥과	과메기산업화가공단 지 조성	5,590	2,787	2,803	100.5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수산진흥과	붉은대게식품단지 조성	4,427	910	3,517	386.5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2,480	1,300	1,180	90.8	
수 산 자 원 연 구 소	한해성특화품종생산 시설건립	4,986	1,922	3,064	159.4	
어 업 기 술 센 터	배합사료지원	1,000	370	630	170.3	
소 방 학 교	소방시설실습동신축 공사	1,632	243	1,389	571.6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사업	900	500	400	80.0	
농업기술원	지역농업특성화 (신규 1년차)	1,030	680	350	51.5	

〈자료 3〉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 행사운영비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3,312,703	
의 회 사 무 처	의정지원업무위크숍	10,000	
의 회 사 무 처	의원위크숍	30,000	
의 회 사 무 처	청소년의회교실	9,000	
의 회 사 무 처	의원연구단체행사(6개)	30,000	
의 회 사 무 처	정책연구위원회행사	20,000	
의 회 사 무 처	의원위크숍(6건)	35,400	
대 변 인	홍보담당공무원위크숍	5,000	
감 사 관	감사담당공무원위크숍 및 감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5,000	
감 사 관	명예감사관위크숍개최	18,000	
감 사 관	전문가초청원가심사담당공무원 위크숍	5,00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장성희롱 및 성매매 등 예방(집합) 교육	1,00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여성정책활성화위크숍	5,000	
투 자 유 치 실	투자유치기업해피모니터위크숍	15,000	
경 북 개 혁 추 진 단	규제애로발굴현장간담회	10,000	
경 북 개 혁 추 진 단	규제개혁발굴보고회(포럼)	1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경 북 개 혁 추 진 단	규제개혁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경 북 개 혁 추 진 단	비정상외 정상화교육 및 현장토론회 등	10,000	
경 북 개 혁 추 진 단	정부3.0성과보고대회	10,000	
경 북 개 혁 추 진 단	정부3.0관계관워크숍	5,000	
정 책 기 획 관	도 및 시군기획업무담당자워크숍	3,000	
정 책 기 획 관	조직관리관계관워크숍	3,000	
정 책 기 획 관	도 및 시군의회업무담당자워크숍	3,000	
정 책 기 획 관	시군평가담당공무원교육 등	5,000	
정 책 기 획 관	도정연구포럼지원	60,000	
정 책 기 획 관	행정제도개선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5,000	
예 산 담 당 관	예산업무추진시군공무원연찬회개최	5,000	
세 정 담 당 관	지방세세무공무원한마음대회	10,000	
세 정 담 당 관	지방세발전포럼	7,000	
세 정 담 당 관	지방세업무정기교육 및 워크숍	10,000	
세 정 담 당 관	세외수입연구포럼	3,000	
세 정 담 당 관	신세원 및 숨은세원발굴워크숍	2,000	
법 무 통 계 담 당 관	법무행정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법 무 통 계 담 당 관	법제교육운영경비	3,000	
법 무 통 계 담 당 관	지역통계개발 및 활용을 위한 워크숍	5,000	
서 울 지 사	수도권재경인문화탐방행사	2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서 울 지 사	지역발전협의행사 등	15,000	
신 성 장 산 업 과	자동차산업시책개발 및 네트워크	10,000	
청정에너지산업과	경상북도에너지정보교류대회	15,000	
일 자 리 창 출 단	청년일자리업무 (일학습병행제특구추진 등)	20,0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경제활성화시책개발워크숍개최	5,0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지역특화발전특구워크숍	3,0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소비자역량강화행사	2,000	
글로벌통상협력과	해외교류협력사업	60,000	
글로벌통상협력과	외국지자체공무원경북탐방	5,000	
글로벌통상협력과	해외도민회활동지원사업	50,000	
글로벌통상협력과	NEAR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	100,000	
글로벌통상협력과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회의개최	60,000	
자 치 행 정 과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	150,000	
자 치 행 정 과	신청사개청식행사	800,000	
자 치 행 정 과	현청사환송식행사	70,000	
자 치 행 정 과	도·시군의전업무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10,000	
자 치 행 정 과	시군행정여론업무담당워크숍	5,000	
자 치 행 정 과	도민의 날 행사	20,000	
자 치 행 정 과	시군기록물관리담당자워크숍	3,000	
자 치 행 정 과	주민자치센터경진대회	3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자 치 행 정 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자 치 행 정 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워크숍 등	16,400	
자 치 행 정 과	도·시군인사담당공무원워크숍	3,000	
자 치 행 정 과	공무원단체관련워크숍	6,000	
자 치 행 정 과	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	28,000	
안 전 총 팔 과	위기대응현장매뉴얼개선릴레이 토론회 개최	10,000	
안 전 총 팔 과	재난안전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안 전 총 팔 과	민방위창설기념행사	3,000	
안 전 총 팔 과	민방위비상대비방사능업무담당자 워크숍	5,000	
안 전 총 팔 과	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	20,000	
안 전 총 팔 과	안전문화운동협의회운영	10,500	
안 전 총 팔 과	특사경역량강화워크숍개최	20,000	
안 전 총 팔 과	치수방재업무담당공무원워크숍	3,000	
안 전 총 팔 과	예비군창설행사	3,000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관계관워크숍	8,000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홍보부스운영	15,000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세계화협력보급	30,000	
새 마 을 봉 사 과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워크숍	3,000	
새 마 을 봉 사 과	전국 및 도단위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운영	3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새 마 을 봉 사 과	경상북도평생교육기관단체관계자 워크숍	3,000	
새 마 을 봉 사 과	도민교육운영발전을 위한 워크숍	5,000	
새 마 을 봉 사 과	민원공무원경진대회	10,000	
회 계 과	회계관계공무원워크숍	5,000	
회 계 과	계약관계공무원워크숍	5,000	
회 계 과	국공유재산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정 보 통 신 과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개최	10,000	
정 보 통 신 과	시군정보화업무담당자연찬회	5,000	
정 보 통 신 과	지역정보화강사오리엔테이션개최	3,000	
정 보 통 신 과	정보문화의 달 행사개최	10,000	
정 보 통 신 과	프로그램관리자교육 등 역량강화	3,000	
관 광 진 흥 과	3대문화권사업워크숍개최	6,000	
농 업 정 책 과	귀농귀촌페스티벌참가	40,000	
농 업 정 책 과	젊은농어업인포럼개최	5,000	
농 업 정 책 과	농업전망2015경북대회개최	20,000	
농 업 정 책 과	미래농수산업발전구상워크숍	5,000	
F T A 농 식 품 유 통 대 책 단	FTA대책워크숍 및 보고회	30,000	
F T A 농 식 품 유 통 대 책 단	농산물유통관련행사	3,000	
농 촌 개 발 과	농촌지역개발사업워크숍	1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축 산 경 영 과	축산정책개발 및 워크숍	5,000	
잠 사 곤 충 사업 장	누에와 나비 한마당행사	45,000	
잠 사 곤 충 사업 장	풍잠기원제행사	7,500	
가 축 위 생 시 험 소	구제역 및 가축방역워크숍	25,000	
환 경 안 전 과	환경기술인·유독물관리자·공무원안전 교육 및 현장체험 등	7,000	
물 산 업 과	상하수도공무원업무연찬회	5,000	
산 림 자 원 과	산의 날 기념행사	20,000	
산 림 자 원 과	산불관계관역량강화교육	13,000	
산 림 산 업 과	숲해설가 및 산림교육관계관 워크숍	5,000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숲사랑소년단수련대회행사운영	15,000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산림토목사업기술연찬회개최	5,000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서 부 지 원	준공 및 개장식행사추진	10,000	
산 림 자 원 개 발 원	기획전 및 산림문화체험행사	35,000	
산 림 자 원 개 발 원	숲아카데미연찬회 및 세미나 행사운영 등	18,000	
수 목 원 관 리 소	수목원체험의 날 행사	10,000	
사 회 복 지 과	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사 회 복 지 과	사회복지전문성강화	10,000	
보 건 정 책 과	보건의 날 행사운영	14,000	
보 건 정 책 과	구구팔팔특공대운영성과대회	1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보 건 정 책 과	도민건강한마당	50,000	
보 건 정 책 과	치매극복의 날 행사	10,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안전의 날 행사	15,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위생담당공무원워크숍개최	5,000	
식 품 의 약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워크숍	10,000	
식 품 의 약 과	약무자율지도원활성화워크숍	5,000	
식 품 의 약 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워크숍	5,000	
노인전문간호센터	경로잔치	7,200	
노인전문간호센터	생일잔치 및 나들이간식구입	2,400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담당공무원워크숍	3,000	
도 시 계 획 과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워크숍	5,000	
균 형 발 전 사 업 단	지역개발사업민간자본유치설명회	5,000	
균 형 발 전 사 업 단	지역행복생활권워크숍개최 (지특중앙)	10,000	
균 형 발 전 사 업 단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운영관련행 사비 등(지특도비)	35,000	
도 로 철 도 공 항 과	도로건설관련관계관워크숍	5,000	
건 축 디 자 인 과	경상북도산관학건축인교류대회개최	12,000	
건 축 디 자 인 과	건축행정담당공무원워크숍개최	4,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건 축 디 자 인 과	공동주택관리자업무연찬회	5,000	
건 축 디 자 인 과	아름다운간판달기범도민문화운동	4,000	
건 축 디 자 인 과	옥외광고민관합동포럼	4,000	
건 축 디 자 인 과	몽골UB도시개발교류협력사업	10,000	
토 지 정 보 과	지적업무담당공무원워크숍	5,000	
종합건설사업소	조종원정기교육 및 안전운전체험 교육	5,600	
동해안발전정책과	신동해안발전전략구상워크숍	5,000	
해 양 항 만 과	해양개발전략세미나개최	5,000	
독 도 정 책 관	독도관련행사개최	7,000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종묘방류행사 등	5,000	
민물고기연구센터	관상어나눔행사 및 특별기획전 등 행사운영	10,000	
민물고기연구센터	연어 등 종묘방류행사	3,000	
토 속 어 류 산 업 화 센 터	종묘방류행사 등	5,000	
어 업 기 술 센 터	어촌지도자연찬회개최	20,000	
어 업 기 술 센 터	시험양식어류시식회행사	5,000	
어 업 기 술 센 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도자현장교육	20,000	
총 괄 지 원 과	신도청이사기념행사	30,000	
신 도 시 지 원 과	도청이전신도시유관기관단체워크숍	20,000	
신 도 시 지 원 과	신도시공공시설사업추진관계자 워크숍	7,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소방공무원워크숍	25,000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소방가족한마음체육대회	130,000	
소방본부 대응구 조 구 급 과	119소방동요대회	40,000	
소방본부 대응구 조 구 급 과	119소년단안전캠프 및 지도교사 워크숍	8,000	
소 방 학 교	특수재난대응체계구축을 위한 학술세미나	8,000	
포항북부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	2,409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	2,657	
경 주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825	
김 천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81	
안 동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862	
구 미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773	
영 주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573	
영 천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02	
상 주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86	
문 경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582	
경 산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736	
의 성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484	
영 덕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218	
고 령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성 주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171	
칠 곡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95	
울 진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49	
농 업 기 술 원 작 물 육 종 과	R&D분야발전방안워크숍	5,0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농가경영현장실용화사업세미나 등	7,0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농업인e비즈니스프로그램운영 등	22,0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등	10,6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정보화농업인워크숍 등	5,000	
농 업 기 술 원 농업환경연구과	안전농산물생산심포지엄개최	3,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농촌진흥사업평가 및 직원역량 개발워크숍	15,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4-H한마음대회	15,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도4-H야영대회	30,000	
농 업 기 술 원 기 술 지 원 과	생활원예교실운영 및 콘테스트개최	15,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농식품6차산업전문가양성교육	10,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농촌관광경영체역량강화교육행사	20,000	
성주과채류시험장	저온저일조행사비(지특중앙)	3,000	
성주과채류시험장	하절기시설행사비(지특중앙)	3,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청도북송아시협장	신품종현장평가회 및 연구회세미나개최 등	13,000	
풍기인삼시험장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운영 (지특중앙)	2,000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식중독 및 감염병담당자워크숍	5,000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창의실용 포럼개최	5,000	
보건환경연구원	대외기관(타시도)과의 공동워크숍개최	5,000	
보건환경연구원	영천한약축제참가홍보부스운영	10,000	

□ 민간행사보조금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2,648,500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가족배드민턴대회지원	18,000	
여성가족정책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150,000	
민생경제교통과	우수시장박람회참가	10,000	
민생경제교통과	선진시장비교견학	20,000	
민생경제교통과	전통시장상인워크숍	20,000	
민생경제교통과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	70,000	
기업노사지원과	대구경북여성경제인대회개최지원	20,000	
기업노사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개최	40,000	
기업노사지원과	근로자가요제 개최	20,000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환경분야무기계약직 근로자체육대회	80,000	
자 치 행 정 과	이통장한마음대회지원	50,000	
자 치 행 정 과	도민의 날 행사	70,000	
자 치 행 정 과	행복한경북만들기를 위한 범죄 예방결의대회	18,000	
자 치 행 정 과	범도민기초질서선진화다짐대회	35,000	
자 치 행 정 과	청소년적십자전국캠프지원	40,000	
안 전 총 괄 과	재난안전네트워크실무자워크숍	20,000	
안 전 총 괄 과	구조구급경진대회	30,000	
안 전 총 괄 과	대형수난사고현장대응역량강화훈련	5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새 마을 봉 사 과	국민독서경진대회	10,000	
새 마을 봉 사 과	도민문화한마당	30,000	
새 마을 봉 사 과	한마음합창경연	10,00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여인상 시상	20,00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80,00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000	
새 마을 봉 사 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10,000	
새 마을 봉 사 과	자연보호우수선진지현장체험	15,000	
새 마을 봉 사 과	범도민환경대청결자연정화활동지원	15,000	
새 마을 봉 사 과	제37주년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15,000	
새 마을 봉 사 과	나라사랑대경사랑강철캠프	20,000	
새 마을 봉 사 과	청소년안보캠프	10,000	
새 마을 봉 사 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대회 참가 및 도대회 개최	30,000	
새 마을 봉 사 과	제16회국민화합전진대회	15,000	
새 마을 봉 사 과	바르게살기운동경북여성대회	25,000	
새 마을 봉 사 과	범도민법질서확립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	20,000	
정 보 통 신 과	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	10,500	
문 화 예 술 과	제45회경상북도공예품대전 개최	40,000	
문 화 예 술 과	제46회경상북도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40,000	
농 업 정 책 과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도대회	80,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농 업 정 책 과	전국농민회도연맹도대회	25,000	
농 업 정 책 과	한국여성농업인도연합회전국대회	20,000	
농 업 정 책 과	전국여성농민회도연합회도대회	18,000	
농 업 정 책 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50,000	
농 업 정 책 과	농업경영인연찬교육	10,000	
농 업 정 책 과	농업인단체교류행사지원	28,000	
농 업 정 책 과	새농민회전국대회지원	100,000	
농 업 정 책 과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행사지원	22,000	
친 환 경 농 업 과	도친환경농산물홍보축진행사지원	54,000	
친 환 경 농 업 과	쌀전업농도연합회도대회개최지원	40,000	
친 환 경 농 업 과	경북사과홍보행사	130,000	
친 환 경 농 업 과	대구경북꽃박람회참가지원	30,000	
축 산 경 영 과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지원	28,000	
축 산 경 영 과	축산단체연합회행사지원	50,000	
축 산 경 영 과	축산물가격안정대책추진	20,000	
환 경 정 책 과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14,000	
물 산 업 과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7,000	
산 림 자 원 과	나무심기행사지원	28,000	
보 건 정 책 과	건강증진자원봉사자대회지원	14,000	
보 건 정 책 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체육대회	5,000	
보 건 정 책 과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15,000	

(단위 : 천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식 품 의 약 과	경상북도식품박람회개최	220,000	
균형발전사업단	이전공공기관교류활동사업 (지특도비)	50,000	
균형발전사업단	지역탐방프로그램운영(지특도비)	40,000	
균형발전사업단	산학연클러스터투자유치설명회 (지특도비)	70,000	
수 산 진 흥 과	기능성수산물홍보지원	35,000	
수 산 진 흥 과	수산업경영인도대회	38,0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정보화농업인홍보대회	30,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농촌지도자도대회지원	50,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4-H회원교육 및 행사지원	16,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우리쌀가공식품활용전문교육	20,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생활개선회도대회지원	50,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생활개선회연찬교육지원	50,000	

〈자료 4〉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운영	988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사관학교운영	6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SNS운영	30	
여성가족정책관	도청소년수련원운영지원	1,066	
여성가족정책관	도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운영지원	288	
여성가족정책관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	30	
정 책 기 획 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200	
정 책 기 획 관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300	
정 책 기 획 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0	
세 정 담 당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139	
창조경제과학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원	100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선도사업육성	1,500	
창조경제과학과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연계사업	7,000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1,000	
창조경제과학과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육성추진	200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기계부품기술지원기반조성	5,645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육성지원	150	
신 성 장 산 업 과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250	
신 성 장 산 업 과	항공전자산업육성	200	
신 성 장 산 업 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4,278	
신 성 장 산 업 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200	
신 성 장 산 업 과	하이테크베어링산업화기반구축사업	400	
신 성 장 산 업 과	하이테크베어링산업화기반구축운영지원	75	
신 성 장 산 업 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지원	315	
신 성 장 산 업 과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운영지원	225	
신 성 장 산 업 과	친환경자동차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추진	200	
신 성 장 산 업 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00	
신 성 장 산 업 과	기술닥터119지원사업	100	
신 성 장 산 업 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운영지원	940	
신 성 장 산 업 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589	
신 성 장 산 업 과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운영지원	500	
신 성 장 산 업 과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1,000	
신 성 장 산 업 과	경북고감성친환경섬유디자인경쟁력 강화사업	160	
민생경제교통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햇살론 사업추진	3,69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민생경제교통과	교통문화연수원운영비지원	796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운영비지원	593	
기업노사지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조성	2,00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세계화재단운영비	630	
새 마을 봉 사 과	저개발국새마을연수 및 보급	680	
새 마을 봉 사 과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활동	25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선발 및 교육	300	
새 마을 봉 사 과	저개발국새마을시범마을조성	3,000	
새 마을 봉 사 과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운영	15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세계화교류협력사업	50	
새 마을 봉 사 과	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424	
새 마을 봉 사 과	도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	320	
새 마을 봉 사 과	경북학숙운영비	733	
새 마을 봉 사 과	경북학숙사업지원(영어학습)	222	
문 화 예 술 과	(재)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	2,637	
문 화 예 술 과	한국국학진흥원개보수(지특도비)	500	
문화융성사업단	솔거미술관운영비지원	500	
문화융성사업단	솔거미술관조경공사지원	500	
문화융성사업단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1,116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문화융성사업단	문화엑스포운영지원	3,000	
문화융성사업단	실�크로드소리길지원	1,700	
체 육 진 흥 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지원	4,471	
FTA농식품유통 대 책 단	경북농민사관학교운영	2,715	
환 경 정 책 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232	
물 산 업 과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출연금	550	
사 회 복 지 과	행복재단운영	1,500	
사 회 복 지 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운영지원	400	
보 건 정 책 과	지방의료원의료인력인건비지원	200	
보 건 정 책 과	안동의료원지역개발기금부담금상환지원	221	
보 건 정 책 과	원격영상진료시스템운영	60	
보 건 정 책 과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	360	
해 양 향 만 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747	
해 양 향 만 과	해양바이오전문인력양성사업	30	
독 도 정 책 관	독도재단법인운영지원	504	
독 도 정 책 관	독도학술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등	896	

〈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감 사 관	고위공직자청렴도측정평가용역	20	
미 래 전 략 기 획 단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500	
미 래 전 략 기 획 단	경북정체성교육보조교재개발연구	10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여성정책개발원평가용역	1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보육발전종합계획수립	50	
정 책 기 획 관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공통)	1,400	
정 책 기 획 관	대구경북연구원경영평가용역	20	
예 산 담 당 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용역	100	
예 산 담 당 관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용역	110	
세 정 담 당 관	감면조례제개정타당성용역	20	
창 조 경 제 과 학 과	미래유망과학기술사업발굴추진	50	
I C T 융 합 산 업 과	경북사물인터넷(IoT) 산업육성기본 계획수립연구용역	100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도시가스요금산정용역	30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도시가스시설분담금산정용역	40	
새 마 을 봉 사 과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고객욕구조사	20	
새 마 을 봉 사 과	민원콜센터연구용역	30	
문 화 유 산 과	문화재수리세부시행계획용역	50	
문 화 유 산 과	종가문화인류무형유산 등 재학술연구	30	
관 광 진 흥 과	3대문화권관광진흥사업실행계획 수립용역	65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물 산 업 과	Post2015세계물포럼연구용역	50	
물 산 업 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50	
산 립 환 경 연 구 원	사방댐관리모니터링기법연구	19	
사 회 복 지 과	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수립	20	
균 형 발 전 사 업 단	경상북도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지특중앙)	40	
건 축 디 자 인 과	한옥전수조사용역비	16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동해안맑은소금산업연구용역	3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IT융합해양플랜트부품산업육성 방안연구용역	6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신동해안해양레포츠체험벨트조성연구	8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신동해안바이오중주뱅크설립연구	10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해조류힐링염색산업화기획연구	50	
동 해 안 발 전 정 책 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용역추진	120	
해 양 향 만 과	연안침식모니터링(지특도비)	571	
수 산 진 흥 과	2중이상자망이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120	
총 괄 지 원 과	도청이전백서발간	80	
신 도 시 조 성 과	도청이전신도시활성화방안연구용역	1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여성농업인농업노동 및 생활실태조사 분석	2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농촌건강생활촌사업평가 및 영향분석	8	
상 주 감 시 협 장	상주감시협장이전타당성용역	30	

〈자료 6〉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56,629	
일자리 창출단	시군 청년창업사업 지원	600	
일자리 창출단	경북창업지원센터운영 및 청년CEO 육성지원	800	
일자리 창출단	장년 창업지원사업	150	
일자리 창출단	베이비부머세대새출발설계맞춤형학교	300	
일자리 창출단	청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400	
일자리 창출단	경북일자리종합센터지원	400	
일자리 창출단	경북형 산관학 일자리 한마당 권역별운영	100	
일자리 창출단	공공근로사업	2,106	
일자리 창출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57	
일자리 창출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5,121	
일자리 창출단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00	
일자리 창출단	마을기업 육성사업	854	
일자리 창출단	마을기업교육컨설팅지원 사업	210	
일자리 창출단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600	
일자리 창출단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327	
일자리 창출단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사업	6,162	
기업노사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80	
산 립 자 원 과	산불감시원	2,056	
산 립 산 업 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621	
정 보 통 신 과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470	
노인효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지원	30,415	

〈자료 7〉

2014년 일자리창출 추진 상황

(2014. 11. 14. 현재)

□ 일자리창출 실적

사 업 명	사업수	일자리 목 표	일자리 추진실적	비율 (%)	비 고
총 계	108	64,966	60,642	93.3	
생 애 일 자 리	31	11,767	8,974	76.3	
기업유치일자리	1	10,000	7,189	71.9	- 국내외 투자유치
신성장산업일자리	7	314	213	67.8	- 원자력, 첨단산업 등
문화창조일자리	13	624	743	119.1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복지전문일자리	10	829	829	100	- 보건·복지, 다문화 등
청년희망일자리	26	8,746	11,781	134.7	
청년창업일자리	3	300	91	30.3	- 청년CEO 및 창업보육
2030 취업일자리	19	8,125	11,562	142.3	- 중기인턴, 취업박람회, 지역맞춤형 등
글로벌일자리	4	321	128	39.9	- 해외인턴, 새마을봉사단 등
지역활성화일자리	20	4,176	3,606	75.0	
사회적기업	1	460	1,162	252.6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	230	237	103	- 마을기업
자립형자활근로	1	2,934	1,880	64.1	- 자립형자활근로(시장진입형 등)
귀농(영농)일자리	17	552	327	59.2	- 귀농, 귀촌, 농산업 등
사회적서비스일자리	13	27,441	24,454	89.1	
노인일자리	3	23,766	21,546	90.7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장애인일자리	3	2,000	1,184	59.2	- 장애인활동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여성가족일자리	7	1,675	1,724	102.9	-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위기청소년보호 등
친서민일자리	18	12,836	11,827	92.1	
공익일자리	13	4,520	3,783	83.7	- 산림가꾸기, 문화재돌보미 등
취약계층일자리	5	8,316	8,044	96.7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자활근로(근로유지형)

※ 좋은일자리 창출 실적

총 계		청 년		여 성		서 민		비 율 (%)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1,332	8,328	6,540	4,746	668	1,624	4,124	1,958	73.5%

※ 민선 6기 목표 10만개 ⇨ 실적 8,328개(8.3%)

〈자료 8〉

홍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증 감
		'15년	'14년	
계		9,430	8,515	915
대 변 인	도정 주요홍보 등	1,270	1,020	250
투 자 유 치 실	기업유치캠페인제작	500	335	165
정 책 기 획 관	도정주요정책홍보	220	200	20
창조경제산업실	과학기술진흥 홍보 등	340	640	△300
안 전 행 정 국	새마을 국내외 시책홍보 등	380	400	△20
문화관광체육국	경북의 정신문화홍보	100	100	0
	실크로드프로젝트기획홍보	700	700	0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의 문화재	100	100	0
	경북관광홍보	2,290	1,540	750
농 축 산 유 통 국	FTA 및 농특산물 홍보 등	870	775	95
환경산림자원국	세계 물포럼 및 산림시책 홍보 등	800	540	260
복 지 건 강 국	다문화 정책 등 복지시책 홍보 등	100	400	△300
지역균형건설국	혁신도시건설 및 건축물 홍보 등	330	350	△20
동해안발전본부	독도 및 해양시대 홍보 등	430	455	△25
도청신도시본부	도청이전 및 신도청시대 홍보 등	1,000	960	40

IX.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X.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XI.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증감조서 및 부기조정 조서 : 별첨

XII.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수정조서

【삭감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43,384,272	29,530,924	△13,853,348	
40	미래전략 기획단	신규전략사업 발굴연구용역	500,000	400,000	△100,000	
41	미래전략 기획단	경북정체성교육 보조교재개발연구	100,000	80,000	△20,000	
48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인터넷 모바일홈페이지 외국어번역	21,000	0	△21,000	
66	기획조정실	도정주요현안사업 등용역(공통)	1,400,000	1,300,000	△100,000	
69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3,300,000	0	△3,300,000	
84	기획조정실	소송관련소액 배상금	50,000	30,000	△20,000	
177	일자리 민생본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7개업체)	10,249,282	9,249,282	△1,000,000	
193	일자리 민생본부	경북해외자문위원 협의회활동지원	100,000	50,000	△50,000	
195	일자리 민생본부	해외상설전시 판매장운영	160,000	80,000	△80,000	
216	여성가족 정책관	경북여성선양사업	220,000	200,000	△20,000	
217	여성가족 정책관	경북여성 창업경진 대회	20,000	0	△20,000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220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기능보강	15,000	0	△15,000	
225	여성가족 정책관	경상북도가족 배드민턴대회지원	18,000	0	△18,000	
235	여성가족 정책관	아동학대예방홍보 사업	10,000	0	△10,000	
268	안전행정국	이주지원비	2,732,400	2,459,400	△273,000	
290	안전행정국	글로벌새마을청년 봉사단운영	150,000	100,000	△50,000	
300	안전행정국	대구신도청간직원 통근버스임차료	2,201,100	1,468,100	△733,000	
304	안전행정국	청사환경조성예술 작품구입(신청사)	300,000	0	△300,000	
339	복지건강국	행복재단운영	1,500,000	1,400,000	△100,000	
348	복지건강국	효문화진흥원건립 지원	340,500	0	△340,500	
349	복지건강국	밥상머리교육	480,000	440,000	△40,000	
349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130,000	100,000	△30,000	
349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 날 관계자워크숍	10,000	0	△10,000	
349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 날 UCC공모전	20,000	0	△20,000	
349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시군)	200,000	165,000	△35,000	
350	복지건강국	노인건강진단	4,050	0	△4,050	
353	복지건강국	거점경로당 프로그램운영	27,000	0	△27,000	
355	복지건강국	시설보호노인효도 관광비지원	43,656	0	△43,656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355	복지건강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352,784	726,392	△626,392	
363	복지건강국	시군장애인인권 종합민원상담센터	391,000	0	△391,000	
366	복지건강국	경북장애인복지 신문	80,000	0	△80,000	
478	문화관광 체육국	경북도립공공도서관 건립(지특도비)	3,000,000	2,500,000	△500,000	
482	문화관광 체육국	실크로드소리길 지원	1,700,000	1,400,000	△300,000	
482	문화관광 체육국	2015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문화의 날 지원	600,000	300,000	△300,000	
507	문화관광 체육국	해외언론매체홍보	500,000	450,000	△50,000	
507	문화관광 체육국	해외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500,000	450,000	△50,000	
551	환경산림 자원국	Post 2015세계 물포럼연구용역	50,000	0	△50,000	
552	환경산림 자원국	세계물포럼도민 참여형프로그램개발	300,000	250,000	△50,000	
566	환경산림 자원국	신청사산불상황실 영상시스템이전설치	400,000	200,000	△200,000	
703	농축산 유통국	농업경영현장 건설팅지원	240,000	200,000	△40,000	
711	농축산 유통국	FTA대응농어업 R&D활성화사업	800,000	700,000	△100,000	
743	농축산 유통국	광역한우브랜드 생축운반비지원	70,000	50,000	△20,000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816	동 해 안 발전본부	신동해안바이오 종주뱅크설립연구	100,000	0	△100,000	
818	동해안 발전본부	신동해안해양수산 한마당	150,000	100,000	△50,000	
913	농업기술원	건물등시설물유지 관리비	70,000	60,000	△10,000	
932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기록장 제작보급	60,000	0	△60,000	
958	농업기술원	활성수이용원에 작물품질향상시범	94,500	47,250	△47,250	
963	농업기술원	농가맛집육성	63,000	31,500	△31,500	
991	농업기술원	분광광도계(1대)	47,000	0	△47,000	
991	농업기술원	HRM분석장비 (1대)	60,000	0	△60,000	
996	농업기술원	무 정 전 전 원 장 치 (UPS)	30,000	14,000	△16,000	
1015	농업기술원	인삼병리실험장비	60,000	30,000	△30,000	
1032	지역균형 건 설 국	도시계획위원회 선진지현장답사	21,000	0	△21,000	
1053	지역균형 건 설 국	건축행정선진화 해외연수	10,000	0	△10,000	
1115	도청신도 시본부	도청이전신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지원	5,000,000	4,500,000	△500,000	
1116	도청신도 시본부	대외통상교류관 부지매입비	3,333,000	0	△3,333,000	

【증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액	비 고
	합 계		0	13,853,348	13,853,348	
-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0	13,853,348	13,853,348	

【부기조정】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쪽	소관 부서	내 용	예 산 액	과 목 명		비고
					당 초	변 경	
감액		소계		△1,916,000			
	290	새마을 봉사과	살기좋은경북 만들기사업	△1,916,000	(단위사업) 새마을시설 기반확충 (세부사업) 살기좋은경북 만들기사업 (통계목) 403-01		
증액		소계		1,916,000			
	1033	도 시 계획과	도시토목사업	536,000		(단위사업) 건설도시환경조성 (세부사업) 도시토목 (통계목)403-01	
	1049	도로 철도 공항과	지역현안도로 사업	200,000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세부사업) 주민숙원도로사업 (통계목)403-01	

구분	쪽	소관 부서	내 용	예 산 액	과 목 명		비고
					당 초	변 경	
	741	농 촌 개발과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00,000		(단위사업) 재해대비수리 시설정비 (세부사업) 주민숙원농업생산 시설기반정비 (통계목)403-01	
	1063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554,000		(단위사업) 친환경적하천 정비추진 (세부사업) 소하천정비 사업비지원 (통계목)403-01	
	354	노인효 복지과	경로당 신증축사업	326,000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확충 (세부사업) 경로당개보수 (통계목)403-01	
	518	체 육 진흥과	시군체육시설 확충	100,000		(단위사업) 체육시설의 지속 적인 확충보강 (세부사업) 시군체육시설확충 (통계목)403-0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1,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14. 11.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2014. 12. 1. 상정·질의·답변)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2014. 12. 11. 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관 김태원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예산편성 방향

-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 주요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사업 투자
- 교육과정 내실화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

V.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

1. 총규모

-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3,784억원보다 1,774억원(5.2%)이
증액된 3조 5,558억원임.

◆ 2015년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15년도(A)	2014년도(B)	증 감	
		금액(A - B)	증감률(%)
3,555,772	3,378,419	177,353	5.2

2. 세입예산

- ☐ 세입예산은 3조 5,558억원으로
- 이전수입은

- 3조 1,48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3조 1,760억원보다 276억원($\Delta 0.9\%$) 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7,81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60억원, 기타이전수입 5억원임.

○ 자체수입은

- 37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431억원보다 59억원($\Delta 13.8\%$)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70억원, 행정활동수입 8억원, 자산수입 10억원, 이자수입 82억원임.

○ 차입은

- 3,27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2%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500억원보다 2,772억원(554.7%) 증액 편성되었고,
- 전액 지방교육채 3,272억원임.

○ 기타는

- 43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1,094억원보다 663억원($\Delta 60.6\%$) 감액 편성되었고,
- 전액 전년도이월금 431억원임.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년 예산안 ¹³⁾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장	관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이전수입	3,148,352	88.5	3,175,995	94.0	△27,643	△0.9
	중앙정부 이전수입	2,781,852	78.2	2,897,974	85.8	△116,122	△4.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5,960	10.3	277,097	8.2	88,863	32.1
	기타이전수입	539	0.0	924	0.0	△385	△41.6
	자체수입	37,133	1.0	43,057	1.3	△5,924	△13.8
	교수·학습 활동수입	27,037	0.8	29,094	0.9	△2,057	△7.1
	행정활동수입	842	0.0	866	0.0	△24	△2.8
	자산수입	1,007	0.0	954	0.0	53	5.5
	이자수입	8,234	0.2	12,143	0.4	△3,909	△32.2
	기타수입	13	0.0	0	0.0	13	순증
	차입	327,181	9.2	49,975	1.5	277,206	554.7
	지방교육채	327,181	9.2	49,975	1.5	277,206	554.7
	기타	43,106	1.2	109,392	3.2	△66,286	△60.6
	전년도이월금	43,106	1.2	109,392	3.2	△66,286	△60.6

13)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3조 5,558억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3조 2,226억원보다 6.3% 증가된 3조 4,25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6.3%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1조 8,201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373억원
• 교육복지지원	3,229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39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8,521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94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51억원보다 13.8% 감소된 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40억원
• 직업교육	4억원

○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1,507억원보다 16.7% 감소된 1,25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함.

• 교육행정일반	289억원
----------	-------

- 기관운영관리 461억원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98억원
- 예비비 및 기타 108억원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¹⁴⁾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유 아 및 초·중·등·교육	3,425,824	96.3	3,222,596	95.4	203,227	6.3
평생·직업 교육	4,406	0.1	5,108	0.2	△703	△13.8
교육 일반	125,543	3.5	150,715	4.5	△25,172	△16.7

14)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 세출예산 부문·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¹⁵⁾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유아 및 초중등교육	3,425,824	96.3	3,222,596	95.4	203,227	6.3
인 적 자 원 운 용	1,820,089	51.2	1,702,578	50.4	117,511	6.9
교 수 - 학 습 원 활 동 지 원	137,326	3.9	166,640	4.9	△29,315	△17.6
교 육 복 지 지 원	322,943	9.1	326,163	9.7	△3,220	△1.0
보 건 / 급 식 / 동 체 육 활 동	13,929	0.4	17,232	0.5	△3,304	△19.2
학 교 재 정 관 리 지 원	852,118	24.0	840,074	24.9	12,044	1.4
학 교 교 육 여 건 설 개 선 시 설	279,420	7.9	169,909	5.0	109,511	64.5
평생·직업교육	4,406	0.1	5,108	0.2	△703	△13.8
평 생 교 육	3,995	0.1	4,650	0.1	△655	△14.1
직 업 교 육	411	0.0	458	0.0	△48	△10.4
교육일반	125,543	3.5	150,715	4.5	△25,172	△16.7
교 육 행 정 일 반	28,892	0.8	38,047	1.1	△9,155	△24.1
기 관 운 영 관 리	46,126	1.3	62,296	1.8	△16,169	△26.0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39,762	1.1	37,170	1.1	2,591	7.0
예 비 비 및 타 기	10,763	0.3	13,202	0.4	△2,439	△18.5

15)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본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4,397억원보다 3.7% 증가한 2조 5,2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1.1%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원보다 6.8% 감소한 2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3개 교육지원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37억원보다 9.7% 증가한 1조 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2015년 예산안 ¹⁶⁾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본 청	2,529,714	71.1	2,439,655	72.2	90,059	3.7
직속기관	23,315	0.7	25,029	0.7	△1,713	△6.8
교육지원청	1,002,743	28.2	913,735	27.0	89,007	9.7
포항교육지원청	185,632	5.2	159,998	4.7	25,634	16.0
경주교육지원청	76,128	2.1	72,768	2.2	3,360	4.6
김천교육지원청	64,643	1.8	52,942	1.6	11,701	22.1
안동교육지원청	65,794	1.9	60,698	1.8	5,095	8.4
구미교육지원청	137,281	3.9	134,486	4.0	2,795	2.1
영주교육지원청	48,473	1.4	40,951	1.2	7,522	18.4
영천교육지원청	43,450	1.2	35,070	1.0	8,381	23.9
상주교육지원청	37,491	1.1	40,388	1.2	△2,897	△7.2
문경교육지원청	20,531	0.6	28,971	0.9	△8,440	△29.1
경산교육지원청	109,481	3.1	77,854	2.3	31,628	40.6
군위교육지원청	5,448	0.2	6,343	0.2	△895	△14.1
의성교육지원청	31,517	0.9	19,699	0.6	11,818	60.0
청송교육지원청	9,911	0.3	10,892	0.3	△981	△9.0
영양교육지원청	6,886	0.2	7,640	0.2	△754	△9.9
영덕교육지원청	10,020	0.3	21,391	0.6	△11,371	△53.2
청도교육지원청	14,837	0.4	16,203	0.5	△1,365	△8.4
고령교육지원청	10,933	0.3	17,813	0.5	△6,879	△38.6
성주교육지원청	13,833	0.4	14,786	0.4	△952	△6.4
칠곡교육지원청	46,947	1.3	49,385	1.5	△2,438	△4.9
예천교육지원청	13,034	0.4	13,418	0.4	△385	△2.9
봉화교육지원청	19,617	0.6	11,257	0.3	8,360	74.3
울진교육지원청	13,982	0.4	15,927	0.5	△1,945	△12.2
울릉교육지원청	16,873	0.5	4,857	0.1	12,016	247.4

16)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은

- 인건비는 1조 4,684억원(41.3%)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0억원(5.7%) 증액됨.
- 물건비는 1,235억원(3.5%)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원(△6.8%) 감액됨.
- 이전지출은 3,770억원(10.6%)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1억원(13.2%) 증액됨.
- 자산취득은 3,394억원(9.5%)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억원(36.1%) 증액됨.
- 상환지출은 339억원(1.0%)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원(6.6%) 증액됨.
- 전출금 등은 1조 2,027억원(33.8%)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억원(△2.1%) 감액됨.
- 예비비 및 기타는 108억원(0.3%)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원(△18.5%) 감액됨.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증감(전년대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 전 지 출	자 산 취 득	상 환 지 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3,555,772 177,353	1,468,434 78,993	123,512 △9,028	377,020 44,084	339,414 89,968	33,940 2,112	1,202,679 △26,337	10,773 △2,439
인적자원운용	1,820,089 117,511	1,459,013 78,407	48,711 △1,793	308,931 43,565	41 △2,499	- -	3,382 △170	10 0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137,326 △29,315	8,281 216	33,774 △5,565	7,543 △878	5,116 △2,709	- -	82,612 △20,379	- -
교육복지지원	322,943 △3,220	339 △3	680 △3,064	56,549 1,635	37,999 △3,706	- -	227,375 1,918	- -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13,929 △3,304	- △2	2,746 △246	1,330 3	2,533 102	- -	7,320 △3,161	- -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852,118 12,044	- -	- -	- -	- -	- -	852,118 12,044	- -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279,420 109,511	- -	1,148 1,148	- -	253,178 112,079	- -	25,094 △3,716	- -
평 생 교 육	3,995 △655	92 △65	2,266 △211	709 32	887 △392	- -	42 △19	- -
직 업 교 육	411 △48	- -	45 △17	- -	- -	- -	365 △30	- -
교육행정일반	28,892 △9,155	93 △44	12,301 △250	1,868 △340	10,308 4,304	- -	4,321 △12,824	- -
기관운영관리	46,126 △16,169	616 485	16,018 492	89 66	29,353 △17,212	- -	50 0	- -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39,762 2,591	- -	5,822 480	- -	- -	33,940 2,112	- -	- -
예 비 비 및 기 타	10,763 △2,439	- -	- -	- -	- -	- -	- -	10,763 △2,439

4. 계속비사업 조서

□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 총 17건(학교신축 16, 본청청사 신축 1)으로 사업비 총액은 3,560억원이며, 2015년도 계획액은 1,526억원임.

◆ 201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총액	전전연도 이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356,026	21,700	5,550	16,150
신규	학교신축 (8개교)	165,104	-	-	-
기존	학교신축 (8개교)	139,472	-	-	-
기존	본청 청사 신축	51,450	21,700	5,550	16,150

구분	사업명	전 년 도			계 획 액		
		예 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2016년	2017년
	계	41,511	9,709	31,801	152,593	126,695	13,527
신규	학교신축 (8개교)	685	-	685	42,511	108,382	13,527
기존	학교신축 (8개교)	21,526	1,149	20,377	99,632	18,313	-
기존	본청 청사 신축	19,300	8,560	10,740	10,450	-	-

5.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 계획액은

- 학교 46개교 건립에 따른 사업비 311억원이며, 2005~2010년 교육시설 BTL¹⁷⁾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임.

◆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단위 : 백만원)

학교수	협약금액	20년간 지급예정액		
		임 대 료	운 영 비	합 계
46개교	296,249	547,915	139,788	687,704

학교수	상 환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	2016~ 2033년	2034년	2035년	계
46개교	158,828	31,091	494,375	3,155	254	687,704

7. 명시이월사업 조서 : 해당없음

17)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20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

8. 지방교육채 조서

□ 2015년도 지방교육채는 총 7,312억원으로

- 2015년도 상환계획은 교육채 발행에 따른 이자 185억원
이며, 원금은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
환할 예정임.

◆ 2015년도 지방교육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이율	기 채 선	기채액	전 년 도 상 환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원 금	이 자	계
합 계					731,202	156,330	10,452	166,782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9	2024	4.85	한국 은행	156,327	156,330	9,784	166,113
금융채	2014	2018	3.73	농협	21,313	-	669	669
금융채	2014	2029	4.09	농협	67,113	-	-	-
금융채	2014	2029	3.18	금융 기관	159,269	-	-	-
금융채	2015	2030	3.01	금융 기관	327,181	-	-	-

구 분	당해연도상환계획			금후계획	기 채 사 유
	원 금	이 자	계		
합 계	-	18,453	18,453	574,875	
공공자금 관리기금	-	-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금융채	-	795	795	21,313	2013 학교신설
금융채	-	2,745	2,745	67,113	2014 학교신설
금융채	-	5,065	5,065	159,269	2009 공공자금관리 기금 차환
금융채	-	9,848	9,848	327,181	2015 학교신설, 교육 환경개선 및 교원명예 퇴직

VI. 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개요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은 공무원복지기금,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2종으로 「지방자치법」 및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것임.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 현황 ◆

기 금 명	설치 연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비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2010 년	주거안정을 통한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무정보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 기금	2013 년	통합학교와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장기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통폐 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2. 기금조성 현황

- 2015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572억원에 수입 418억원과 지출 111억원을 가감하면 879억원이며,
- 기금조성 총규모는 융자금미회수채권 86억원을 합하여 965억원임.

◆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e=d-a)	기금 총 조성규모	
		수입(b)	지출(c)			융자금 미회수채권 (f)	총 조성규모 (g=d+f)
합 계	57,214	41,823	11,122	87,915	30,701	8,587	96,501
공 무 원 복 지 기 금	4,388	3,112	4,000	3,500	△888	8,587	12,087
통 폐 합 학 교 지 원 기 금	52,825	38,711	7,122	84,414	31,589	0	84,414

3. 기금운용계획

- 공무원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75억원의 기금 수입 중 40억원을 교직원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지출하고 35억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임.
-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915억원의 기금 수입 중 71억원을 통폐합학교에 지원하고 844억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임.

◆ 기금운용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 자성 사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합 계	99,037	37,000	3,000	57,214	1,821	2	99,037	7,112	4,000	10	87,915
공 무 원 복지기금	7,500	0	3,000	4,388	110	2	7,500	0	4,000	0	3,500
통 폐 합 학 교 지원기금	91,536	37,000	0	52,825	1,711	0	91,536	7,112	0	10	84,414

VII. 종합 검토의견

1. 2015년 예산안 총규모 및 재정전망

□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3,784억원보다 1,774억원(5.2%) 증액된 3조 5,558억원임.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2,847,026	3,130,688	3,331,240	3,378,419	3,555,772
증감액	173,269	283,662	200,552	47,179	177,353
증 감 (전년대비)	6.5%	10.0%	6.4%	1.4%	5.2%

□ 세입전망

-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 교부금 정산에 따라 전년대비 4.0% 감소하고, 도세전입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수업료·이자수입 감소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교부금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전망

- 학교신설, 본청청사 신축, 노후학교시설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투자수요 증가와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인상·교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라 인건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만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지방교육재정 이관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2. 세입부문

-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지방교육채), 기타(전년도이월금)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세입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또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이월금은 이월액 감소방안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감소함.

- 이전수입은 3조 1,484억원(88.5%)으로 전년대비 276억원(△0.9%) 감액되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조 7,819억원(78.2%)이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161억원(△4.0%) 감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660억원(10.3%)이며, 전년대비 889억원(32.1%)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442억원(6.9%)이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교육세 본세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92억원(13.6%) 증액됨.
- 시도세전입금은 387억원(1.1%)이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0억원(11.4%) 증액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86억원(0.2%)이며,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학교신설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1억원(32.8%) 증액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¹⁸⁾은 576억원(1.6%)이며, 전액 순증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감액은 지자체 대응사업의 보조금 전입의 감소에 따른 것임.
-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감액은 기관·협회·단체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것임.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지방세법 개정(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취득세 등의 보전분)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안분비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출

◆ 이전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년		전 년 도		증 감	
관	항	목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 액 (A-B)	증감률
총예산액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이전수입 합계			3,148,352	88.5	3,175,995	94.0	△27,643	△0.9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2,781,852	78.2	2,897,974	85.8	△116,122	△4.0
지방자치 단체이전 수입	소 계		365,960	10.3	277,097	8.2	88,863	32.1
	법정이전 수입	지 방 교 육 전 입 금	244,200	6.9	215,000	6.4	29,200	13.6
		시 도 전 입 금	38,664	1.1	34,700	1.0	3,964	11.4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 담 금	8,633	0.2	6,499	0.2	2,134	32.8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 전 금	57,626	1.6	0	0.0	57,626	순증
	비 법 정 이전수입	광 역 자 치 단 체 전 입 금	758	0.0	734	0.0	24	3.3
		기 초 자 치 단 체 전 입 금	16,080	0.5	20,164	0.6	△4,084	△20.3
기타 이전수입	민간이전 수입	기 타 지 원 금	539	0.0	924	0.0	△385	△41.6

○ 학교용지부담금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5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이 2000년도에 보완되고 부과·징수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법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미전입액이 크게 발생함.
- 이후 경북도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경북도에서 전입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73억원 중 399억원이 전입(84.2%)되고 74억원이 미전입금으로 남아 있으나 전년도 115억원(25.3%) 대비 대폭 감소한 것임.
-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 나머지 미전입금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학교용지매입비 규모			경상북도 미전입 현황('14.10.31)			
	학교수 (개)	면적(㎡)	매입비 총 액	부담액 (A)	전입액 (B)	미전입액 (A-B)	전입률 (B/A)
계	28	407,169.2	94,622	47,304	39,862	7,442	84.2
'00~'09	20	285,337.6	68,078	34,035	0	34,035	
2010	3	50,526.6	17,366	8,682	921	7,761	
2011	1	11,994	1,080	540	941	△401	
2012	1	16,000	2,115	1,057	4,644	△3,587	
2013	1	15,175	2,065	1,032	4,978	△3,946	
2014	2	28,136	3,918	1,958	28,378	△26,420	

○ 자체수입은 총 371억원(1.0%)으로 전년대비 59억원
(△13.8%) 감액되었음.

- 학생수 감소 및 학비 감면범위 확대 등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1억원 감액되고,
- 금리 하락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이자수입¹⁹⁾이 39억원 감액됨.

19) 최근 5년간 이자수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당 초	2회추경	1회추경	당 초	결 산	당 초	결 산	당 초	결 산	당 초
8,233	8,465	12,149	12,142	17,920	12,100	16,665	12,098	14,579	10,097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년		전 년 도		증 감	
관	항	목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 액 (A-B)	증감률
총예산액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자체수입 합계			37,133	1.0	43,057	1.3	△5,924	△13.8
교수- 수업 활동 수입	소 계		27,037	0.8	29,094	0.9	△2,057	△7.1
	기본 교육수입	입 학금	145	0.0	177	0.0	△32	△18.0
		수업료	26,726	0.8	28,314	0.9	△1,588	△5.6
	선택 교육수입	기숙사 및 급식	167	0.0	604	0.0	△437	△72.4
행정 활동 수입	소 계		842	0.0	866	0.0	△24	△2.8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사 용료 수 입	666	0.0	644	0.0	22	3.4
		수 수료 수 입	176	0.0	222	0.0	△46	△20.6
자산 수입	자산임 대수입	임대료 수입	1,007	0.0	954	0.0	53	5.5
이자 수입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8,234	0.2	12,143	0.4	△3,909	△32.2
기타 수입	소 계		13	0.0	0	0.0	13	순증
	기타수입	그와수입	1	0.0	0	0.0	1	순증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12	0.0	0	0.0	12	순증

○ 지방교육채 3,272억원은

-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한 2013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시에는 학교 신·증설, 통·폐합 증·개축비, 유치원 신·증설비, 교원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비 등 일부가 지방교육채를 포함하여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재원들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추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채 발행 후에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자체 부담은 없음.

◆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사업량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정교부내역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	지방교육채 발행(융자) 조건	
				기 간	상환부담
합 계		327,181	327,18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학 교 신 증 설	9개교	83,301	83,301		
통 폐 합 증 · 개 축	6개교	69,311	69,311		
유치원신증설	3개원	422	422		
교원명예퇴직	-	70,326	70,326		
교육환경개선	-	103,820	103,820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431억원으로

- 전년대비 663억원(△60.6%) 감액되었음.
- 이는 2014년도 결산 추계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계 ◆

(단위 : 백만원)

세입전망			세출전망			세계잉여금(②-④)			
예산현액 (①)	수납전망액 (②)	수납률 (②/①)	예산현액 (③)	집행추정액 (④)	불용추정액 (⑤=②-④)	다음연도 이월금추 정액(⑥)	국고보조 금반납추 정액(⑦)	순세계잉 여금추정 액(⑧)	계 (⑨)
3,774,771	3,774,644	99.9	3,777,696	3,564,245	210,399	167,292	-	43,106	210,399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익년도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예산반영 현황(최근 5년) ◆

(단위 : 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반영						
결산 연도	금액(A+B+C)		예산 연도	본예산(A)		추경1회(B)		추경2회(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4	미정		2015	43,106					
2013	99,419	100.0	2014	109,392	110.0	△9,973	△10.0		
2012	188,245	100.0	2013	170,006	90.3	18,240	9.7		
2011	250,350	100.0	2012	115,052	46.0	135,298	54.0		
2010	146,323	100.0	2011	43,555	29.8	101,343	69.3	1,425	1.0

3. 세출부문

○ 세출예산항목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지방채 및 BTL 상환, 예비비로 구분되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5,558억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원(5.2%)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학교)운영비, 지방채 및 BTL 상환이 총예산의 76.1%(2조 7,078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교육청 자체의 시책 및 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임.

- 인건비는 2조 2,024억원(61.9%)으로 기본급 3.8% 인상과 이에 따른 공무원법정부담금 증액, 교직원 명예 퇴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94억원(6.8%) 증액됨.
- 경상비는 4,656억원(13.1%)으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별 기관운영비와 학교별 학교운영비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57억원(△1.2%) 감액되었음. 이 중 기관 운영비는 5억원(3.4%)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는 62억원(△1.4%) 감액됨.
- 사업비는 8,372억원(23.5%)으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434억원(5.5%) 증액되었음. 이 중 교육사업비는 494억원(△8.6%) 감액되었고, 시설사업비는 928억원(42.8%) 증액됨.
- 지방채 및 BTL 상환은 398억원(1.1%)으로 이자지급 대상 지방교육채 증가, 민간투자사업 상환 대상학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6억원(7.0%) 증액됨.
- 예비비는 108억원(0.3%)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로 인한 비용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4억원(△18.5%) 감액됨.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A)		전년도 본예산(B)		증 감		
		금 액	비율 (%)	금 액	비율 (%)	금액(A-B)	비율 (%)	
합 계		3,555,772	100.0	3,378,419	100.0	177,353	5.2	
인건비	계	2,202,416	61.9	2,062,980	61.1	139,436	6.8	
	공립	1,800,285	50.6	1,679,083	49.7	121,202	7.2	
	사립	402,131	11.3	383,896	11.4	18,234	4.7	
경상비	계	465,613	13.1	471,290	13.9	△5,677	△1.2	
	기관운영비		15,627	0.4	15,113	0.4	513	3.4
	학교 운영비	소계	449,987	12.7	456,177	13.5	△6,190	△1.4
		공립	362,749	10.2	366,587	10.8	△3,838	△1.0
		사립	87,238	2.5	89,590	2.7	△2,352	△2.6
사업비	계	837,219	23.5	793,777	23.5	43,442	5.5	
	교육사업비	527,298	14.8	576,685	17.1	△49,387	△8.6	
	시설사업비	309,920	8.7	217,092	6.4	92,828	42.8	
지방채 및 BTL 상환		39,762	1.1	37,170	1.1	2,591	7.0	
예비비		10,763	0.3	13,202	0.4	△2,439	△18.5	

○ 인건비를 살펴보면,

- 2015년도 공·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4억원(6.8%)이 증액편성된 2조 2,024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기본급 3.8% 인상 및 이에 따른 공무원 법정부담금 인상, 명예퇴직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 대상인원 확대 등에 따라 공립 정규직 인건비 1,143억원(7.1%), 공립 비정규직 인건비 69억원(11.4%), 사립 인건비 182억원(4.7%)이 각각 증액됨.
- 계약제 교원은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대체 교원으로서, 기본급 인상 및 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65억원(12.9%) 증액됨.

◆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비교증감		비 고	
				금 액 (A-B)	비 율 (%)		
합 계		2,202,416	2,062,980	139,436	6.8		
공 립	계		1,800,285	1,679,083	121,202	7.2	
	정규직인건비		1,732,202	1,617,942	114,260	7.1	
	교 원 인 건 비	소 계	1,393,554	1,302,264	91,290	7.0	
		보 수	1,104,736	1,062,294	42,442	4.0	기본급 3.8% 인상
		법정부담금 등	288,817	239,969	48,848	20.4	
	지 방 공 무 원 인 건 비	소 계	299,832	279,498	20,334	7.3	
		보 수	241,225	229,234	11,991	5.2	기본급 3.8% 인상
		법정부담금 등	58,607	50,264	8,343	16.6	

구 분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비교증감		비 고
					금 액 (A-B)	비 율 (%)	
교육 전문직원 인건비	소 계		38,816	36,181	2,635	7.3	
	보 수		32,102	29,945	2,157	7.2	기본급 3.8% 인상
	법정부담금 등		6,715	6,236	479	7.7	
	비정규직인건비		68,083	61,141	6,942	11.4	
	소 계		57,308	50,781	6,527	12.9	
	보 수		49,035	46,195	2,840	6.1	기본급 3.8% 인상, 인원증가
	법정부담금 등		8,273	4,586	3,687	80.4	
	소 계		10,775	10,360	415	4.0	
	보 수		8,433	8,380	53	0.6	
	법정부담금 등		1,331	882	449	50.9	
사 립	장애훈육 인건비		1,011	1,097	△87	△7.9	
	계		402,131	383,896	18,234	4.7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402,131	383,896	18,234	4.7	기본급 3.8% 인상

○ 경상비를 살펴보면,

- 경상비는 4,656억원(13.1%)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7억원(△1.2%) 감소하였으며,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운영비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156억원(0.4%)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억원(3.4%) 증액되었음.

- 학교운영비는 도내 공·사립 1,477개교의 학교기본운영비와 시급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기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500억원(12.7%)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2억원(△1.4%) 감액되었음.

◆ 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관수	2015년 예산안(A)	2014년 본예산(B)	비 교 증 감		비 고
					금액(A-B)	비율	
계		1,511	465,613	471,290	△5,677	△1.2	
기관 운영 비	소계	34	15,627	15,113	513	3.4	
	본청	1	2,928	2,304	625	27.1	
	직속기관	10	4,170	3,983	186	4.7	
	교육지원청	23	8,529	8,827	△298	3.4	
학교 운영 비	소계	1,477	449,987	456,177	△6,190	△1.4	
	공립학교	1,308	362,749	366,587	△3,838	△1.0	
	사립학교	169	87,238	89,590	△2,352	△2.6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 사업비를 살펴보면,

- 사업비는 8,372억원(23.5%)으로 전년대비 434억원(5.5%) 증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성됨.
- 교육사업비는 5,273억원(14.8%)으로, 전년대비 494억원(△8.6%)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 운용, 보건·급식·체육활동, 평생·직업 교육, 교육복지지원,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구성됨.

- 주요 감액사업은

특성화고학과개편(△22억원), 다문화교육(△10억원), 교과교실제추진지원(△83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33억원), 학내전산망구축 및 관리(△17억원), 사립유치원종일제운영(△11억원), 학교폭력예방지원(△12억원), 진로교육사업(△12억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17억원), 방과후학교활성화운영지원(△26억원), 농산어촌학생급식비지원(△21억원), 통폐합학교지원(△44억원), 4세교육비지원(△56억원), 5세교육비지원(△85억원), 교육감선거관리(△125억원) 등임.

- 주요 증액사업은

스포츠강사인건비(14억원),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38억원),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13억원),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10억원), 학교성폭력예방 CCTV 설치(11억원), 산업교육활성화장학금지원(22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20억원), 학기중중식지원(19억원),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34억원), 3세교육비지원(154억원), 관제시스템운영(10억원), 정보화장비유지관리(37억원) 등임.

◆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 산 안 (A)	2014년 본 예 산 (B)	비 교 증 감		비 고
			금 액 (A-B)	비 율 (%)	
합 계	527,298	576,685	△49,387	△8.6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56,400	73,742	△17,432	△23.6	독서교육, 학력향상 등
과 학 · 외국어·정보화	27,007	36,050	△9,043	△25.1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 교육학내전산망 구축 등
유 아 · 특 수 교 육	33,538	34,237	△700	△2.0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생활·진로· 상 답 지 도	20,381	22,611	△2,230	△9.9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로진학 등
인 적 자 원 운 용	19,804	23,495	△3,691	△15.7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관리, 교직원복지, 교직원단체 관리 등
보건·급식· 체 육 활 동	13,929	17,232	△3,304	△19.2	보건, 급식관리, 체육대회 등
평 생 · 직 업 교 육	4,406	5,108	△703	△13.8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 육 복 지 지 원	322,943	326,163	△3,220	△1.0	학비지원, 급식지원,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교과서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등
교 육 행 정 일 반	28,892	38,047	△9,155	△24.1	교육행정정보화, 선거경비 등 교육행정일반

-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교육복지사업은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8개 복지사업에 3,229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교육사업비의 61.2%를 차지하고 있음.

- 8개 복지사업에서 대상학생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32억원이 감소했지만, 누리과정지원(13억), 방과후 등 교육지원 중 초등돌봄교실운영(20억), 급식지원 중 학기중중식지원(20억), 학비지원(20억) 등이 증가하였음.

◆ 교육복지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비 교 증 감		비 고
				금 액 (A-B)	비 율 (%)	
전체예산		3,555,772	3,378,419	177,353	5.2	
교육사업비 합계		527,298	576,685	△49,387	△8.6	
8 개 사 업	소 계	322,943	326,163	△3,220	△1.0	
	누 리 과 정 지 원	164,715	163,452	1,263	0.8	70,550명 - 유치원 39,559명 - 어린이집 30,991명
	급 식 지 원	53,096	53,639	△543	△1.0	대상 학생수 감소
	방 과 후 등 교 육 지 원	46,584	49,683	△3,099	△6.2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43,029	44,853	△1,824	△4.1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6,678	7,264	△586	△8.1	
	학 비 지 원	5,739	3,785	1,954	51.6	대상 학생수 증가
	정 보 화 지 원	3,074	3,459	△385	△11.1	대상 학생수 감소
	교 과 서 지 원	27	27	0	0.0	
기타교육사업		204,356	250,523	△46,167	△18.4	

- 시설사업비는 3,099억원(8.7%)으로, 전년대비 928억원(42.8%) 증액되었으며, 학교 신·증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으로 구성됨.
- '학교 신·증설' 사업은 1,654억원으로, 학교신설은 23개교(유 5, 초 8, 중 9, 고 1)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1,624억원이 계상되었고, 교실증축은 4개교(유 2, 초 2)에 대하여 건설비 2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용지매입은 4개교(초 2, 고 2)에 대하여 7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050억원(173.8%) 증액 편성됨.
- '학교일반시설' 사업은 1,140억원으로, 학교시설증·개축은 다목적강당, 급식소, 생활관 등의 보수, 증·개축에 315억원이 계상되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교사 개축·방수, 외벽개선, 창문개체 등 기타 개선에 826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5억원(4.1%) 증액편성됨.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305억원으로,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청사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67억원(△35.4%) 감액편성됨.

◆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비 교 증 감		비 고
				금 액 (A-B)	비 율 (%)	
합 계		309,920	217,092	92,828	42.8	
학교 신증설	소 계	165,377	60,407	104,970	173.8	
	학 교 신 설	162,438	49,392	113,047	228.9	학교신설 추진 : 23개교 - 유 5, 초 8, 중 9, 고 1
	교 실 증 축	2,209	9,050	△6,841	△75.6	교실증축 : 4개교 - 유 2, 초 2
	학 교 용 지 매 입	729	1,965	△1,236	△62.9	용지매입 : 4개교 - 초 2, 고 2
학교 일반 시설	소 계	114,044	109,503	4,541	4.1	
	학 교 시 설 증 개 축	31,475	39,287	△7,812	△19.9	노후교실 개축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82,569	70,215	12,354	17.6	노후교실 개선
교육 행정 기관 시설	소 계	30,500	47,182	△16,683	△35.4	
	본 청 시 설 관 리	12,502	25,300	△12,798	△50.6	청사시설유지보수비 등
	교육지원청 시 설 관 리	9,620	19,648	△10,028	△51.0	23개 교육지원청 시설유지보수
	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8,378	2,234	6,143	275.0	10개 직속기관 시설유지보수

○ 교·직원 명예퇴직 예산과 관련하여,

- 2015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은 604명분 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66억원(80.1%) 증액편성된 것이나, 명예퇴직 수요인원인 1,079명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56.0%)임.

◆ 교·직원 명예퇴직 수요 및 예산편성인원 ◆

(단위 : 명)

구 분		2015년 본예산안			2014년 본예산			비고
		명퇴 수요	예산편성 인원	비율 (%)	명퇴 수요	예산편성 인원	비율 (%)	
합 계		1,079	604	56.0	435	356	81.8	
공립	계	901	517	57.4	311	255	82.0	
	교원	761	377	49.5	275	229	83.3	
	일반	140	140	100.0	36	26	72.2	
사립	계	178	87	48.9	124	101	81.5	
	교원	172	81	47.1	118	95	80.5	
	일반	6	6	100.0	6	6	100.0	

-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퇴교원의 기간제교사로의 재취업은 교단 안정이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비효율적 예산 운용사례이므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직원 명예퇴직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A)	2014년 본예산(B)	비 교 증 감		비 고
					금액 (A-B)	비율 (%)	
합 계			82,319	45,718	36,601	80.1	
공립	계		75,782	38,103	37,679	98.9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 담 금 ²⁰⁾	29,598	17,298	12,301	71.1	
		명예퇴직수당	30,672	17,925	12,747	71.1	
	일반	명예퇴직수당 부 담 금	8,512	1,581	6,931	438.5	
		명예퇴직수당	7,000	1,300	5,700	438.5	
사립	계		6,537	7,615	△1,078	△14.2	
	교원	명예퇴직수당	6,237	7,315	△1,078	△14.7	
	일반	명예퇴직수당	300	300	0	0	

○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부족 관련

-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만 3~5세)의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동질의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아의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과정임.

20)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은 공립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대비 2011~2013년도 평균 비율 적용하여 추정액임(공립교원 96.5%, 일반직 121.6%).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 현황 ◆

구 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계	11만원/월	29만원/월	29만원/월	
교육비	6만원/월	22만원/월	22만원/월	
방과후과정반비	5만원/월	7만원/월	7만원/월	

- 누리과정사업의 예산부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가 개정('11. 9. 30)²¹⁾ 됨에 따라 2012년부터 어린이집 만 5세아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어린이집 만 3~5세아 전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었음.

◆ 연도별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부담 현황 ◆

(단위 : 백만원)

재원부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도 교육청	유치원	만 3~5세아 전원			
	어린이집	만 5세아 전원	만 5세아 전원 만 3,4세아 30%	만 4, 5세아 전원 만 3세아 30%	만 3~5세아 전원
지 원 액		52,408 [유 34,534/ 어 17,874]	132,775 [유 87,129/ 어 45,646]	179,124 [유 113,037/ 어 66,087]	217,193 [유 111,880/ 어 105,313]
도청	어린이집	없음	만 3, 4세아 70%	만 3세아 70%	없음
지 원 액		0	52,800	32,500	0
총지원액		52,408	185,575	211,624	217,193

21)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제22조제1항제1호 →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 지원대상이 현재 만 3세아 30%에서 만 3세아 전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총 소요액은 2,1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1,161억원 감액 교부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1,645억원(75.8%)만 편성하여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5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²²⁾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명)	2015년 총소요 예산액(A)	2015년 예산안 (B)	전년도 예산액 (C)	증 감	
					소요액 대비 (B-A)	편성률 (B/A)
계	70,550	217,193	164,537	163,301	△52,657	75.8%
유 치 원	39,559	111,880	111,880	109,957	0	100.0%
어린이집	30,991	105,313	52,656	53,344	△52,657	5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추이(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부액	2,537,291	2,737,069	2,832,894	2,897,974	2,781,852
증감액	174,360	199,778	95,825	65,080	△116,122
증감률 (전년대비)	7.4%	7.9%	3.5%	2.3%	△4.0%

22) 비교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 중 '누리과정운영비' 178백만원을 뺀 금액임.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보육료 국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27% → 25.27%)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여 부족한 6개월분의 예산(527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무상급식지원 예산 관련

- 무상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억원(2.0%)이 증액된 775억원이 편성됨.
- 전체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했으나 급식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아울러 '시군청자체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무상급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대상의 '학기중중식지원'이 대폭 감소함.

◆ 무상급식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5년		전 년 도		증 감		
	인 원	예산안	인 원	예산액	인 원	금 액	비 율
합 계	163,977	77,517	167,648	76,005	△3,671	1,511	2.0%
소 규 모 학 교 급 식 비 지 원	16,212	7,103	16,220	6,800	△8	303	4.5%
농 산 어 촌 학 생 급 식 비 지 원	51,802	24,302	51,957	23,378	△155	924	4.0%
학 기 중 중 식 지 원	56,477	28,347	63,810	30,619	△7,333	△2,272	△7.4%
시 군 청 자 체 지 원	39,486	17,764	35,661	15,208	3,825	2,556	16.8%

- 또한, 최근 5년간 무상급식예산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학생수, 예산액 모두 2배 정도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는 40%대로 증가하다가 2014년, 2015년에는 2% 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무상급식예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학생수	85,353	122,907	161,756	167,648	163,977
예 산 액	35,858	52,824	74,434	76,005	77,517
전년대비 증감	금액	11,215	16,966	21,610	1,571
	비율	45.5%	47.3%	40.9%	2.1%

- 한편, 2015년 무상급식예산의 분담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61.4%), 도(6.3%), 시군(32.3%)이며, 특히 '시군청 자체지원'이 전년대비 16.8% 증가함.

◆ 2015년도 무상급식예산 분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예산 분담 내역			비 고
		교 육 청	도	시 군	
합 계	77,517	47,602 (61.4%)	4,860 (6.3%)	25,054 (32.3%)	
소 규 모 학 교 급 식 비 지 원	7,103	7,103 (100%)	-	-	
농 산 어 촌 학 생 급 식 비 지 원	24,302	12,151 (50%)	4,860 (20%)	7,290 (30%)	
학기중 중식지원	28,347	28,347 (100%)	-	-	
시군청 자체지원	17,764	-	-	17,764 (100%)	

- 무상급식은 현재 임의규정인 「학교급식법」의 무상급식 조항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소한의 무상급식을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무상급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명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 ◆

(‘14. 1월 기준, 천명, 억원)

시도	지 원 대 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비율)	재 원 부 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합 계		6,439	4,450 (69.1%)	16,132 (59.1%)	11,184 (4,407) (40.9%)	27,316 (100%)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1,108	794 (71.6%)	2,975	2,428 (1,428)	5,403
부산	공립초 1~6학년 및 기장군 중1~3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 25% 이하)	377	209 (55.4%)	756	244 (232)	1,000
대구	400명 이하 및 먼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중 최저생계비 340% 이하, 고 260% 이하)	319	145 (45.5%)	510	121 (121)	631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59	193 (53.8%)	465	514 (294)	979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29	172 (75.1%)	620	431 (379)	1,051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0	112 (53.4%)	195	313 (235)	508

시도	지 원 대 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비율)	재 원 부 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울산	울주군 초, 도시지역 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 5.6학년, 사회통합전형대상 무 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 이하)	157	57 (36.3%)	205	60 (25)	265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 득층	21	16 (77.7%)	51	51 (51)	102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 득층	1,659	1,296 (79.4%)	4,789	3,250 (0)	8,039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 등 일부) + 저소득층	190	156 (82.1%)	716	372 (183)	1,088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 득층	201	157 (78.1%)	536	467 (187)	1,003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 득층	266	209 (78.6%)	596	747 (299)	1,343
전북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 비 130% 이하)	251	210 (83.7%)	707	427 (191)	1,134
전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 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 상급식) + 저소득층	239	202 (84.5%)	899	539 (265)	1,438
경북	100명 미만 초 및 읍면 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40% 이하)	319	167 (52.5%)	491	269 (47)	760
경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 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 비 130% 이하) * 80%	450	300 (66.6%)	1,442	802 (321)	2,244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 득층	84	73 (86.9%)	179	149 (149)	328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²³⁾ 납부방안 마련

- 2013년 도내 사학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²⁴⁾은 총 225억원이나 이 중 15.3%인 34억원만 납부²⁵⁾되었으며, 이는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써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2012년 납부실적 17.8%에 비하여 오히려 2.5% 감소한 것으로 전국평균인 21.5%보다 상당히 저조함. 이러한 사례발생 원인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의 증가, 법인의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하락 등이 있으나, 대부분 법인에서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액을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학법인의 재산 수익증대 방안 마련과 함께 미납부 시 국가사업 지정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2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시 부족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됨.

24)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2013년) : 경북(15.3%), 최고⇒서울(35.2%), 최저⇒경남(10.8%)

25) 도내 174개 사립학교 중 전액 납부학교가 10개교, 전액 미납학교가 1개교임.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별 학교수 ◆

(단위 : 교, %)

연 도	전 체 학교수	0%		5% 미만		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부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13	174	1	0.6	101	58.0	62	35.6	10	5.7
2012	175	6	3.4	94	54.0	63	36.2	12	6.9
2011	175	8	4.6	91	52.3	65	37.4	11	6.3

◆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법 정 부담금	실 제 납부액	법 인 부담비율	법 정 부담금	실 제 납부액	법 인 부담비율	법 정 부담금	실 제 납부액	법 인 부담비율
계	291,463	62,778	21.5%	283,855	63,909	22.5%	272,860	61,215	22.4%
서울	74,297	26,159	35.2%	73,946	27,153	36.7%	70,621	25,882	36.6%
부산	24,312	2,734	11.2%	24,061	2,367	9.8%	23,058	2,504	10.9%
대구	19,071	3,070	16.1%	18,042	2,904	16.1%	17,906	2,621	14.6%
인천	8,493	2,138	25.2%	8,769	2,259	25.8%	8,298	2,149	25.9%
광주	13,931	2,637	18.9%	13,940	2,893	20.8%	13,669	2,852	20.9%
대전	8,920	1,348	15.1%	8,854	1,157	13.1%	8,479	1,119	13.2%
울산	3,855	1,052	27.3%	3,488	948	27.2%	3,446	1,178	34.2%
경기	42,706	8,895	20.8%	40,023	9,324	23.3%	38,377	8,505	22.2%
강원	6,275	1,247	19.9%	5,409	1,255	23.2%	5,163	1,018	19.7%
충북	5,277	1,096	20.8%	5,147	1,084	21.1%	5,140	984	19.2%
충남	10,106	2,553	25.3%	9,742	2,515	25.8%	9,263	2,377	25.7%
전북	17,309	2,086	12.0%	17,189	1,934	11.2%	16,679	2,017	12.1%
전남	13,113	2,021	15.4%	12,523	1,914	15.3%	11,925	2,104	17.6%
경북	22,549	3,447	15.3%	21,903	3,900	17.8%	21,180	3,763	17.8%
경남	18,479	1,989	10.8%	18,101	1,968	10.9%	17,230	1,842	10.7%
제주	2,770	307	11.1%	2,718	334	12.3%	2,431	302	12.4%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관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2,794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095억원(64.5%) 증액 편성되었음.
- 공동주택건립 증가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은 전년대비 1,050억원(173.8%) 증액된 1,654억원이며,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전년대비 78억원(△19.9%) 감액된 315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24억원(17.6%) 증액된 82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내 초·중·고 및 부속건물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은 9개교 13개동이며,
- 이 중 7개교 10개동은 예산을 확보해 개축공사를 추진 중이고, 3개교 3개동은 설계비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1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 증·개축을 할 예정임.
-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면학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40년 이상 또는 C등급 학교건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축 또는 철거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2014년 학교시설 중 재난위험시설(D급) 조치 현황 ◆

(기준일 : '14. 10. 31)

연번	설립별	학교명 (기관명)	건물 용도	층수	연면적 (㎡)	준공 연도	확보 예산액 (백만원)	조치현황	비고
1	공립	김천초	남관동	2	1,094	1967	3,194	개축공사중 (철거완료)	지정해제 (‘14. 10. 15)
2			별관동	2	329	1968			
3	공립	포항 영흥초	교사A동	2	1,987	1970	9,896	개축공사중	
4			교사B동	2	2,096	1972			
5			교사C동	2	2,060	1979			
6	공립	강구중	교사A동	2	1,889	1967	8,242	설계중	
7			교사B동	2	1,435	1967			
8	공립	벽진초	후관동	1	584	1966	2,799	설계완료, 공사시행 준비	
9	공립	영덕고	강당	1	406	1982	83	철거완료	지정해제 (‘14. 09. 01)
10	공립	경북 체고	수영장	2	2,325	1993	1,431	보강공사완료 (등급조정준비)	
11	사립	현일고	체육관	2	823	1979	211	보강공사완료 (등급조정준비)	
12	공립	영천 중앙초	강당동	2	1,550	1967	3,403	설계중, 철거공사중	
13	공립	도원초	후관동	1	438	1966	1,758	설계중(개축예산확보)	
14	사립	오천중	교사동	1	345	1969	140	설계준비중 (‘15본예산 공사비 2,590 편성)	
15	공립	경북 체고	본관동	3	2,620	1972	906	설계중(‘15본예산 공사비 22,742 편성)	
16	사립	영양 여고	교사시설	2	345	1975	24	설계중(‘15본예산 공사비 548 편성)	

- 2015년 1억원 이상 신규사업²⁶⁾ 관련
 -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9건으로 주로 교사신축, 강당 증축, 급식소증개축 등과 같은 시설사업비임.
 - 주요 신규사업에는
 - 교사신축(울릉중) : 127억원
 - 교사신축(청량중) : 94억원
 - 영주통합공공도서관 신축 : 78억원 등이 있음.
-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5천만원 이상) 사업²⁷⁾ 관련
 -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6건이며, 주로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누리과정사업 등임.
 - 주요 증액사업에는
 - 누리과정 3세교육비지원 : 129억원
 -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 58억원
 - 정보화장비유지관리 : 37억원
 - 기타 명예퇴직수당, 학교 신·증설, 교사 신축, 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이 있음.
- 전년대비 50% 이상 감액(5천만원 이상) 사업²⁸⁾ 관련
 - 전년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80건이며,
 - 주요 감액사업에는

26) 참고자료 1

27) 참고자료 2

28) 참고자료 3

- 청사신축 : △149억원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82억원
- 교과교실제추진지원 : △83억원 등이 있음.

○ 성인지예산서 관련

-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이 남녀 동등하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 201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6개 기관 18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182억원 수준임.

◆ 사업분류별 성인지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 교 증 감	
				금액(A-B)	비 율
합 계	18개	18,203	22,086	△3,883	△17.6
1. 여성정책추진사업	7개	4,669	5,232	△563	△10.8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7,778	7,419	359	4.8
3. 기타 ²⁹⁾	7개	5,756	9,435	△3,679	△39.0

-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29) 교육부 지정사업, 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또한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에 해당하는 1,774억원이 증액된 3조 5,5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이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청 자체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시설사업에 투입할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세입부문에서는
 - 자체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매년 감축되고 있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단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교부금 확보 및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세출부문에서는

- 가용재원 부족으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전년대비 △293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비(전년대비 △74억원)가 각각 감축 운영되는 실정이다.
- 학교신설 증가, 만 3세 누리과정비의 지방교육재정 이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기본급·법정부담금 인상 및 명예 퇴직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바,
- 불요불급한 행사나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직원 명퇴 등의 일부사업 조정이나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철저한 사업별 비용분석과 물품구매·공사발주방법 개선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VII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IX.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예산안 수정조서 : 별첨

X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 고 자 료



1. 2015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2. 2015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현황(5천만원, 30% 이상)
3. 2015년도 본예산 감액사업 현황(5천만원, 50% 이상)

1. 2015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 부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편 성 사 유	예산안 쪽
1	교 육 정 책 과	병원학교 및 화상 강의운영지원	자체	122	2014년까지 교육부 특교로 지원 되었으나, 2015년 특교 중단으로 자체 예산 편성	603
2	재 무 정 보 과	용지매입(강구정 보고, 석적고)	자체	511	강구정보고 : 개축 예정지내 국유지 매입 석적고 : 운동장 부지 추가 매입	1,333
3	재 무 정 보 과	관제시스템운영	자체	1,000	원격지백업시스템 신규 구축	1,633
4	재 무 정 보 과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자체	288	안동도서관 용상분관 사용자 증가에 따른 증축부지 매입	1,958
5	총 무 과	청사신축	자체	2,052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환경 조성비 등 이전 관련 예산 편성	1,937
6	행 정 지 원 과	기타운영비지원	자체	717	증설학급, 신설학교 및 신설학교 컴퓨터 교육실 정보화 장비 지원	1,302
7	포항교육 지 원 청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증축	자체	4,207	양학초 4,207백만원	1,349
8	포항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자체	323	영양고 323백만원	1,341
9	포항교육 지 원 청	생활관대수선	자체	468	포항여전고 54백만원 경북과고 414백만원	1,345
10	포항교육 지 원 청	생활관증축	자체	1,091	홍해공고 1,091백만원	1,352
11	포항교육 지 원 청	특별교실증축	자체	440	두호고 440백만원	1,340
12	포항교육 지 원 청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증축	자체	107	포항제철동초 107백만원	1,348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 부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편 성 사 유	예산안 쪽
13	경주교육 지 원 청	다양한학교운동장 조성	자체	413	입실초 413백만원	801
14	경주교육 지 원 청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자체	442	나원초 442백만원	1,241
15	경주교육 지 원 청	기타시설증축	자체	104	황성초 104백만원	1,346
16	경주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자체	786	동천초 20백만원, 안강제일초 247백만원, 경주공고 376백만원, 나산초 105백만원, 안강전자고 37백만원	1,341
17	경주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증축	자체	2,219	서라벌여중 2,219백만원	1,350
18	김천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체 제개선	자체	108	통학차량운영비 108백만원	1,128
19	김천교육 지 원 청	기타시설증축	자체	453	상산전자고 293백만원 고령고 160백만원	1,346
20	김천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자체	721	김전중앙초 673백만원 성주고 48백만원	1,342
21	안동교육 지 원 청	신설학교증개축교 급식기구비지원	자체	630	갈전유 139백만원, 갈전초 208백만원, 풍천중 210백만원, 안동중 73백만원	1,237
22	안동교육 지 원 청	급식소증개축	자체	2,084	안동중 1,134백만원, 한국생명과학고 950백만원	1,347
23	안동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체 제개선	자체	108	통학차량운영비 108백만원	1,128
24	안동교육 지 원 청	기타시설증축	자체	205	안동강남초 205백만원	1,346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 부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편 성 사 유	예산안 쪽
25	안동교육 지 원 청	생활관증축	자체	133	한국생명과학고 133백만원	1,352
26	구미교육 지 원 청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자체	749	육계중 749백만원	1,241
27	구미교육 지 원 청	신설학교증개축교 급식기구비지원	자체	303	구평초 161백만원 진평초 142백만원	1,238
28	구미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 체제개선	자체	704	통학차량구입비 26백만원 통학차량운영비 678백만원	1,128
29	영주교육 지 원 청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자체	731	영주중앙초 731백만원	1,241
30	영주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 체제개선	자체	210	통학차량구입비 114백만원 통학차량운영비 96백만원	1,129
31	영주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자체	337	영주서부초 252백만원 영광중 85백만원	1,343
32	영주교육 지 원 청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시설	자체	7,810	영주통합공공도서관 7,810백만원	1,946
33	영천교육 지 원 청	다양한학교운동장 조성	자체	400	금호초 400백만원	801
34	영천교육 지 원 청	신설학교증개축교 급식기구비지원	자체	162	영천중앙초 162백만원	1,238
35	상주교육 지 원 청	급식소증개축	자체	406	중동초 406백만원	1,348
36	상주교육 지 원 청	기타시설증축	자체	292	상주여중 292백만원	1,347
37	문경교육 지 원 청	교실증축(호서남 초병설유치원)	자체	117	호서남초병설유 117백만원	1,334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 부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편 성 사 유	예산안 쪽
38	경산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 체제개선	자체	372	통학차량운영비 372백만원	1,129
39	의성교육 지 원 청	청사대수선	자체	163	화장실개선 163백만원	1,951
40	청도교육 지 원 청	학교운동부시설 개선	자체	308	청도초 308백만원	802
41	고령교육 지 원 청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자체	417	다산초 417백만원	1,241
42	성주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 체제개선	자체	105	통학차량구입비 87백만원 통학차량운영비 18백만원	1,131
43	칠곡교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 체제개선	자체	156	통학차량운영비 156백만원	1,131
44	칠곡교육 지 원 청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자체	629	장곡중 629백만원	1,241
45	예천교육 지 원 청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시설	자체	225	예천공공도서관 225백만원	1,949
46	봉화교육 지 원 청	교사신축(청량중)	자체	9,439	청량중 9,439백만원	1,330
47	울진교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자체	101	부구중 101백만원	1,344
48	울릉교육 지 원 청	학교안전통합 시스템구축사업	자체	100	Wee센터 설치운영 100백만원	972
49	울릉교육 지 원 청	교사신축(울릉중)	자체	12,660	울릉중 시설비 6,960백만원 울릉중 부지매입비 5,700백만원	1,330

2. 2015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내역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1	기획조정관	기타직법정부담금	8,273	4,586	3,687	80	143
2	기획조정관	기타운영비지원	4,750	3,250	1,500	46	1,301
3	기획조정관	경북교육계획추진	77	20	57	289	1,572
4	공보담당관	경북교육공보활동지원	159	97	62	64	1,582
5	교육정책과	공익근무요원(특수교육보조원)지원	365	140	226	162	576
6	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	888	511	377	74	585
7	교육정책과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지원	970	700	270	39	598
8	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계절학교 운영비지원	408	180	228	127	522
9	교육과정과	명예퇴직수당	4,030	600	3,430	572	127
10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연수	1,508	536	972	181	352
11	교육과정과	기초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	155	33	122	369	433
12	교육과정과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지원	157	100	57	57	416
13	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267	7	261	4,001	477
14	교육과정과	3세교육비지원	23,645	10,721	12,924	121	1,155
15	교원지원과	명예퇴직수당	26,642	17,325	9,317	54	128
16	생활지도과	학교성폭력예방CCTV설치	4,561	3,436	1,125	33	897
17	과 학 직 업 교 육 과	특성화고기자재확충	890	256	635	248	760
18	과 학 직 업 교 육 과	산업교육활성화장학금지원	5,107	2,868	2,239	78	1,071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19	체육건강과	스포츠강사인건비	3,953	2,519	1,434	57	785
20	총 무 과	명예퇴직수당	7,000	1,300	5,700	438	135
21	총 무 과	공무원사기진작	617	32	584	1,803	327
22	총 무 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63	36	327	910	309
23	총 무 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97	129	167	130	1,652
24	총 무 과	기록물관리	83	8	75	965	1,664
25	총 무 과	행정서비스개선	309	14	295	2,119	1,676
26	총 무 과	기관운영공통경비	1,673	1,050	623	59	1,803
27	행정지원과	변호사선임료	249	87	162	186	1,624
28	학교지원과	다목적강당보수	2,316	1,180	1,135	96	1,340
29	학교지원과	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	196	57	139	245	1,756
30	재무정보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4	56	949	1,705	1,354
31	재무정보과	나이스자산관리	668	366	302	83	1,650
32	재무정보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73	70	3,703	5,259	1,641
33	교육시설과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7,531	1,713	5,818	340	1,958
34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	450	336	114	34	585
35	포항교육지원청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지원	576	413	163	40	598
36	포항교육지원청	독서논술경시대회	79	21	59	285	628
37	포항교육지원청	학교환경관리	147	44	103	234	1,196
38	포항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33,280	13,070	20,210	155	1,324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39	포항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831	429	402	94	514
40	포항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770	90	680	753	1,127
41	포항교육지원청	기타운영비지원	219	158	61	39	1,302
42	포항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3,682	1,137	2,545	224	1,324
43	경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	188	130	59	45	585
44	경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지원	234	175	59	34	598
45	경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101	40	61	152	1,088
46	경주교육지원청	학교환경관리	96	30	66	221	1,197
47	경주교육지원청	신설학교증개축교급식기구비지원	164	107	56	52	1,237
48	경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264	90	174	193	514
49	경주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503	59	444	755	1,128
50	경주교육지원청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644	113	531	470	1,349
51	김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	196	134	61	46	585
52	김천교육지원청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지원	244	148	96	65	598
53	김천교육지원청	학기중중식지원	3,197	967	2,229	230	1,114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54	김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5,090	3,684	11,407	310	1,324
55	안동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시설개선	2,392	558	1,835	329	801
56	안동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1,538	8,213	3,325	40	1,324
57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 지원	408	312	96	31	586
58	구미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운영	2,449	1,656	794	48	1,094
59	구미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1,059	708	351	50	514
60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환경관리	138	51	86	168	1,199
61	구미교육지원청	교사신축	16,875	5,735	11,140	194	1,328
62	구미교육지원청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2,537	1,287	1,250	97	1,350
63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307	6,881	2,101	31	1,354
64	구미교육지원청	기관운영공통경비	283	212	71	33	1,823
65	영천교육지원청	기타운영비지원	110	51	59	116	1,304
66	영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5,965	3,924	12,041	307	1,324
67	상주교육지원청	학생야영장운영	600	320	280	88	850
68	상주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71	204	67	33	937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69	상 주 교 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117	57	60	105	1,129
70	문 경 교 육 지 원 청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72	3	69	2,300	514
71	경 산 교 육 지 원 청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 지원	328	239	89	37	600
72	경 산 교 육 지 원 청	학교환경관리	84	26	58	218	1,202
73	경 산 교 육 지 원 청	학교신증설	11,819	144	11,675	8,129	1,324
74	경 산 교 육 지 원 청	생활관대수선	2,616	79	2,537	3,205	1,344
75	경 산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565	3,811	21,753	571	1,354
76	의 성 교 육 지 원 청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121	20	101	517	1,130
77	의 성 교 육 지 원 청	학교신증설	16,116	3,963	12,153	307	1,324
78	의 성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88	781	407	52	1,354
79	청 송 교 육 지 원 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사업	123	6	117	1,947	949
80	청 송 교 육 지 원 청	3세교육비지원	112	62	50	81	1,158
81	영 양 교 육 지 원 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사업	114	8	106	1,330	952
82	영 양 교 육 지 원 청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81	7	74	1,084	993
83	영 덕 교 육 지 원 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사업	114	14	100	714	954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84	청도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사업	135	8	127	1,584	955
85	청도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70	20	50	252	1,240
86	청도교육지원청	3세교육비지원	228	125	104	83	1,159
87	청도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96	379	417	110	1,354
88	고령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사업	106	6	100	1,667	957
89	고령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운영	475	295	181	61	1,097
90	칠곡교육지원청	영어체험캠프운영	205	140	65	47	676
91	칠곡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222	42	180	429	515
92	칠곡교육지원청	기타운영비지원	99	43	56	131	1,306
93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사업	129	8	121	1,511	964
94	예천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254	39	215	548	1,132
95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43	654	288	44	1,354
96	울진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	106	25	81	332	408

3. 2015년도 본예산 감액사업 내역

(전년대비 50% 이상 감액,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1	교원지원과	초빙공모제실시학교 운영지원	9	447	△438	△98	283
2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선도학교운영	245	713	△468	△66	352
3	교육과정과	자율학교지정운영	477	1,260	△783	△62	373
4	교육과정과	유치원교재교구지원	100	240	△140	△58	505
5	교육과정과	독서논술경시대회	149	728	△579	△80	628
6	교육과정과	다문화교육	990	1,998	△1,007	△50	840
7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채추진지원	4,778	13,080	△8,302	△63	1,062
8	교육정책과	영어화상수업운영	160	350	△190	△54	668
9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활성화운영 지원	200	544	△344	△63	1,089
10	과 학 직 업 교 육 과	특성화교원연수	100	200	△100	△50	173
11	과 학 직 업 교 육 과	미래과학자양성 프로그램운영	118	238	△120	△50	609
12	과 학 직 업 교 육 과	과학동아리운영	86	198	△112	△57	729
13	과 학 직 업 교 육 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51	288	△237	△82	730
14	과 학 직 업 교 육 과	실습실현대화사업	200	606	△406	△67	760
15	과 학 직 업 교 육 과	특성화고학과개편	300	2,489	△2,189	△88	759
16	과 학 직 업 교 육 과	취업기능강화사업	100	716	△616	△86	764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17	체육건강과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200	500	△300	△60	801
18	체육건강과	난치병학생돕기	12	115	△104	△90	1,150
1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400	872	△472	△54	1,238
20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계자연수	74	206	△131	△64	1,220
21	체육건강과	급식소증개축	921	1,960	△1,039	△53	1,347
22	생활지도과	학생생활지도	59	368	△309	△84	879
23	생활지도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649	1,550	△901	△58	922
24	생활지도과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6	63	△57	△91	991
25	재무정보과	학내전산망구축 및 관리	45	1,699	△1,654	△97	768
26	재무정보과	정보보호운영	15	81	△67	△82	1,656
27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진단)	200	522	△322	△62	1,424
28	교육시설과	청사신축	10,450	25,300	△14,850	△59	1,938
29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 경비	50	193	△143	△74	1,750
30	교육연구원	중학교교과학습진단평가	34	167	△133	△80	1,006
31	교육연구원	초등교과학습진단평가	36	182	△146	△80	1,005
32	포항교육지 원청	맞춤형현장지원컨설팅	3	68	△65	△96	449
33	포항교육지 원청	사립유치원종일제운영	257	633	△376	△59	507
34	포항교육지 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9	109	△100	△92	501
35	포항교육지 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167	451	△284	△63	901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36	경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종일제운영	61	123	△62	△50	507
37	경주교육지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44	132	△88	△67	501
38	경주교육지원청	영어체험교실설치운영	100	300	△200	△67	672
39	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88	215	△127	△59	901
40	경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50	100	△50	△50	1,238
41	김천교육지원청	국공유재산관리	50	102	△52	△51	1,730
42	안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60	160	△100	△63	902
43	안동교육지원청	학생야영장운영	224	609	△385	△63	850
44	구미교육지원청	맞춤형현장지원컨설팅	12	65	△53	△82	451
45	구미교육지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9	94	△85	△90	501
46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180	498	△319	△64	903
47	구미교육지원청	인성교육운영	6	117	△111	△95	874
48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상담센터운영	8	256	△248	△97	981
49	구미교육지원청	부지매입비	1,210	2,644	△1,434	△54	1,331
50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75	150	△75	△50	1,239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51	구미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2,286	6,580	△4,294	△65	1,351
52	구미교육지원청	생활관증축	60	1,985	△1,924	△97	1,352
53	영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종일제운영	28	82	△53	△65	507
54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41	95	△53	△56	904
55	영주교육지원청	특별교실증축	250	1,114	△864	△78	1,340
56	영천교육지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18	88	△70	△80	501
57	영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	73	188	△115	△61	1,146
58	상주교육지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18	104	△86	△83	501
59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상담센터운영	17	92	△75	△82	983
60	상주교육지원청	국공유재산관리	56	137	△80	△59	1,733
61	문경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25	91	△66	△73	1,239
62	문경교육지원청	기타운영비지원	70	150	△80	△53	1,305
63	경산교육지원청	유치원종일제운영	27	82	△54	△66	502
64	경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77	233	△157	△67	906
65	경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	66	△65	△98	1,278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증 감		예산 안쪽
					금액 (A-B)	비율 (%)	
66	경 산 교 육 지 원 청	기타운영비지원	169	492	△323	△66	1,305
67	경 산 교 육 지 원 청	학생배치계획지원	7	209	△201	△96	1,747
68	군 위 교 육 지 원 청	토요방과후학교운영	47	104	△58	△55	1,102
69	의 성 교 육 지 원 청	교육상담센터운영	1	54	△53	△99	985
70	영 양 교 육 지 원 청	방과후학교활성화운영 지원	46	325	△279	△86	1,091
71	영 덕 교 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95	684	△590	△86	1,344
72	영 덕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78	8,635	△8,158	△94	1,354
73	철 곡 교 육 지 원 청	사립유치원종일제운영	49	132	△83	△63	509
74	철 곡 교 육 지 원 청	유치원종일제운영	6	62	△56	△90	502
75	철 곡 교 육 지 원 청	다목적강당보수	141	628	△487	△77	1,344
76	예 천 교 육 지 원 청	영어체험교실설치운영	200	403	△203	△50	672
77	예 천 교 육 지 원 청	4세교육비지원	133	361	△228	△63	1,166
78	울 진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46	2,295	△1,250	△54	1,355
79	울 진 교 육 지 원 청	국공유재산관리	24	76	△52	△69	1,740
80	울 룡 교 육 지 원 청	토요방과후학교운영	29	83	△54	△65	1,104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 정 조 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고
	합 계		1,347,982,065	1,344,223,541	△3,758,524	
124	기획조정관	보수(시간외근무수당)	1,099,187,688	1,096,602,389	△2,585,299	
127	기획조정관	공무원법정부담금	242,717,939	242,209,502	△508,437	
174	과학직업 교육과	하계정보화능력향상 연수	87,430	50,000	△37,430	
860	화랑교육원	한미학생교환프로그램	64,260	0	△64,260	
1101	교육정책과	토요방과후학교운영	2,772,000	2,541,000	△231,000	
1122	행정지원과	저소득층자녀정보화 지원(유해차단)	3,074,148	2,810,650	△263,498	
1571	기획조정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28,000	10,000	△18,000	
1750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통폐합추진우수학교 견학	10,600	0	△10,600	
1757	학교지원과	사립학교사무직원과 원해소 인사교류특 별지원금	40,000	0	△4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용(부기)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액	비고
	합 계		10,762,748	14,521,272	3,758,524	
1984	기획조정관	예비비	10,762,748	14,521,272	3,758,524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28,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4. 12.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16 : 상정·질의)

○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17 : 상정·질의)

○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18 : 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예산편성 방향

○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반영과 중앙
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되거나 추가된 국비보조 사업비를 정리

- 조직개편 및 계획변경이나 조정된 사업비 예산편성과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
-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 반영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381,000	100.0	7,398,492	100.0	△17,492	△0.2
일 반 회 계	6,235,939	84.5	6,262,992	84.7	△27,053	△0.4
특 별 회 계	1,145,061	15.5	1,135,500	15.3	9,561	0.8
공기업특별회계	532,178	7.2	521,793	7.1	10,385	2.0
지역개발기금 운 영	532,178	7.2	521,793	7.1	10,385	2.0
기 타 특 별 회 계	612,883	8.3	613,707	8.3	△824	△0.1
의료급여기금 운 영	463,440	6.3	463,284	6.3	156	0.0
치 수 사 업	41,835	0.6	42,398	0.6	△563	△1.3
경북도립대학 운 영	9,650	0.1	10,067	0.1	△417	△4.1
광역교통시설	9,900	0.1	9,900	0.1	0	0.0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58,700	0.8	58,700	0.8	0	0.0
학교용지부담금	29,358	0.4	29,358	0.4	0	0.0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381,000	100.0	7,398,492	100.0	△17,492	△0.2
자 체 수 입	2,374,265	32.2	2,341,275	31.6	32,990	1.4
지방세 수입	1,341,063	18.2	1,312,000	17.7	29,063	2.2
세 외 수 입	240,077	3.3	240,797	3.3	△720	△0.3
경상적수입	68,005	0.9	67,281	0.9	724	1.1
임시적수입	172,072	2.3	173,516	2.4	△1,444	△0.8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793,125	10.8	788,478	10.7	4,647	0.6
의 존 수 입	5,006,735	67.8	5,057,217	68.4	△50,482	△1.0
지 방 교 부 세	1,105,538	15.0	1,097,813	14.8	7,725	0.7
보 조 금	3,706,197	50.2	3,764,404	50.9	△58,207	△1.6
지 방 채	195,000	2.6	195,000	2.6	0	0.0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381,000	100.0	7,398,492	100.0	△17,492	△0.2
일 반 공 공 행 정	1,411,209	19.1	1,376,166	18.6	35,042	2.6
공공질서 및 안전	350,164	4.7	371,497	5.0	△21,333	△5.7
교 육	13,638	0.2	13,930	0.2	△291	△2.1
문 화 및 관 광	432,591	5.9	428,355	5.8	4,236	1.0
환 경 보 호	486,197	6.6	508,085	6.9	△21,888	△4.3
사 회 복 지	2,126,311	28.8	2,170,972	29.3	△44,660	△2.1
보 건	90,970	1.2	90,133	1.2	838	0.9
농 립 해 양 수 산	1,001,854	13.6	988,675	13.4	13,178	1.3
산 업 중 소 기 업	199,970	2.7	201,281	2.7	△1,311	△0.7
수 송 및 교 통	358,272	4.9	347,194	4.7	11,078	3.2
국토 및 지역개발	426,029	5.8	422,126	5.7	3,903	0.9
과 학 기 술	24,691	0.3	23,691	0.3	1,000	4.2
예 비 비	61,294	0.8	53,488	0.7	7,806	14.6
기 타	397,810	5.4	402,901	5.5	△5,091	△1.3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381,000	100.0	7,398,492	100.0	△17,492	△0.2
의 회 사 무 처	16,255	0.2	16,898	0.2	△643	△3.8
대 변 인	4,587	0.1	4,677	0.1	△90	△1.9
감 사 관	1,165	0.0	1,208	0.0	△43	△3.5
미래전략기획단	3,102	0.0	3,125	0.0	△23	△0.7
여성가족정책관	482,447	6.5	493,480	6.7	△11,033	△2.2
인재개발정책관	4,699	0.1	5,004	0.1	△305	△6.1
투 자 유 치 실	22,401	0.3	26,010	0.4	△3,609	△13.9
경북개혁추진단	657	0.0	657	0.0	0	0.0
기 획 조 정 실	1,295,026	17.6	1,251,083	16.9	43,943	3.5
창조경제산업실	162,906	2.2	159,386	2.2	3,520	2.2
일자리민생본부	107,949	1.5	109,348	1.5	△1,400	△1.3
안 전 행 정 국	380,637	5.2	385,555	5.2	△4,919	△1.3
문화관광체육국	427,860	5.8	423,623	5.7	4,237	1.0
농 축 산 유 통 국	691,720	9.4	682,473	9.2	9,246	1.4
환경산림자원국	694,654	9.4	713,303	9.6	△18,649	△2.6
북 지 건 강 국	1,709,759	23.2	1,742,367	23.6	△32,607	△1.9
지역균형건설국	742,230	10.1	740,741	10.0	1,489	0.2
동해안발전본부	106,951	1.5	107,409	1.5	△457	0.4
도청신도시본부	195,317	2.7	195,707	2.7	△390	△0.2
소 방 본 부	253,169	3.4	257,417	3.5	△4,249	△1.7
농 업 기 술 원	52,689	0.7	53,034	0.7	△346	△0.7
공 무 원 교 육 원	5,389	0.1	5,781	0.1	△392	△6.8
보건환경연구원	9,783	0.1	10,139	0.1	△357	△3.5
경 북 도 립 대 학	9,650	0.1	10,067	0.1	△417	△4.1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381,000	100.0	7,398,492	100.0	△17,492	△0.2
인 건 비	307,884	4.2	313,827	4.2	△5,943	△1.9
물 건 비	151,520	2.1	157,586	2.1	△6,066	△3.9
경 상 이 전	3,132,458	42.4	3,149,927	42.6	△17,469	△0.6
자 본 지 출	2,609,972	35.4	2,636,591	35.6	△26,619	△1.0
용자 및 출자	167,700	2.3	276,700	3.7	△109,000	△39.4
보 전 재 원	2,000	0.0	2,000	0.0	0	0.0
내 부 거 래	745,936	10.1	729,826	9.9	16,110	2.2
예비비 및 기타	263,530	3.6	132,035	1.8	131,495	99.6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235,939	100.0	6,262,992	100.0	△27,053	△0.4
지 방 세 수 입	1,341,063	21.5	1,312,000	21.0	29,063	2.2
세 외 수 입	119,082	1.9	121,570	1.9	△2,488	△2.1
경 상 적 수 입	23,009	0.4	22,413	0.4	595	2.7
임 시 적 수 입	96,073	1.5	99,156	1.6	△3,083	△3.1
지 방 교 부 세	1,105,538	17.7	1,097,813	17.5	7,725	0.7
보 조 금	3,316,048	53.2	3,369,755	53.8	△53,707	△1.6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354,208	5.7	361,854	5.8	△7,646	△2.1

2)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235,939	100.0	6,262,992	100.0	△27,053	△0.4
일반공공행정	879,027	14.1	854,375	13.6	24,652	2.9
공공질서 및 안전	350,164	5.6	371,497	5.9	△21,333	△5.7
교육	8,705	0.1	8,698	0.1	7	0.1
문화 및 관광	432,591	6.9	428,355	6.8	4,236	1.0
환경 보호	486,197	7.8	508,085	8.1	△21,888	△4.3
사회 복지	1,662,871	26.7	1,707,687	27.3	△44,816	△2.6
보건	90,970	1.5	90,133	1.4	838	0.9
농림해양수산	1,001,854	16.1	988,675	15.8	13,178	1.3
산업중소기업	141,270	2.3	142,580	2.3	△1,311	△0.9
수송 및 교통	348,372	5.6	337,294	5.4	11,078	3.3
국토 및 지역 개발	354,836	5.7	350,370	5.6	4,466	1.3
과학기술	24,691	0.4	23,691	0.4	1,000	4.2
예비비	61,294	1.0	53,488	0.9	7,806	14.6
기타	393,097	6.3	398,064	6.4	△4,967	△1.3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235,939	100.0	6,262,992	100.0	△27,053	△0.4
의 회 사 무 처	16,255	0.3	16,898	0.3	△643	△3.8
대 변 인	4,587	0.1	4,677	0.1	△90	△1.9
감 사 관	1,165	0.0	1,208	0.0	△43	△3.5
미래전략기획단	3,102	0.1	3,125	0.1	△23	△0.7
여성가족정책관	482,447	7.7	493,480	7.9	△11,033	△2.2
인재개발정책관	4,699	0.1	5,004	0.1	△305	△6.1
투 자 유 치 실	22,401	0.4	26,010	0.4	△3,609	△13.9
경북개혁추진단	657	0.0	657	0.0	0	0.0
기 획 조 정 실	762,848	12.2	729,290	11.6	33,558	4.6
창조경제산업실	104,206	1.7	100,686	1.6	3,520	3.5
일자리민생본부	107,949	1.7	109,348	1.8	△1,400	△1.3
안 전 행 정 국	380,637	6.1	385,555	6.2	△4,919	△1.3
문화관광체육국	427,860	6.9	423,623	6.8	4,237	1.0
농 축 산 유 통 국	691,720	11.1	682,473	10.9	9,246	1.4
환경산림자원국	694,654	11.1	713,303	11.4	△18,649	△2.6
복 지 건 강 국	1,246,319	20.0	1,279,082	20.4	△32,763	△2.6
지역균형건설국	661,137	10.6	659,086	10.5	2,052	0.3
동해안발전본부	106,951	1.7	107,409	1.7	△457	0.4
도청신도시본부	195,317	3.1	195,707	3.1	△390	△0.2
소 방 본 부	253,169	4.1	257,417	4.1	△4,249	△1.7
농 업 기 술 원	52,689	0.8	53,034	0.9	△346	△0.7
공 무 원 교 육 원	5,389	0.1	5,781	0.1	△392	△6.8
보건환경연구원	9,783	0.2	10,139	0.2	△357	△3.5
경 북 도 립 대 학	-	-	-	-	-	-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235,939	100.0	6,262,992	100.0	△27,053	△0.4
인 건 비	304,040	4.9	309,873	5.0	△5,833	△1.9
물 건 비	146,025	2.3	151,888	2.4	△5,863	△3.9
경 상 이 전	2,637,759	42.3	2,655,233	42.4	△17,474	△0.7
자 본 지 출	2,554,492	41.0	2,577,169	41.2	△22,677	△0.9
융자 및 출자	24,300	0.4	24,300	0.4	0	0.0
보 전 재 원	2,000	0.0	2,000	0.0	0	0.0
내 부 거 래	485,667	7.8	469,557	7.5	16,110	3.4
예비비 및 기타	81,656	1.3	72,972	1.2	8,684	11.9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특 별 회 계	1,145,061	100.0	1,135,500	100.0	9,561	0.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532,178	46.5	521,793	46.0	10,385	2.0
지역개발기금운영	532,178	46.5	521,793	46.0	10,385	2.0
기 타 특 별 회 계	612,883	53.5	613,707	54.0	△824	△0.1
의료급여기금운영	463,440	40.5	463,284	40.8	156	0.0
치 수 사 업	41,835	3.6	42,398	3.7	△563	△1.3
경북도립대학운영	9,650	0.8	10,067	0.9	△417	△4.1
광역 교통 시설	9,900	0.9	9,900	0.9	0	0.0
발전소 지역 자원 시설 세	58,700	5.1	58,700	5.2	0	0.0
학교용지부담금	29,358	2.6	29,358	2.6	0	0.0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45,061	100.0	1,135,500	100.0	9,561	0.8
세 외 수 입	120,995	10.6	119,227	10.5	1,768	1.5
경 상 적 수 입	44,996	3.9	44,868	4.0	129	0.3
임 시 적 수 입	75,999	6.6	74,360	6.6	1,639	2.2
보 조 금	390,148	34.1	394,648	34.8	△4,500	△1.1
지 방 채	195,000	17.0	195,000	17.2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438,917	38.3	426,624	37.6	12,293	2.9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45,061	100.0	1,135,500	100.0	9,561	0.8
일반공공행정	532,181	46.5	521,791	46.0	10,390	2.0
교 육	4,933	0.4	5,232	0.5	△298	△5.7
사 회 복 지	463,440	40.5	463,284	40.8	156	0.0
산업중소기업	58,700	5.1	58,700	5.2	0	0.0
수송 및 교통	9,900	0.9	9,900	0.9	0	0.0
국토 및 지역개발	71,193	6.2	71,756	6.3	△563	△0.8
기 타	4,713	0.4	4,837	0.4	△123	△2.6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45,061	100.0	1,135,500	100.0	9,561	0.8
기 획 조 정 실	532,178	46.5	521,793	46.0	10,385	2.0
예 산 담 당 관	532,178	46.5	521,793	46.0	10,385	2.0
창조경제산업실	58,700	5.1	58,700	5.2	0	0.0
청정에너지산업과	58,700	5.1	58,700	5.2	0	0.0
복 지 건 강 국	463,440	40.5	463,284	40.8	156	0.0
사 회 복 지 과	463,440	40.5	463,284	40.8	156	0.0
지역균형건설국	81,092	7.1	81,656	7.2	△563	△0.7
균형발전사업단	9,900	0.9	9,900	0.9	0	0.0
건축디자인과	29,358	2.6	29,358	2.6	0	0.0
하 천 과	41,835	3.7	42,398	3.7	△563	△1.3
경 북 도 립 대 학	9,650	0.8	10,067	0.9	△417	△4.1
경 북 도 립 대 학	9,650	0.8	10,067	0.9	△417	△4.1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45,061	100.0	1,135,500	100.0	9,561	0.8
인 건 비	3,844	0.3	3,954	0.4	△110	△2.8
물 건 비	5,495	0.5	5,697	0.5	△203	△3.6
경 상 이 전	494,699	43.2	494,694	43.6	5	0.0
자 본 지 출	55,481	4.9	59,423	5.2	△3,942	△6.6
융자 및 출자	143,400	12.5	252,400	22.2	△109,000	△43.2
내 부 거 래	260,269	22.7	260,269	22.9	0	0.0
예비비 및 기타	181,874	15.9	59,063	5.2	122,811	207.9

라.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9개 사업에 2,431억 52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57개 사업에 2,430억 12백만원
 -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억 40백만원임.
- ※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참조

6. 검토의견

가. 총 괄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7조 3,985억원보다 175억원($\Delta 0.2\%$)이 감액된 7조 3,810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2,630억원보다 271억원($\Delta 0.4\%$)이 감액된 6조 2,359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55억원보다 96억원(0.8%)이 증액된 1조 1,451억원임.

◆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3,810	100.0	73,985	100.0	△175	△0.2
일반회계	62,359	84.5	62,630	84.7	△271	△0.4
특별회계	11,451	15.5	11,355	15.3	96	0.8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 총 규모는

- 기정예산 6조 2,630억원보다 271억원(△0.4%)이
감액된 6조 2,359억원임.

○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조 3,120억원에서 291억원
이 증액된 1조 3,411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16억원에서 25억원이 감액된
1,191억원이며
- 중앙지원금은 4조 4,216억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조 978억원에서 77억원이
증액된 1조 1,055억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조 3,698억원에서 537억원이
감액된 3조 3,161억원임.

○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 | | |
|-------------|---|-------|
| • 일반공공행정 | 증 | 247억원 |
| • 문화 및 관광 | 증 | 42억원 |
| • 농림해양수산 | 증 | 132억원 |
| • 수송 및 교통 | 증 | 111억원 |
| • 국토 및 지역개발 | 증 | 45억원 |
| • 공공질서 및 안전 | 감 | 213억원 |

• 환경보호	감	219억원
• 사회복지	감	448억원
• 산업·중소기업	감	13억원
• 기타	감	50억원
• 예비비	증	78억원

○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내부거래	증	161억원
• 예비비 및 기타	증	87억원
• 인건비	감	58억원
• 물건비	감	59억원
• 경상이전	감	175억원
• 자본지출	감	227억원
•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음.		

2) 특별회계

- 기정예산 1조 1,355억원보다 95억 61백만원이 증액된 1조 1,450억 61백만원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이자수입 54백만원, 기타수입(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1억 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6백만원 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1억 56백만원을 증액 계상함.

- 치수사업특별회계는
 - 보현산댐주변지역정비사업 15억 36백만원이 증액되고
부항댐주변지역정비사업 45억원이 감액됨.
 -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은 2014년 본예산미계상분으로써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
-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수수료수입 6천만원, 이자수입 15백만원 각각
증액되고, 전입금수입은 4억 93백만원 감액되어 총 4억
17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 15백
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1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1억
92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함.
-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증감은 없으나, 수소연료전지타운조성사업 5억
51백만원, 경북형네가와트시범마을조성 등 4억 69백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
-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 순세계잉여금 103억 85백만원과 감액한 기금융자금
1,090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제1회 추경이후 3/4분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 15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 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³⁰⁾ 증가분 1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또한 지방교부세 7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사리도 확포장사업 20억원,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량, 교량개체 및 보수 등 30억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인센티브 4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 계상된 것임.
- 이와 함께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537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1억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2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억원을 감액하였음.
-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13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

30)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목적세로 취득세액의 10%, 재산세액의 20%, 등록면허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50%, 균등분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임.

억원 등 경제부문에 288억원이 증액되어, FTA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을 확충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계상한 것으로 보여짐.

○ 명시이월사업³¹⁾에 대하여

- 최근 3년 동안의 명시이월사업 추세를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는 2,43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3%가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1	1,615	102	1,939	157	2,430	

- 또한 계약이 지체되어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연구용역비는 18건에 13억원이며,
- 시설공사비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공기의 절대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대다수 임.

31)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참고자료에 게재함.

-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소요기간 판단,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추진 계획이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비는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은 지양하고
 - 당해연도 모든 세출예산은 가능한 연도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예산이월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신규 편성사업³²⁾에 대하여
- 1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 사업은 33건, 260억원이나 됨.
 -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 제2회 추경시에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신규 편성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2,568	
체 육 진 흥 과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3,220	
체 육 진 흥 과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설지원	3,780	
친 환 경 농 업 과	벼재배농가특별지원	8,099	
하 천 과	소규모댐건설	1,385	

32) 신규편성 사업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함.

○ 전액 감액사업³³⁾에 대하여

- 201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계획취소, 중단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68건에 89억원으로,
- 그 중 5억원 이상 전액 감액한 주요사업은
신성장산업과의 SK케미칼 안동바이오공장 투자기업이전 보조금 10억원, 풍기인건 경쟁력강화사업(광특도비) 5억원과 문화예술과의 상주 은자공예촌 조성 8억원, 관광진흥과의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광특중앙) 9억원,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광특중앙) 16억원 등 5개 사업임.
- 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미흡, 예측하지 못한 민원 발생, 사업추진의 적극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액 감액사업은 사업비의 사장으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3)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함.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신성장산업과	SK케미칼안동바이오 공장토자기업 이전보조금	0	1,000	△1,000	△100.0	
신성장산업과	풍기인견경쟁력 강화사업(광특도비)	0	500	△500	△100.0	
문화예술과	상주은자공예촌 조성(광특도비)	0	812	△812	△100.0	
관광진흥과	춘양목산삼마을 조성(광특중앙)	0	910	△910	△100.0	
관광진흥과	백두대간불교문화 역사길(광특중앙)	0	1,562	△1,562	△100.0	

2) 특별회계

- 2014년도 현재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기금운영 등 총 7개 기금에 1조 1,451억원으로
-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백만원, 이자수입 54백만원 등 1억 56백만원을 의료급여진료비로 민간위탁하고
 -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보현산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5억 36백만원을 증액하고, 부항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45

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24억 1백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억 15백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10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 92백만원 등 4억 17백만원을 감액하였음.

이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세입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수소연료전지타운조성사업 5억 51백만원, 경북형네가와트시범마을조성 4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일부 증액계상을 제외하면, 국비 변동 또는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발생, 조직개편 등의 행·재정여건변동과 예산절감액·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 예년과 같이 전액삭감 또는 과다 불용액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명시이월사업이나 신규편성사업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한편, 또한 편성된 예산은 2014

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명시이월 사업조서
- 1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 현황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현황

< 자료 1 >

명시이월사업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157건	574,979,075	243,011,880	
대변인	도정 시책 홍보	각종매체 를 통한 도정 시책홍보	미디어 보도지 원을 통한 홍보	401-01 (시설비)	신청사도정 브리핑룸설치	198,560	198,560	· 신청사 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 업 발주 연기
				401-03 (시설 부대비)	신청사도정 브리핑룸설치 시설부대비	1,440	1,440	· 신청사 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 업 발주 연기
			뉴미디어 활용한 도정 홍보	207-02 (전산 개발비)	소셜밴드 시스템 구축	150,000	100,000	· 유칼 후 재입찰 공고 및 업체 기 술평가로 지연
				401-01 (시설비)	신청사내 인터넷방송국 구축	973,826	973,826	· 신청사 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 업 발주 연기
				401-03 (시설 부대비)	신청사내 인터 넷방송국 구축 시설부대비	6,174	6,174	· 신청사 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 업 발주 연기
미래 전략 기획단	도정 주요 전략 기획 및 조정	도정주요 전략기획 및 조정	도정 발전 주요 전략 개발	207-01 (연구 용역비)	환동해 북방 유라시아 자원기지개발 연구용역	100,000	100,000	용역의 사업성, 범 위 및 용역 수주업 체 검토에 따른 이 월
				207-01 (연구 용역비)	국방ICT 창조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100,000	10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8)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 책 기획관	기획 조정을 통한 지원 체계강화	도정정책 개발시스 템강화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 안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한국한방산업 진흥원 정부산 하 출연기관 전환을 위한 타당성조사	30,000	3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15. 1)
				207-01 (연구 용역비)	한국형 창업 실리콘밸리조 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 성조사	52,100	52,1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15. 7)
				207-01 (연구 용역비)	동학유산 유네 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타 당성 조사	74,900	74,9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7 ~'15. 5)
				207-01 (연구 용역비)	창조경제 선도 지역 조성 기 본계획 수립	29,692	29,692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15. 3)
				207-01 (연구 용역비)	「김천혁신도 시창조협력프 로젝트」연구 용역	80,000	8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2 ~'15. 6)
				207-01 (연구 용역비)	황금허리4도 협력벨트 구축기본구상 연구용역	80,000	80,000	용역기간 미도래 에 따른 이월 ('14. 12 ~ '15. 5)
				207-01 (연구 용역비)	지방자치단체 제한계능력 평가와 재원확 충방안	100,000	100,000	용역기간 미도래 에 따른 이월 ('14. 12 ~ '15. 10)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 책 기 획 관	기획조정을 통한 지원 체계 강화	도정정책 개발시스템 강화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경상북도철도차량부품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26,900	26,9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3)
				207-01 (연구용역비)	삼국유사스토리 경북관광콘텐츠 개발학술용역	20,000	2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3)
				207-01 (연구용역비)	감포해양관광단지 SEALIFEPARK 조성기본구상	20,000	2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2 ~ '15. 3)
				207-01 (연구용역비)	도청신도시 인접중소도시동반 성장 방안용역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2 ~ '15. 12)
창조 경제 과학과	과학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연구 개발비	동해안연구개발 특구육성종합 계획연구용역	150,000	1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10)
ICT 융합 산업과	ICT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	ICT융합 산업육성 및 지원	5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산업육성 및 인증기반 구축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5세대초고속 이동통신산업 육성 인증기반구축 연구용역	150,000	1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12)
청정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 (보조)	01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도)	2,568,000	2,568,000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내시지원('14.11.18)으로 사업추진 지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 창출단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실업 해소기반 구축	청년일자 리창출활 성화	207-01 (연구 용역비)	한국형창업 실리콘밸리 조성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80,000	8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7)
안전 총괄과	안전경 복실행	재난상황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재난상황 실 운영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청사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설비 구축	100,000	100,000	신청사 이전 연기 에 따른 이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청사 재난종합상황실 멀티비전 구축	65,000	65,000	신청사 이전 연기에 따른 이월
				401-01 (시설비)	신청사 민방위경보 시스템구축	800,000	8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새마을 봉사과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새마을 운동역량 강화	새마을 운동 육성지원 (보조)	401-01 (시설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505,589 국) 252,795 도) 252,794	425,589 국) 212,795 도) 212,794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
				401-03 (시설 부대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시설부대비	2,000 국) 1,000 도) 1,000	2,000 국) 1,000 도) 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정보 통신과	유비쿼 터스 경북구현	정보화 기반조성	스마트중 합전산센 터 구축	201-01 (사무 관리비)	스마트종합전산 센터이전구축	300,000	300,000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207-02 (전산 개발비)	디지털의사소통 시스템확대구축	300,000	300,000	행자부의 시스템 개발이 지연에 따른 이월(행자부 '14. 12월 완료)
				401-01 (시설비)	도청종합정보실 및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구축	1,933,702	1,914,202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보 통신과	유비쿼 터스 경북구현	정보화 기반조성	스마트 종합전산 센터 구축	401-02 (감리비)	도정종합정보실 및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구축 감리비	26,298	26,298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401-01 (시설비)	LAN장비 및 통신장비이전 설치	100,000	100,000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401-01 (시설비)	영상회의및각종 방송시설통합컨 트롤센터구축	400,000	400,000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401-01 (시설비)	구내네트워크 및 IPT접속시설 공사	800,000	800,000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구입	1,640,000	1,640,000	도청이전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문화 융성 사업단	문화기반 사업추진	문화기반 조성추진	공공 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	경북도립공공 도서관건립 (광특도비)	1,100,000 광 400,000 도 700,000	1,100,000 광 400,000 도 700,000	부지 미확보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이월
	국제문화 교류협력	문화교류 추진	문화교류 기획	207-01 (연구 용역비)	조선감영역사 고도관광자원화 사업지원	200,000	20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8))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관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확충	관광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덕실생태문화 공원조성 (포항)(광특)	1,300,000 광1,000,000 도 300,000	1,300,000 광1,000,000 도 300,000	사업부지 확보 부진으로 인한 이월
					친생산성주변 관광자원화 (구미)(광특)	340,000 광 340,000	340,000 광 340,000	※ 자금없는 이월 국고 보조금 교부 지연
					낙동강송마길 조성 (구미)(광특)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사전절차 미이행 (하천점용허가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
					보현산별빛 테마마을조성 (영천)(광특)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고운사주변 관광자원화 (의성)(광특)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650,000 광 500,000 도 15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주실마을관광 자원화사업 (영양)(광특)	975,000 광 750,000 도 225,000	975,000 광 750,000 도 225,000	부지미확보에 따른 사 업절차 지연으로 이월
					웰빙문화테마 마을조성 (영덕)(광특)	910,000 광 700,000 도 210,000	910,000 광 700,000 도 21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옛칠길레저 파크조성 (청도)(광특)	1,755,000 광1,350,000 도 405,000	1,755,000 광1,350,000 도 405,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낙동강수변 레저공원조성 (칠곡)(광특)	744,000 광 572,000 도 172,000	744,000 광 572,000 도 172,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관 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확충	관광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관호산성공원 조성(칠곡) (광특)	130,000 광 100,000 도 30,000	130,000 광 100,000 도 3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운행 (봉화)(광특)	910,000 광 700,000 도 210,000	910,000 광 700,000 도 210,000	협의기관간 협의부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 월
					봉화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봉화)(광특)	169,000 광 130,000 도 39,000	169,000 광 130,000 도 39,000	※ 자금없는 이월 국고 보조금 교부지연
			소백산 명상센터 조성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백산명상 센터 조성	1,300,000 기 1,000,000 도 300,000	1,300,000 기 1,000,000 도 300,000	※ 자금없는 이월 국고 보조금 교부지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친환경관광 e-bike네트워 크구축사업	65,000 광 50,000 도 15,000	65,000 광 50,000 도 15,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세계유교 선비문화 공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	9,875,000 광 8,750,000 도 1,125,000	2,765,000 광 2,450,000 도 315,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한국문화 테마파크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국문화테마 파크	11,286,000 광 10,000,000 도 1,286,000	11,286,000 광 10,000,000 도 1,286,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낙동강 이야기 나라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낙동강이야기 나라	1,128,600 광 1,000,000 도 128,600	1,128,600 광 1,000,000 도 128,6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관 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확충	관광 인프라 조성	삼국유사 가온누리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삼국유사가온 누리	6,771,000 광 6,000,000 도 771,000	6,771,000 광 6,000,000 도 771,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3대문화 권사업	녹색문화 상생벨트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녹색문화상생 벨트	6,433,000 광 5,700,000 도 733,000	4,853,000 광 4,300,000 도 553,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3대문화권 지역전략 사업추진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5,643,000 광 5,000,000 도 643,000	5,643,000 광 5,000,000 도 643,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신성현 문화단지	1,580,000 광 1,400,000 도 180,000	1,580,000 광 1,400,000 도 18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누정휴문화 누리	987,500 광 875,000 도 112,500	987,500 광 875,000 도 112,5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신라금속 공예지국	790,000 광 700,000 도 90,000	790,000 광 700,000 도 90,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316,000 광 280,000 도 36,000	316,000 광 280,000 도 36,00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예산 이월교부결정 에 따른 이월
		관광 인프라 조성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고서원관광 콘텐츠구축 사업	585,000 광 450,000 도 135,000	585,000 광 450,000 도 135,000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절차지연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체 육 진흥과	체육응도 위상정립	체육시설 의 지속적 확충· 보강	체육진흥 시설지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울진생활 체육공원 조성	680,000 광 400,000 도 280,000	680,000 광 400,000 도 280,000	※ 자금없는 이월 - '15년 3월 : 공사 착공 예정 - '16년 12월 : 공사 준공 예정
					성주공공 체육시설 조성	200,000 광 200,000	200,000 광 200,000	※ 자금없는 이월 - '14년 11월중 설계 공모 - '16년 12월 공사준공
					김천실내 수영장시설 개보수	970,000 광 570,000 도 400,000	970,000 광 570,000 도 400,000	※ 자금없는 이월 - '15년 8월 : 공사 완료 예정
					영양복합 체육시설 건립	270,000 광 180,000 도 90,000	270,000 광 180,000 도 90,000	※ 자금없는 이월 - '14년 11월 : 공사 착공 예정 - '15년 12월 : 공사 준공 예정
					문경장애인 체육관건립	900,000 광 700,000 도 200,000	900,000 광 700,000 도 200,000	※ 자금없는 이월 - '14년 10월 : 공사 착공 예정 - '15년 12월 : 공사 준공 예정
		체육대회 지 원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지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시설지원	3,780,000	3,780,000	조직위와 예산지원 협의 지연에 따른 추경편성
FTA 농식품 유통 대책단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농식품 산업육성	친환경학교 급식관리 시스템구축	207-02 (전산 개발비)	친환경학교 급식관리 시스템구축	1,000,000	1,000,000	교육부 학교급식 프로 그램 연계 협의 지연으 로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잠 사 곤 사업장	지역특화 작목육성 개발	우량 누에씨 생산 및 유용곤충 보급	우량누에씨 생산보급	405-01 (자산및 물품취득비)	생사생산용 자동조사기 구입(1대)	130,000	130,000	별도 제작기간이 소요 되어 장비구입 사전조치 이행을 위한 명시이월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건립	401-01 (시설비)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 센터건립	1,012,000	210,000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곤충사육실 (유리온실)]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401-02 (감리비)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 센터건립	4,000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 센터건립	600,000	1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장비구입비 이월
산림 산업과	산림생태 및 휴양 공간조성	산림생태 문화육성	산림사업 시책추진	연구 영역비 (207-01)	백두대간 구곡문화 지구세계 유산등재 방안연구	70,000	30,1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2014. 8. 21. ~ 2015. 3. 18.)
산림환경 연구원 서부지원	산림경영 기반구축	산림자원 조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지자체자연 휴양림조성	1,722,000 광) 861,000 도) 861,000	1,250,000 광) 625,000 도) 625,000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산림자원 개발원	산림자원 종합개발	산림종합 테마파크 조성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	401-02 (감리비)	산림문화 휴양촌조성 사업	655,000 광) 327,500 도) 327,500	655,000 광) 327,500 도) 327,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사 회 복지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강화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경북행복 지도시스템 구축	207-02 (전산 개발비)	경북행복 지도시스템 구축	300,000	300,000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순연으로 '15년 상반기 구축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장애인복지 지원확대 추진	307-05 (민간 위탁금)	장애인복지 분야 성과평가 제도 운영	40,000	40,000	용역기간 '14. 11. 3 ~ '15. 3. 31 으로 인한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보건 정책과	평생건강 건강관리 체계구축	의약기반 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405-01 (자산 취득비)	재난현장응 급의료소 설치장비 구입	80,000	80,000	'14년 추경예산반영사 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원가심사 등) 과정으 로 '15년 상반기 중 구입 예정
	저출산 대책사업	저출산 대책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원	402-01 (민간자본 이전)	순회진료 산부인과 기능보강	400,000	400,000	2014년 2회추경 예 산반영 사업으로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2 ~ '15. 5)
노인전문 간호센터	노인복지 증진	노인간호 및 건강 증진	노인요양 시설기능 보강(보조)	401-01 (시설비)	노인전문간 호센터증축	1,265,853	1,265,061	증축 부지 조성에 따 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
				401-02 (감리비)	노인전문간 호센터시설 증축감리비	14,521	14,521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노인전문간 호센터증축 부대비	4,626	4,626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균형 발전 사업단	지역균형 개발추진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 평가	401-01 (시설비)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평가	297,000	148,000	1회 추경예산 편성으 로 용역기간 미 도래
				401-03 (시설 부대비)	지역개발계 획수립 및 조사평가 시설부대비	3,000	1,500	용역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 로 철 도 공항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지방도 확충	동명부계간 국지도건설	401-01 (시설비)	동명 부계간 국지도건설	25,117,000 광) 23,817,000 도) 1,300,000	4,000,000 광) 4,000,000	절대공기부족 (준공예정일 : '15. 11)
				401-02 (감리비)	동명 부계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650,000 광) 650,000	330,000 광) 330,000	감리기간 미도래 (준공예정일 : '15. 8)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도 로 철 도 공항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지방도 확충	동명부계간 국지도건설	401-03 (부대비)	동명 부계간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33,000 광) 33,000	8,000 광) 8,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청도경산간 국지도건설	401-01 (시설비)	청도 경산간 국지도건설	1,833,000 광) 1,833,000	700,000 광) 700,000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준공예정일 : '15. 3)
				401-02 (감리비)	청도 경산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200,000 광) 200,000	130,000 광) 130,000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15. 8)
			용암선남간 국지도건설	401-01 (시설비)	용암 선남간 국지도건설	29,293,000 광) 28,493,000 도) 800,000	3,000,000 광) 3,000,000	전기공사 미발주 (총사업비 협의지연)
			왜관가산간 국지도건설	401-01 (시설비)	왜관 가산간 국지도건설	27,770,000 광) 18,970,000 도) 8,800,000	2,291,200 광) 991,200 도) 1,300,000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15. 3)
				401-02 (감리비)	왜관 가산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500,000 광) 500,000	88,000 광) 88,000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15. 4)
			울릉 일주도로 건설	401-01 (시설비)	울릉일주도로 국지도건설	20,165,000 광) 19,970,000 도) 195,000	12,195,000 광) 12,000,000 도) 195,000	와달리 보상지연 (토지수용 '14. 10. 27) 및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
				401-02 (감리비)	울릉일주도로 국지도건설 감리비	500,000 광) 500,000	325,000 광) 325,000	감리준공기간 미도래 (준공예정일 '15.8.28)
				401-03 (부대비)	울릉일주도로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30,000 광) 30,000	20,000 광) 20,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농암산양간 국지도건설	401-01 (시설비)	농암 산양간 국지도건설	8,695,000 광) 8,595,000 도) 100,000	3,400,000 광) 3,400,000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지연 (준공예정일 : '15. 3)
				401-02 (감리비)	농암 산양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400,000 광) 400,000	300,000 광) 300,000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15. 6)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도 로 철 도 공항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지방도 확충	조교임고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조교 임고간 국지도건설	8,565,000 광) 2,765,000 도) 5,800,000	2,515,000 광) 2,515,000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준공예정일 : '15. 10)
				401-02 (감리비)	조교 임고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200,000 광) 200,000	200,000 광) 200,000	금차분 감리용역 발주시기 미도래 (발주예정일 : '14. 12)
				401-03 (부대비)	조교 임고간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35,000 광) 35,000	35,000 광) 35,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강동안강간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강동 안강간 국지도건설	380,000 광) 280,000 도) 100,000	380,000 광) 280,000 도) 100,000	공사 미발주(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중)
				401-02 (감리비)	강동 안강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200,000 광) 200,000	200,000 광) 200,000	공사 미발주에 따른 감리 미발주
				401-03 (부대비)	강동 안강간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20,000 광) 20,000	20,000 광) 20,000	공사 미발주에 따른 부대비 이월
			청도운문 터널건설	401-01 (시설비)	청도운문터 널 건설	880,000 광) 780,000 도) 100,000	880,000 광) 780,000 도) 100,000	공사 미발주(부산청 설시설계중)
				401-02 (감리비)	청도운문터 널 건설 감리비	200,000 광) 200,000	200,000 광) 200,000	공사 미발주에 따른 감리 미발주
				401-03 (부대비)	청도운문터 널 건설 시설부대비	20,000 광) 20,000	20,000 광) 20,000	공사 미발주에 따른 부대비 이월
			단산부석간 국지도 개량	401-01 (시설비)	단산부석간 국지도개량	598,000 광) 498,000 도) 100,000	598,000 광) 498,000 도) 100,000	공사 미발주(부산청 설시설계중)
				401-03 (부대비)	단산부석간 국지도개량 시설부대비	2,000 광) 2,000	2,000 광) 2,000	공사 미발주에 따른 부대비 이월
			지방도 건설	401-01 (시설비)	지방도사업	59,072,000	7,397,000	공기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지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건 축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설화	한옥전수 조사용역 등	207-01 (연구 용역비)	한옥전수 조사용역	40,000	4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토 지 정보과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첨단지리 정보체계 구축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207-02 (전산 개발비)	공간정보응용시스템 데이터통합	60,000	60,000	* 대상시스템의 선행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 KOPSS 데이터 마트 구축사업('15. 1월 완료) 중고택 공간정보 DB구축('14.12월 완료)
하천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하천재해 예방사업	401-01 (시설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26,303,000 국) 16,304 도) 9,999	2,638,499 국) 1,534,464 도) 1,104,035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100,000	100,000	감리용역 절대공기 부족('14.1.~'15.12.)
				401-03 (시설 부대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73,000	38,255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고향의 강 사업	401-01 (시설비)	고향의강 사업	4,986,500 국) 3,000,000 도) 1,986,500	4,921,464 국) 2,934,964 도) 1,986,500	남대천 고향의강사업 절대공기 부족('14. 8. 29. ~'15. 8. 28.)
				401-03 (시설 부대비)	고향의강 사업	13,500	9,387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2,823,800 국) 1,700,000 도) 1,123,800	2,616,459 국) 1,492,659 도) 1,123,800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14. 11. 12. ~'15. 11. 11.)
				401-03 (시설 부대비)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10,200	10,2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특별교부세)	401-01(시설비)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2,491,000	2,491,000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14.11.12.~'15. 11. 11.)
				401-03(시설부대비)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9,000	9,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하천계획업무	401-01(시설비)	하천기본계획수립	4,500,000	3,584,150	하천기본계획 절대공기 부족 (18개월 소요)
			하천계획업무(특별교부세)	401-01(시설비)	하천기본계획수립	2,800,000	1,705,000	하천기본계획 절대공기 부족 (18개월 소요)
총 합 건 설 사업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 교통망 확충	사rido 확포장사업	401-01(시설비)	사rido확포장사업 시설비	17,354,000 특) 1,998,000 도) 15,361,000	5,151,000 특) 1,998,000 도) 3,158,000	준공기한 미도래 따른 이월 -장군 ~ 마시간도로 확포장공사(9차) -외서 ~ 농암간도로 확포장공사(5차) -금장 ~ 하구간도로 확포장공사(6차)
				401-03(시설부대비)	사rido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51,000 특) 7,000 도) 44,000	24,000 특) 7,000 도) 17,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총 합 건 설 사업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401-01(시설비)	지방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	7,652,000 특) 994,000 도) 6,658,000	994,000 특) 994,000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 금봉도로 선형 개량공사
				401-03(시설부대비)	지방도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48,000 특) 6,000 도) 42,000	6,000 특) 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사업소 지방도사업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자동차 교통 관리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광특중앙)	695,600 광) 347,800 도) 347,800	473,600 광) 236,800 도) 236,80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청 협의에 따른 발주 지연 - 한티도로 선형개량 (1차)('14. 12. ~)
		도로 교통망 확충	사리도 확포장	401-01 (시설비)	사리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	8,951,800	649,701	준공시기 미도래 - 성내도로확포장 폐기물 처리용역 ('14. 3. 31 ~ '15. 3. 30) - 옥정도로 확포장 (2차)('14. 3. 19 ~ '15. 3. 18) - 화전도로(산수유) 확포장(2차) ('14. 3. 19 ~ '15. 3. 18) 보상협의지연 - 봉성도로 확포장 - 신기~원구 도로 확포장 - 화천~무창 도로 확포장
				401-03 (시설부대비)	사리도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48,200	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량	401-01 (시설비)	위험도로개량사업시설비	5,414,000 특) 996,000 도) 4,418,000	4,279,573 특) 996,000 도) 3,286,573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위험도로개량시설부대비	36,000 특) 4,000 도) 32,000	13,818 특) 4,000 도) 9,818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도로간접 보수	401-01 (시설비)	상당두천간 도로간접 보수	496,400	496,400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14. 11. 22)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중 합 건 설 사업소 북 부 지 소	지방도확 충 및 유지관리	지 방 도 유지관리	도로긴급 보수	401-03 (시설 부대비)	긴급도로 보수시설 부대비	9,400	3,6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울진해안 도로 긴급복구 (지917호)	401-01 (시설비)	울진해안도로 (지917호) 긴급복구	6,084,700 특) 2,989,200 도) 3,095,500	6,084,700 특) 2,989,200 도) 3,095,500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협의 추진에 따른 발주 지연 - 울진해안도로 (산포~오산) 긴급복구공사 (14. 12~)
				401-03 (시설 부대비)	울진해안도로 (지917호) 긴급복구 시설부대비	15,300 특) 10,800 도) 4,500	15,300 특) 10,800 도) 4,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교 량 안전관리	교량 및 터널개보수	401-01 (시설비)	교량개채 및 보수	6,757,700 특) 993,700 도) 5,764,000	1,000,000 특) 0 도) 1,000,000	준공시기 미도래 - 신평교 개채 (14. 5. 15 ~ '15. 11. 15)
				401-03 (시설 부대비)	교량개채 및 보수 사업 시설부대비	42,300 특) 6,300 도) 36,000	4,000 특) 0 도)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수 산 진흥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 화	어촌어항 관광 인프라 구축	지방어항 건설	401-01 (시설비)	지방어항 건설	5,851,500	250,000	절대공기부족 (14. 11 ~ '15. 8)
			해양환경 조사	401-01 (시설비)	지방어항기 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800,000	426,77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11)
수 산 자 원 연구소	바 다 목장화 조기실현	수산자원 조 성	한 해 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 립	401-01 (시설비)	한 해 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 립	1,921,900	1,661,444	군 관리계획 결정용 역(10개월 소요)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수정으로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수산 자원 연구소	바다 목장화 조기 실현	수산자원 조 성	한 해 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 립	401-02 (감리비)	한 해 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 립	72,500	72,500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10개월 소요) 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수정으로 이월
신도시 조성과	새로운성 장거점신 도시조성	명품 신도시 조성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01-01 (시설비)	도청이전 신도시진입 도로개설공 사	56,093,000 국)28,419,000 도)27,674,000	49,876,147 국)22,202,147 도)27,674,000	2013년 이월예산 우선 집행에 따른 당해예산 이월
				401-02 (감리비)	도청이전 신도시진입 도로개설공 사감리비	700,000	699,964	2013년 이월예산 우선 집행에 따른 당해예산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도청이전 신도시진입 도로개설공 사부대비	45,000	30,636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401-01 (시설비)	도본청 및 의회신청사 건립공사	130,975,494	33,200,000	신청사건립 공사 기간 장기간 소요 되어 절대공기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도본청 및 의회신청사 건립공사시 설부대비	100,000	100,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신도시 지원과	원활한신 도시조성 지원	신도시 조성지원	공공시설 사업추진	401-01 (시설비)	대외통상교 류관 건립 설계비	418,000	418,000	대외통상교류관 건 립 기본계획 변경 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119 종합 상황실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	119긴급 구조표준 시스템 구축	401-01 (시설비)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7,001,525	2,650,049	도청 신청사 이전 일정에 따라 시스템구축 병행추진을 위한 이월
				401-02 (감리비)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92,475	92,475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19 특수 구조단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대테러 및 특수소방 장비보강	405-01 (자산 취득비)	다목적무인 파괴방수차	900,000 국) 450,000 도) 450,000	900,000 국) 450,000 도) 450,000	2014년 제1회 추경에 편성 국고보조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2개년 사업)
포항 남부 소방서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1-01 (시설비)	연일119 안전센터 신축	1,538,000	1,538,000	2014년 제1회 추경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401-02 (감리비)	연일119 안전센터 신축	18,000	1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연일119 안전센터 신축	8,000	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안 동 소방서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1-01 (시설비)	옥동119 안전센터 신축	1,538,000	1,538,000	2014년 제1회 추경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401-02 (감리비)	옥동119 안전센터 신축	18,000	1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옥동119 안전센터 신축	8,000	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2건	150,000	139,700	
청정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207-01 연구 용역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연구 용역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14. 11 ~ '15. 10)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	207-01 연구 용역비	원자력기술 표준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100,000	89,700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계약추진 절차로 인한 이월

〈 자료 2 〉

1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정 책 기 획 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운영지원	13	
세 정 담 당 관	수입증지환매대금	22	
신 성 장 산 업 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600	
청정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2,568	
일 자 리 창 출 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4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	16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연말연시교통안전실천결의대회개최지원	32	
안 전 총 괄 과	급경사지정밀점검	30	
새 마 을 봉 사 과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14	
문 화 융 성 사 업 단	21C신라상징조형물제작	150	
문 화 유 산 과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60	
관 광 진 흥 과	안동호주변야간스토리경관조성	100	
관 광 진 흥 과	영덕블루로드정비(영덕)	39	
체 육 진 흥 과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3,220	
체 육 진 흥 과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설지원	3,780	
체 육 진 흥 과	포항국민체육센터건립	1,5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친 환 경 농 업 과	벼재배농가특별지원	8,099	
친 환 경 농 업 과	FTA피해보전직불제	2,680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상하수도설비공사	20	
가축위생시험소	AI진단키트	100	
환 경 안 전 과	환경관리실태평가보고회 및 환경인결의 · 교류대회	10	
환 경 안 전 과	배출업소지도점검피복비	10	
물 산 업 과	하수처리장확충	140	
산림자원개발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32	
사 회 복 지 과	맞춤형고용복지연계지원	33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500	
보 건 정 책 과	분만취약지시설장비지원	65	
보 건 정 책 과	소아야간진료활성화	64	
보 건 정 책 과	순회진료산부인과기능보강	400	
하 천 과	소규모댐건설	1,385	
수 산 진 흥 과	과징금징수부담금지급	13	
토속어류산업화 센터	업무용차량(1대)	40	
토속어류산업화 센터	자동사료공급기(2대)	20	

〈 자료 3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의 회 사 무 처	의원상해보상금	0	36	△36	△100.0	
의 회 사 무 처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워크숍	0	10	△10	△100.0	
감 사 관	부패방지신고보상금	0	10	△10	△100.0	
여성가족정책관	어려운청소년해외 문화유적답사	0	25	△25	△100.0	
인재개발정책관	도-대구시고위리더 파트너십구축	0	20	△20	△100.0	
투 자 유 치 실	투자유치유공민간인 보상	0	30	△30	△100.0	
정 책 기 획 관	도정홍보영상물제작	0	80	△80	△100.0	
정 책 기 획 관	의정비심의관련설문 조사용역	0	15	△15	△100.0	
정 책 기 획 관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수립	0	100	△100	△100.0	
예 산 담 당 관	출자출연기관단체 워크숍	0	30	△30	△100.0	
세 정 담 당 관	감면조례제개정 타당성용역	0	20	△20	△100.0	
서 울 지 사	직원숙소전세금 인상분	0	50	△50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신 성장산업과	SK케미칼안동바이오 공장투자기업 이전보조금	0	1,000	△1,000	△100.0	
신 성장산업과	풍기인견경쟁력강화 사업(광특도비)	0	500	△500	△100.0	
일 자리 창출단	글로벌청년취업사업	0	300	△300	△100.0	
민생경제교통과	착한가격업소식품진 흥기금이차보전	0	10	△10	△100.0	
자 치 행 정 과	도정자문활동실비보상	0	20	△20	△100.0	
자 치 행 정 과	대한민국지방자치 박람회참여자 실비보상	0	10	△10	△100.0	
자 치 행 정 과	도청직원한마당 어울림행사	0	150	△150	△100.0	
새 마을봉 사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0	10	△10	△100.0	
새 마을봉 사과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현지조사	0	20	△20	△100.0	
새 마을봉 사과	대학생새마을해외 봉사활동	0	250	△250	△100.0	
새 마을봉 사과	글로벌새마을청년 봉사단운영	0	100	△100	△100.0	
새 마을봉 사과	도민교육상해보상비	0	20	△20	△100.0	
회 계 과	신도청지역직원 통근버스임차료	0	28	△28	△100.0	
회 계 과	사무용기기유지보수	0	15	△15	△100.0	
회 계 과	관사임차	0	130	△130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회 계 과	신청사회의실환경 개선공사	0	200	△200	△100.0	
회 계 과	신청사휴게시설조성 공사	0	100	△100	△100.0	
회 계 과	신청사사무실신설공사	0	100	△100	△100.0	
회 계 과	신청사공용공간수장 공사	0	200	△200	△100.0	
회 계 과	신청사기본시설설치 공사	0	100	△100	△100.0	
정 보 통 신 과	정 보 기 술 아 키 텍 처 (EA)구축	0	200	△200	△100.0	
문 화 예 술 과	상주은자공예촌조성 (광특도비)	0	812	△812	△100.0	
문 화 예 술 과	경산자인단오제지원	0	100	△100	△100.0	
문 화 예 술 과	콘텐츠코리아랩분원 유치운영을 위한 포럼개최	0	50	△50	△100.0	
문 화 예 술 과	제21회전국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0	20	△20	△100.0	
문 화 예 술 과	아트경주2014지원	0	60	△60	△100.0	
문화융성사업단	영화 및 드라마 등 제작지원	0	54	△54	△100.0	
문화융성사업단	하회마을야간스토리 경관조성	0	100	△100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문 화 유 산 과	전통민속마을체험 및 활용프로그램	0	30	△30	△100.0	
관 광 진 흥 과	춘양목산삼마을조성 (광특중앙)	0	910	△910	△100.0	
관 광 진 흥 과	백두대간불교문화역 사길(문경)(광특중앙)	0	1,562	△1,562	△100.0	
관 광 진 흥 과	버스자유여행사업 (K-SHUTTLE) 운영	0	50	△50	△100.0	
관 광 진 흥 과	고품격관광상품공동 마케팅참가	0	100	△100	△100.0	
체 육 진 흥 과	제23회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0	20	△20	△100.0	
농 업 정 책 과	농업전망2014경북 대회개최	0	20	△20	△100.0	
친 환경 농업 과	쌀전업농도연합회전 국대회개최지원	0	100	△100	△100.0	
축 산 경 영 과	한우이표바코드리더 기지원	0	21	△21	△100.0	
축 산 경 영 과	한우능력경진대회	0	130	△130	△100.0	
축 산 경 영 과	전국한우인의날행사 지원	0	28	△28	△100.0	
축 산 경 영 과	축산물브랜드전참가 업체지원	0	12	△12	△100.0	
축 산 경 영 과	툰밥제조시설지원	0	216	△216	△100.0	
축산기술연구소	화재보험료	0	11	△11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환 경 정 책 과	지질공원로고제작	0	10	△10	△100.0	
장 애 인 복 지 과	중증장애인의료봉사 활동지원	0	40	△40	△100.0	
장 애 인 복 지 과	경상북도장애인종합 예술지원	0	20	△20	△100.0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복지관재활 예술지원	0	20	△20	△100.0	
장 애 인 복 지 과	도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이양)	0	200	△200	△100.0	
보 건 정 책 과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0	26	△26	△1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안전의날행사	0	15	△15	△1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안전정보알리미 앱개발	0	15	△15	△100.0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위원회선진 지현장답사	0	21	△21	△100.0	
건 축 디 자 인 과	몽골UB도시개발 국제포럼개최	0	20	△20	△100.0	
종합건설사업소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시설비	0	99	△99	△100.0	
수 산 진 흥 과	어촌관광선진화워크숍	0	20	△20	△100.0	
총 괄 지 원 과	신도청맞이음악회	0	100	△100	△100.0	
대응구조구급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0	50	△50	△100.0	

※ 기정예산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0. 소수의견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

(제274회 정례회)



2015. 1. 인쇄 / 2015. 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